

2024

2024.11

포스코스틸리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Compliance Program

본 편람은 (주)포스코스틸리온의 지적재산이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포스코스틸리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개정판을 내면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경영과 국내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40년 만에 대폭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인 만큼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회사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서 2006년 10월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기업 스스로 법 준수 및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교육, 자율점검, 법 위반 행위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일련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립,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입니다.

본 개정판은 지난 2023년 발간된 편람 내용 중 법규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과 업무 수행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추가·보완하였으며, 최근의 위반사례 등을 보강하여 임직원들이 현업 업무에 필요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편람이 임직원 여러분들의 공정·투명·윤리의 가치 실천과 협력사, 공급사와의 협업·동반성장을 위한 업무 지침서로 활용되어 공정거래 거래질서 준수 의식 제고와 상생 협력하는 기업문화 정착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상임감사 임 승 규

발간사	0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	10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활용방법 안내	16

I

공정거래 자율점검 부문별 Checklist

1. 회사 공통 체크리스트	18
2. 마케팅 부문 체크리스트	21
3. 하도급 부문 체크리스트	23
4. 하도급 부문 상세 체크리스트	25
5. 대규모기업집단 부문 체크리스트	36

II

대규모기업집단 부문(기업결합)

1. 기업결합	
1. 기업결합이란?	40
2. 기업결합의 유형	40
2.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1. 기업결합의 신고	41
2. 기업결합 신고요령	42
3. 기업결합 신고 대상 제외	44
4. 신고시기	45
5. 임의적 사전 심사제도	47
6. 신고방법	47
3. 기업결합의 심사	59
1. 기업결합 심사대상의 구분	60
2. 관련시장의 확정	62

3. 경쟁제한성의 판단	63
4.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유무 확인	71
5.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	74
4. 계열회사 간 흡수합병시 공정거래법상 유의사항	
1. 기업결합 신고 시 유의사항	77
2. 계열회사 제외 시 유의사항	78
3.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79
4.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81
5. 기업결합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1. 법규 위반시	84
2. 시정조치 미이행시	85
3. 벌칙	86

III

대규모기업집단 부문(제도 및 공시)

1. 대기업집단의 개요	
1. 기업집단의 지정	104
2. 대기업집단의 유형 및 의무사항	105
2. 기업집단제도	
1. 기업집단이란?	107
2. 기업집단의 범위	108
3. 기업집단의 편입 및 제외	110
3. 상호·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제한제도	
1.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117
2. 상호출자의 금지	117
3. 상호출자제한 위반시 제재	118
4. 신규 순환출자의 금지	120

5.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121
6. 채무보증제한 위반시 제재조치	123
4.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1.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128
2.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129
3. 의결권제한 위반시 제재조치	129
5. 지주회사제도	
1. 지주회사의 개념	130
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131
3. 지주회사 범위반시 제재조치	132
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1.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 의결 및 공시	133
2. 적용 대상회사 및 대상거래	134
3. 거래금액의 산정	135
4. 공시시기 및 절차	136
5. 다른 법과의 공시내용 중복	136
6. 이사회 의결 및 공시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136
7.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137
8. 위반시 과태료 부과	138
7.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1.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148
2. 공시대상 업무	150
3. 공시시기	154
4. 공시방법 및 절차	155
5. 위반시 제재	155
8. 기업집단현황 공시	
1. 기업집단현황 공시	162

2. 공시내용	164
3. 과태료 부과	173

IV 불공정거래행위 부문

1. 부당한 공동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182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184
3.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188
4.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188
5.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213
6. 자진신고자 감경제도(Leniency Program)	214
2. 부당한 지원행위	
1. 부당한 지원행위	218
3.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1. 부당한 거래거절	230
2. 차별적 취급	238
3. 거래상 지위남용	245
4. 구속조건부 거래	253
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259
2.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	260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	261

V 하도급 부문

1. 하도급 관련 규제

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270
2. 하도급법의 체계	270
3.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271

2. 하도급법 주요 내용

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280
㉡ 선급금 지급 의무	289
㉢ 내국신용장(Local L/C)의개설의무	294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299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306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의무	317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	317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321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323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328

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333
㉫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342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350
㉭ 부당 반품의 금지	354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356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363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및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366
㉻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370

㉜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372
㉝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375
㉞ 부당한 특약의 금지	380

3. 발주자의 의무사항

㉟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383
-----------------------	-----

V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개요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388
2. CP는 왜 필요한가?	388
3. CP 등급평가 결과 우수등급("A") 이상 취득 시 유인 제공	389
4. CP 8대 구성요소	390
5. CP 등급평가 절차	390

2. 포스코스틸리온의 CP 운영 현황

1. 시행 배경	391
2. 추진 경과	391
3. 신고절차 프로세스	393
4. 공정거래 자율점검이란?	394
5. 자율점검 체계도	394

VII 부서별 공정거래 Risk 예방 가이드

1. 부서별(마케팅) 공정거래 Risk 예방 가이드	398
2. 부서별(구매, 하도급) 공정거래 Risk 예방 가이드	402
3. 부서별(기업집단) 공정거래 Risk 예방 가이드	406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지침

1.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관리자는

- 1)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하고,
- 2)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 3) 자율준수관리자는 CP만을 전담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업무도 겸직 가능하고,
- 4)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CP 주관 부서장이 CP 업무를 대행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계획 수립 및 기획
- 2)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
- 3) 기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및 권한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권한으로 CP 준수실태 조사권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시정 요구권과 직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진다.

4. 회사의 지원 및 CP 주관부서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고,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 회사 전체의 CP업무를 수행한다.

5.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자율준수협의회는 CP운영 자문기구로서 1) 공정거래와 관련이 있는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자율준수협의회 구성을 변경할 수 있고, CP 주관부서의 부서장은 간사로서 자율준수협의회회의의 실무 운영을 총괄한다.

6.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자율준수협의회는 반기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2인 이상의 위원 요청에 의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7. 자율준수협의회 역할

자율준수협의회는

- 1)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
-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 심의 및 필요사항 권고, 자문
- 3) 자율준수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부서간 업무 마찰 조정
- 4) 담당 부문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실시 및 감독 후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
- 5)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

8. 공정거래 실천리더의 선임 및 역할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소속 부문의 자율준수활동을 위해 적절한 자질을 갖춘 직원을 선발하여 공정거래 실천리더로 임명하고, 실천리더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 1)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지원
- 2) 부서 내 공정거래 관련 교육, 상담업무 및 자문
- 3) 부서별 자율점검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9. 일상업무에 대한 법 위반행위 사전점검

임직원은 공정거래 자율점검 Check List를 활용하여 일상 업무 추진 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CP 주관부서 또는 웹사이트의 공정거래 상담실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 10. 상담 및 신고

- 주관부서는 부서 내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인을 지정, 운영한다.
- 각 부서의 업무담당자는 자율점검 Check List에 의거 업무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경우 CP 주관부서 또는 공정거래 웹사이트에 상담을 의뢰하여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 상담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담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담인은 필요 시 관련 정부부처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상담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 자율점검 Check List를 통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였거나 상담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모니터링을 면제하거나 제재를 경감할 수 있다.
- 상담인은 현업부서에서 상담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 필요 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실 또는 위반가능성 요소를 발견한 경우 CP 주관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용이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마련한다.
- 상담인 및 CP 주관부서는 상담을 의뢰한 자나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신고한 자가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을 때는 신분 및 상담, 신고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11. CP의 운영

CP 주관부서는 CP의 실행에 필요한 계획을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며 CP 활동내역을 자율준수관리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CP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 관련 문서를 현업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현업 부서는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12. 공정거래준수 편람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수행에 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정거래준수 편람을 작성 및 배포하여야 하고, 공정거래 준수편람은 임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관련 내용을 공정거래 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주기적인 개정 검토 및 개정(연 2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임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13.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 규정 운영과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이해하고 법 위반행위의 사전 방지활동을 위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무분야의 부서 임직원에게 반기당 2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 1) e-learning 교육을 이용한 on-line 교육
- 2)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무분야 부서별 위주의 off-line 교육
- 3) 기타 사외강사 초청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제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별 의무 수강부서를 선정하여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 부서별 요청이 있을 경우 부서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CP 주관부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CP 주관부서는 교육 후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해도, 참석률, 만족도, VOC, 기타 등의 파악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연말에 종합적인 교육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다.

교육을 위한 강사의 자격은 사외 강사의 경우 포스코, 법무법인, 전문기관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으로 하며, 사내 강사는 마케팅/재무/구매부서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업무경력 1년 이상 및 CP 주관부서 업무경력 1년 이상 된 자로 한 한다.

CP 주관부서의 교육 대상 임직원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CP 주관부서는 교육 미 이수자와 CP 위반자를 월 주기로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 또는 특별교육 미 이수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시 가중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고경영자(사장) 및 전(소) 임원의 CP 관련 교육 참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며, 교육 참여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 14. 문서관리

CP 주관부서는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해 CP 운영관련 및 공정거래 관련문서들을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회사 내부시스템에 분류하고 보관하여야 하고, CP 주관부서 및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관련 문서 발생 시 정확하게 기록하고, 공정거래 문서함에 등록, 보관하여야 한다.

● 15. 모니터링 활동

CP 주관부서는 자율점검이 부진한 부서 또는 법 위반가능성이 큰 부서에 대해 수시로 공정거래 모니터링 활동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수감부서는 CP 주관 부서의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CP 주관부서는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경영층에 보고하여 공정거래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6.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법 위반자에 대하여 인사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 주관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7. 인센티브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자나 부서에 대해 포상하거나 경영층에 포상 의견을 제의할 수 있다.

● 18. 운영성과 평가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필요 시 CP를 개선, 보완할 수 있다. CP 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최고경영진 또는 이사회에 분기별로 보고한다.

● 19. 임직원의 의무 및 대표이사(최고경영자)의 역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거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즉시 CP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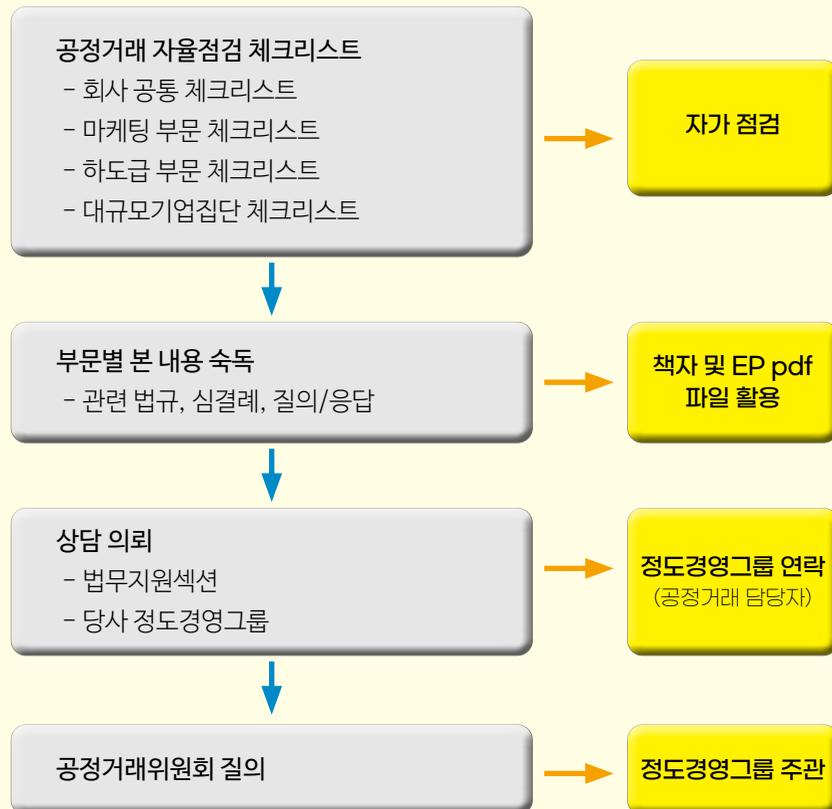
대표이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과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보고 받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절차를 지시하고 필요 시 관련 임직원에게 대하여 제재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활용방법 안내

당사 임직원 분들에게 마케팅(불공정거래 행위), 구매(하도급), 재무(대규모 기업 집단) 등 관련 업무를 행함에 있어 본 편람의 활용방법을 안내합니다.

현업 업무 시 먼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가점검을 행하고, 의문사항이 생기면 편람 속독 및 정도경영그룹 상담(공정위 질의)을 통해 법 위반 Risk 사전 방지 프로세스를 정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부문별 법 위반 Risk가 궁금하면



포스코
스틸리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I

공정거래 자율점검 부문별 Checklist

1. 회사 공통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Check List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가격남용	시장지배적 품목의 가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지는 않는가?
	판매(출고) 조절	시장지배적 품목의 판매(출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절하지는 않는가?
	사업활동 방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지는 않는가?
	신규시장 진입방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지는 않는가?
	경쟁사업자 배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지는 않는가?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계약, 협정, 결의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지는 않는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사업자간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지는 않는가?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 또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지는 않는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지는 않는가?
	거래조건 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지는 않는가?
	계열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지는 않는가?

점검 항목		Check List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 영매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품을 공급하지는 않는가?
	부당 고가매입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부당하게 원료/자재 등을 통상 거래 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지는 않는가?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시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지는 않는가?
	끼워팔기	제품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의 다른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지는 않는가?
	거래강제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공급사에게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가?
	구입강제 (밀어내기)	고객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가?
	이익제공 강요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지는 않는가?
	판매목표 강제	판매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가?
	불이익 제공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가?

점검 항목		Check List
불공정 거래행위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이나 해임 시 자기의 지시,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하지는 않는가?
	구속 조건부 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이나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지는 않는가?
	사업활동 방해	기술의 부당이용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지는 않는가?
부당지원 행위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 관계인 등을 지원하지는 않는가?
	부당한 자산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등을 지원하지는 않는가?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등을 지원하지는 않는가?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거래 가격을 정하여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지는 않는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발주자로서 원사업자가 파산 등 명백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지는 않는가?
	부당감액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지는 않는가?
불공정 약관	불공정 약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통상 인정되는 권리의 행사 등을 계약하는 약관은 아닌가?

2. 마케팅 부문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Check List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가격남용	시장지배적 품목의 가격을 정당한 이유 없이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지는 않는가?	
	판매(출고) 조절	시장지배적 품목의 판매(출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절하지는 않는가?	
	사업활동 방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지는 않는가?	
	신규시장 진입방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지는 않는가?	
	경쟁사업자 배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 또는 높은 대가로 구입하지는 않는가?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계약, 협정, 결의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지는 않는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사업자간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지 않는가?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 또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지는 않는가?	
	차별적 취급	가격 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지는 않는가?
		거조건 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지 않는가?
		계열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취급을 하지 않는가?
	부당 염매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품을 공급하지는 않는가?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시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지는 않는가?		

점검 항목		Check List	
불공정 거래 행위	끼워팔기	제품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의 다른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지는 않는가?	
	거래상 지위 남용	구입강제 (밀어내기)	고객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가?
		이익제공 강요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지는 않는가?
		판매목표 강제	판매점에 대해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가?
		불이익 제공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가?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이나 해임 시 자기의 지시,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하지는 않는가?
	구속조건부 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이나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지는 않는가?	
부당지원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에서 현저하게 우대하는 방법으로 특정사업자를 지원하지는 않는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거래 가격을 정하여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지는 않는가?	
		문서, 구두를 불문하고 공급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합의하거나 이러한 조건을 수락한 유통업자하고만 거래하지는 않는가?	
불공정한 약관	불공정한 약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통상 인정되는 권리의 행사 등을 계약하는 약관은 아닌가?	

3. 하도급 부문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Check List	
부당한 공동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계약, 협정, 결의 등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지는 않는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사업자간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지는 않는가?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 또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지는 않는가?	
	차별적 취급	가격 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지는 않는가?
		거래 조건 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지는 않는가?
		계열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취급을 하지는 않는가?
	부당 고가매입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부당하게 원료/자재 등을 통상 거래 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지는 않는가?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 강제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공급사에게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가?
이익제공 강요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지는 않는가?	

점검 항목		Check List
불공정 거래 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가?
		경영 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이나 해임 시 자기의 지시,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하지는 않는가?
	구속조건부 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이나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지는 않는가?	
	사업활동방해 기술의 부당 이용 또는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지는 않는가?	
	부당지원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해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에서 현저하게 우대하는 방법으로 특정사업자를 지원하지는 않는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주자로서 원사업자가 파산 등 명백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지는 않는가?	
	부당감액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지는 않는가?	
불공정한 약관	불공정한 약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통상 인정되는 권리의 행사 등을 계약하는 약관은 아닌가?	

4. 하도급 부문 상세 체크리스트

①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

점검항목	Check List
하도급법 적용확인 (하도급법 제2조)	거래업체가 중소기업인가?
	제조, 수리, 건설, 용역위탁 중 하나에 해당되는가?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하도급법 제3조)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일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는가?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지는 않는가?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고 있는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발주량 등 거래조건을 속이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수의계약 시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경쟁입찰 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점검항목	Check List
물품 구매 강제 금지 (하도급법 제5조)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 외에 물품을 지정하여 구입하도록 강요하지는 않는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계약 당시 언급이 없다가 제조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고가의 부품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지는 않는가?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지는 않는가?

② 하도급 계약 이행 과정

점검항목	Check List
선급금 지급 (하도급법 제6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대로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지는 않는가?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지는 않는가?
내국신용장 개설 (하도급법 제7조)	수출할 물품을 제조 위탁한 경우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는가?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하도급법 제8조)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는 않는가?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는 않는가?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상태에서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위탁 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한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자기가 공급하기로 한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하여 납기, 공기 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 함에도 거부하지는 않는가?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기의 연기를 통보하지는 않는가?
	발주자의 발주 취소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 전가시키지는 않는가?

점검항목	Check List
검사의 기준, 방법/시기 및 결과 통지 (하도급법 제9조)	검사기준 및 방법을 상호협의 하에 공정·타당하게 정하는가?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가?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로 목적물을 수령한 후 10일이 지나서 검사결과를 통지하지는 않는가?
부당반품 금지 (하도급법 제10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는 않는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나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지는 않는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써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 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지는 않는가?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 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 지연을 이유로 반품하지는 않는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지는 않는가?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지는 않는가?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지는 않는가?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 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지는 않는가?

점검항목	Check List
경제적 이익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2)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가? -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가? - 기술 지도, 품질 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기술자료를 요구하지는 않는가? - 기술자료 미제공 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기술자료 요구 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정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주는가?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하지는 않는가? -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지는 않는가? -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지는 않는가? -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는가? - 원사업자가 선(先) 출원하여 수급사업자 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 출원하지는 않는가? -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였는가?

점검항목	Check List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하도급법 제18조)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지는 않는가?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지는 않는가?
	1차 수급사업자의 재 하도급 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 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지는 않는가?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지는 않는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원가 내역, 생산 과정, 투입 인력, 재료 배합 등을 실시하지는 않는가?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협약 체결.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조건의 범위 내에서 협약체결.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협약체결. 수급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해 협약체결. 수급사업자가 지원한 실적을 점검하는 행위

③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

점검항목	Check List
감액 금지 (하도급법 제11조)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절한 구매대금 또는 적절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지는 않는가?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지는 않는가?
	하도급대금 감액 시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대상 물량, 감액금액, 감액방법 등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는가?

점검항목	Check List
물품 구매대금 부당결 제청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을 사게 하거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지는 않는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지는 않는가?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13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이나, 어음 지급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는 않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 시, 어음만기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으로 지급 시, 상환 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가?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하도급법 제13조의2)	건설위탁 시 법정산식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가?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가?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지급보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지급을 보증하는가?

점검항목	Check List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하도급법 제13조의2)	보증의무 면제등급에서 제외된 후, 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으로 추가된 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할 것을 합의하지는 않는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하도급법 제14조)	원사업자의 파산이나 부도 및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가?
	원사업자가 건설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가?
관세 등 환급액 지급(하도급법 제15조)	수출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관세 등을 환급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가?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하도급법 제16조)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는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는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변경계약) 하는가?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가?

점검항목	Check List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법 제16조의2)	목적물 제조에 필요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공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안에 공급사업자와 협의를 개시하고 성실히 임하는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예시> -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지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공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않은 경우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 공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잔여 납품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 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하도급법 제17조)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는 않는가?

④ 악성 법 위반

점검항목	Check List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법제19조)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가?
탈법행위 금지 (하도급법 제20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가?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가?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5. 대규모기업집단 부문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Check List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지는 않는가?
	기업결합의 신고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 기업 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가? (주식 취득/소유, 임원 겸임, 합병, 영업 양수, 신규 회사 주식인수 신고 등)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상호출자의 금지	자기 주식을 취득,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하지는 않는가?
	채무보증의 금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지는 않는가?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100억원 이상인 자금, 자산, 유가증권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는가? (지급금/대여금 등 자금거래, 주식/회사채 등 유가증권, 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
	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	비상장회사가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공시하는가?
	기업집단 현황공시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 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하여 공시하는가?
	기업집단 편입신고	주식취득 등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가?

점검 항목		Check List
부당 지원 행위	부당한 자금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등을 지원하지는 않는가?
	부당한 자산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등을 지원하지는 않는가?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등을 지원하지는 않는가?

포스코
스틸리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III

대규모기업집단 부문 (기업결합)

1. 기업결합
2.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3. 기업결합의 심사
4. 계열회사 간 흡수합병시
공정거래법상 유의사항
5. 기업결합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1. 기업결합

1 기업결합이란? (공정거래법 제9조)

개별기업의 경제적 독립성이 소멸됨으로써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통합되는 기업 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사항들을 포괄함

-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 임원 또는 종업원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
- 다른 회사와 합병
- 다른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입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 우리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기업결합 신고사항 》

- 지분 20% (상장법인 15%)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 취득, 20% 이상 취득 후 추가 취득을 통한 최대주주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 지분율에 상관없이 최대주주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경우
- 신규 회사 설립 참여
- 우리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다른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선임(계열회사 제외)

2 기업결합의 유형

■ 결합 회사 간 관계에 따른 분류

- 수평결합 :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 수직결합 : 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 혼합결합 :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

2.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1 기업결합의 신고(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1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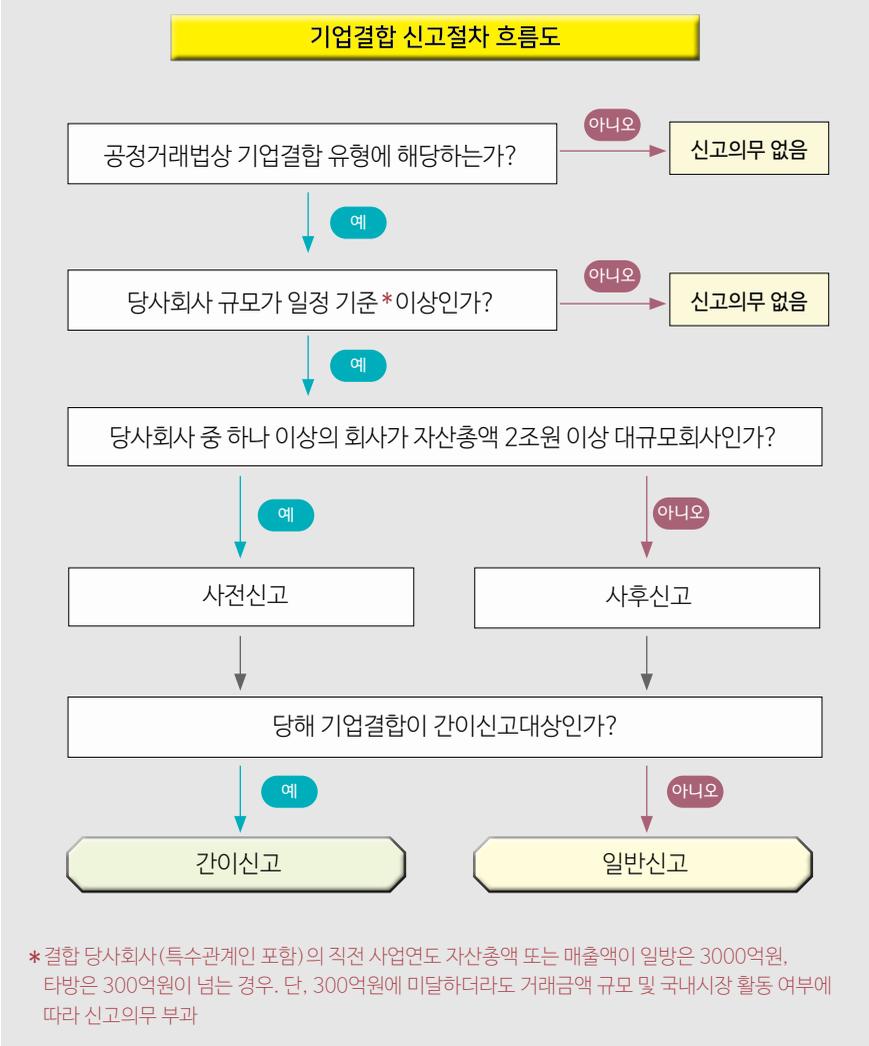
기업결합 당해회사(특수관계인 포함)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원, 타방은 300억원을 넘는 경우 다음 5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단,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① 유형별 신고대상 행위

기업결합	신고대상 행위
주식 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 이상 (상장법인은 15%)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이미 20%(상장법인 15%)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임원의 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단순한 임원의 교체, 즉 수의 변동 없이 자연인의 변경인 경우는 제외 - 계열회사 간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이 대규모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회사와의 합병
영업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입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여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만 참여하는 회사 설립이나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면제

2 기업결합 신고요령

‘기업결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간이신고 대상으로 하며,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양식에 작성하여 공정위에 신고
 - 기업결합 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인 경우(경영 지배의 공동목적을 가지고 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
 - 상대회사 임원 총수의 1/3 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단, 대표이사 겸임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 「선박투자 회사법」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
- 간이신고 대상은 간이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되면 시장현황 자료의 제출은 면제

2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

-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 외의 기업결합

3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주식취득 후 같은 날 또는 신고기간 내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연속적 기업결합에서는 최종 취득자에게만 신고의무 존재. 단, 최종 취득자의 기업결합 신고 시 전체 기업결합 과정을 기재
- 하나의 계약에서 2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주된 기업결합만 신고대상
- 의결권 없는 주식취득이라도 총회 의결 등으로 의결권이 회복될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다시 발생
- 대규모 회사가 아닌 자의 대규모 회사 임원겸임, 사외이사의 타 회사 사외이사로의 임원겸임은 신고의무 없음

- 회사설립에 있어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는 최다출자자 각각에게 있으나, 그 중 1인이 신고한 경우 다른 회사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

3 기업결합 신고 대상 제외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 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 제2호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20% (상장법인 15%)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을 20% (상장법인 15%)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신고대상회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20% (상장법인 15%)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4 신고시기 (공정거래법 제11조 제6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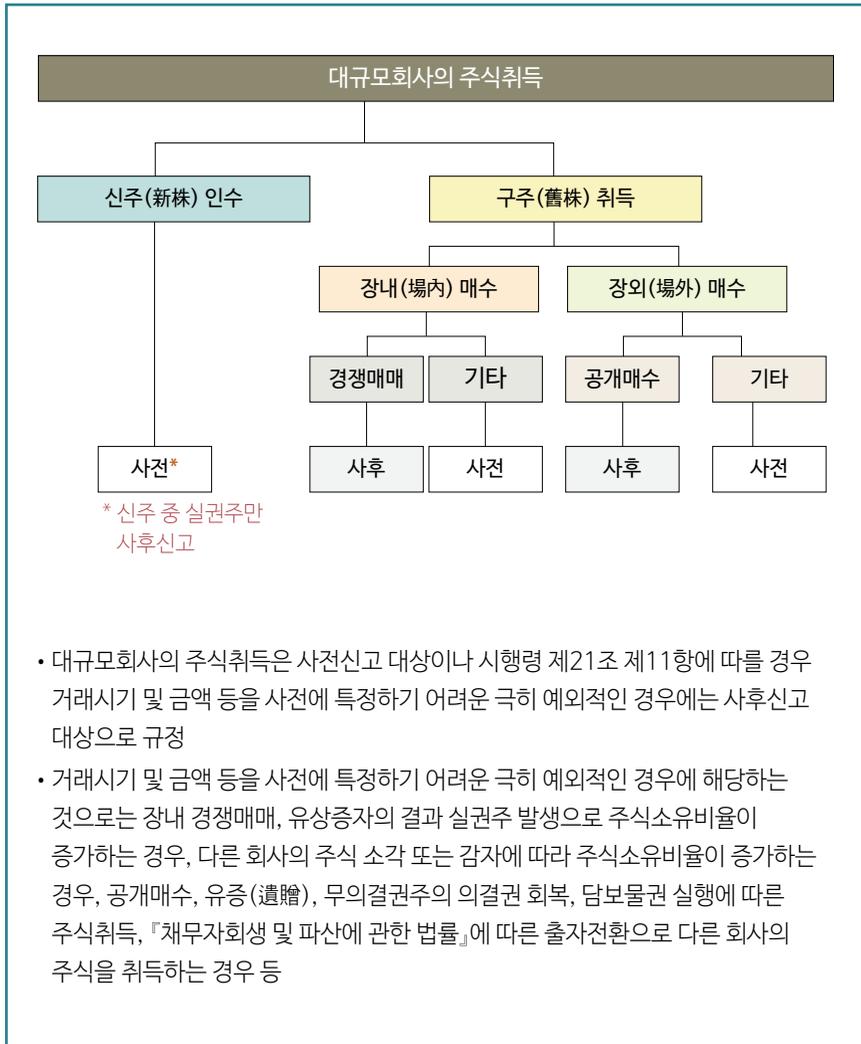
- 원칙적으로 기업결합이 완료된 이후에 신고(사후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회사가 관련된 경우는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신고해야 함
- 우리 회사의 경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회사이므로 임원검임을 제외하고는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함
-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후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통지 받기 전까지는 기업결합 완료행위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주식인수행위 등)가 금지

구분	신고의무자	유형	신고시기
사전 신고	대규모회사*	합병	계약일 이후 이행완료 전
		영업양수 주식취득*	
		회사신설 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완료 전
사후 신고	대규모회사 외의 회사	합병	합병 등기일로부터 30일
		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로부터 30일
		주식취득	주권 교부일로부터 30일
	회사신설 참여	주금 납입일 다음날로부터 30일	
	대규모회사	임원검임	피 검임회사의 주총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대규모회사란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회사를 의미함
- *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이나 법적, 계약적 특성상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사후신고 대상임
 - 장내 경쟁매매,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발생, 자기의사와 무관한 주식소각 또는 감자, 공개매수, 유증, 타법에 근거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가 일원화되고 해당 기관에 사후 신고하는 경우, 담보물권의 실행,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의결권 회복,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다른 회사 주식 취득 등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 신고시기

(시행령 제21조 제11항, 공정위 고시(기업결합의 신고요령))



5 임의적 사전 심사제도 (공정거래법 제11조 제9항)

- 사전·사후 신고대상을 막론하고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계획 중인 기업결합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음
-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으로 판단될 경우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으로 분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의 기업결합 》

-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주식 68.15% (3조4천6백억원)를 취득하는 양해각서를 체결 (2010. 5. 25)하고, 이 기업결합에 대한 임의적 사전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 (2010. 6. 30).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

6 신고방법

- 기업결합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정위 기업결합과에 제출
 - 신고서는 50~56page 참고
- ▶ 기업결합 신고서 작성 TIP
 - 신고서 첨부서류는 기재요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형하여 작성 가능
 - 신고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간이 신고/심사 대상 여부를 먼저 파악
 - 시장상황 등은 동종 상장업체의 사업보고서 활용

외국기업이 포함된 기업결합(시행령 제18조 제3항)

1 신고의무 기업

취득회사		피취득회사	
국내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외국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국내 매출액 300억원 이상
외국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고 국내 매출액 300억원 이상	외국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국내 매출액 300억원 이상

- 외국회사가 국내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에는 국내 매출액 요건 필요없이 취득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원 피취득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됨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국내 매출액 기준은 계열회사를 포함한 합계 기준
 -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계산시 국내 매출액이 이중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매출액은 제외
- 예시> 외국회사가 국내 자회사에게 원재료를 100억원 판매하고 그 자회사가 완제품을 국내에 150억원 판매할 경우 국내매출액은 150억원임
- 상대회사가 계열회사인 합병에 있어서는 상대회사의 국내 매출액은 상대 회사와 상대회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매출액만 합산

2 신고의무 대상행위

- 주식취득·소유
 - 해당국 관련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 소유 (피취득회사가 국내기업의 공개회사일 경우 15% 이상)

• 임원겸임

- 취득회사의 임직원이 피취득회사의 임원을 겸임할 경우
- 계열회사에 대한 임원겸임은 면제 (계열회사의 판단은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 연결 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로 함)
- 합병, 영업양수,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등
 - 단,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할 경우에는 지분참여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 의무는 없으나,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의무는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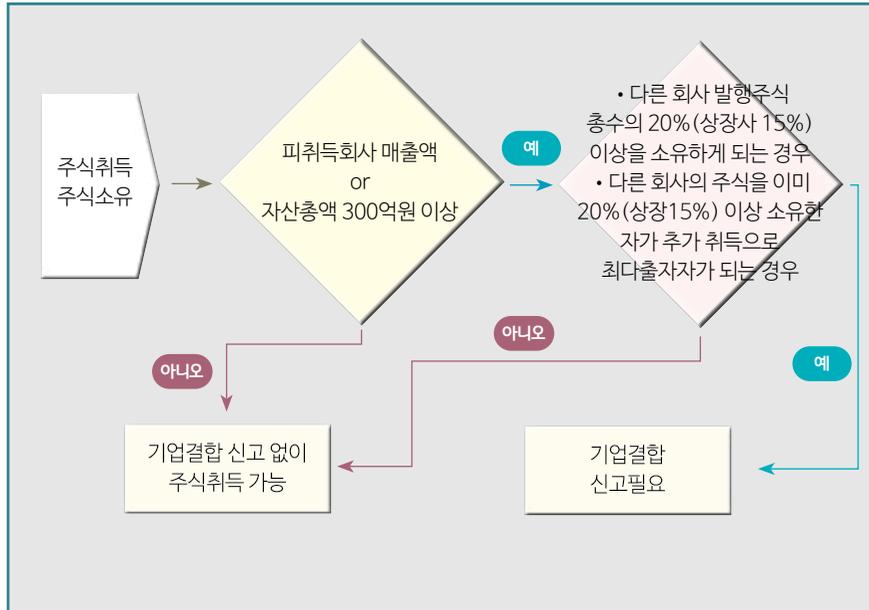
3 신고시기

- 기업결합의 신고시기와 같음 (공정거래법 제11조 제6항)
- <43page 참고>

《 BHPB와 리오틴토(Rio-Tinto)사의 기업결합 》

- 세계 2, 3위 철광석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토(Rio-Tinto)가 호주 서부 철광석 공동생산을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계약(결합금액 약 130조원)을 체결하고 한국 등 주요 경쟁당국에 신고(2009. 12)함
- 두 회사 모두 외국 회사이나 두 회사가 한국 철광석 수입물량의 67%(약 3조원)를 차지하므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대상임
- 이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 결국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철회됨

**주식취득·소유시
업무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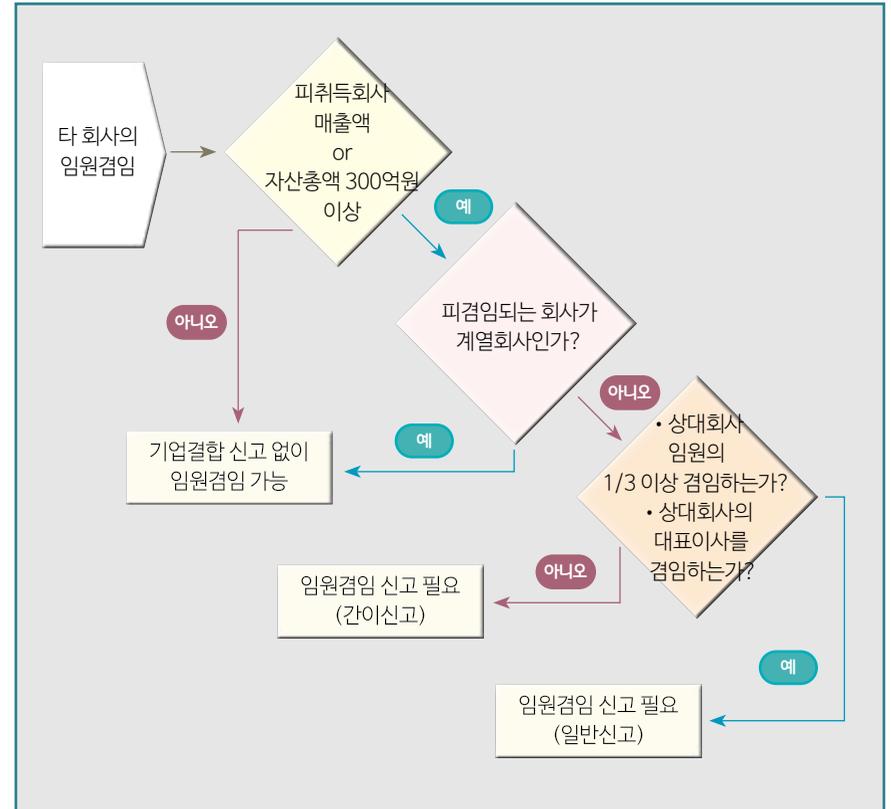


《 주식취득시 기업결합 신고시기는? 》

포스코가 기업결합 신고의 당사회사인 경우, 계약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다음의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①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
주권교부나 주식대금 지급 전에 합의계약 등에 의해서 의결권 등의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그 날
- ②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권납입일의 다음날
- ③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지분 양수의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날
- ④ ①~③항목 이외의 경우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임원겸임시
업무 Flow**



《 임원겸임에 따른 기업결합 신고시기는? 》

피겸임회사의 주총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해외법인의 임원겸임일 경우 피겸임회사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원이라면 기업결합 신고 필요

주식취득으로 인한 기업결합 신고시 작성서류

주식취득(또는 소유)의 신고서										신고유형	<input type="checkbox"/> 일반신고 <input type="checkbox"/> 간이신고
신 고 인	회사명 (또는 성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일							
	주소	신고회사의 사업자번호를 기재.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는 생년월일을 기재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전 화: 팩 스:							
	사업자번호			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기업집단 전체)란에는 당해 신고인(또는 상대 회사)의 국내매출액과, 당해 신고인(또는 상대 회사)과 기업결합일 이전에도 계열회사이고 기업결합일 이후에도 계열회사로 있게 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기업집단 전체)	국내매출액 (기업집단 전체)				
	주요사업										
상 대 회 사	회사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일							
	주소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전 화: 팩 스: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 전체)	매출액 (기업집단 전체)	국내매출액 (기업집단 전체)							
주요사업			시행령 제18조 제8항 제1호 각목의 기준에 따라 기재								
주식 취득 내용	주 주		주식소유비율 (%)		총취득금액	취득일(계약일)					
	신고인 관련	당해신고인	취득전	취득후							
		득수 관계인	계열회사	시행령 제3조(기업 집단의 범위)의 기준에 의해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 하는 회사를 말함							
	계		회사외의 자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		20 . . . 신고회사		대표자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 일반신고: 주주현황, 계열회사 현황, 관련시장 현황, 기업결합 개요서, 주식취득관련 입증자료, 임원겸임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 간이신고: 주식취득관련 입증자료,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임원 겸임으로 인한 기업결합 신고시 작성서류

임원의 겸임 신고서										신고유형	<input type="checkbox"/> 일반신고 <input type="checkbox"/> 간이신고
신 고 회 사	회사명 (또는 성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일							
	주소	신고회사의 사업자번호를 기재.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는 생년월일을 기재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전 화: 팩 스:							
	사업자번호			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기업집단 전체)란에는 당해 신고인(또는 상대 회사)의 국내매출액과, 당해 신고인(또는 상대 회사)과 기업결합일 이전에도 계열회사이고 기업결합일 이후에도 계열회사로 있게 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기업집단 전체)	국내매출액 (기업집단 전체)				
	주요사업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전체의 자산 총액 및 매출액을 기재							
상 대 회 사	회사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일							
	주소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전 화: 팩 스: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 전체)	매출액 (기업집단 전체)	국내매출액 (기업집단 전체)							
주요사업											
임원 겸임 내용	겸임자 성명	신고회사에서의 직위	상대회사에서의 직위	임원겸임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		20 . . . 신고회사		대표자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 일반신고: 주주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현황, 관련시장 현황, 기업결합의 개요서, 임원선임 의사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 간이신고: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임원선임 의사록 사본

합병으로 인한 기업결합 신고시 작성서류

		해당란에 V표시				
흡수합병의 경우 "甲"에 합병주도회사(존속회사 또는 존속예정인 회사), "乙"에 피합병회사를 기재하고, 신설합병의 경우 "갑", "을"에 합병회사명을 각각 기재. 다만, 신고회사가 다수인 경우에는 회사별로 별지에 기재		합병 신고서		신고유형	<input type="checkbox"/> 일반신고 <input type="checkbox"/> 간이신고	
		회사명 (또는 성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소		신고회사의 사업자번호를 기재.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는 생년월일을 기재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전 화: 팩 스:	
사업자번호						
합 병 당 사 회 사	甲 회 사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 (기업집단 전체)란에는 당해 신고인(또는 상대 회사)의 국내매출액과, 당해 신고인(또는 상대 회사)과 기업결합일 이전에도 계열회사로 있게 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매출액 (기업집단 전체)			()
		자산총액 (기업집단 전체)	국내매출액 (기업집단 전체)			()
주요사업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전체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을 기재				
乙 회 사	회사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소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전 화: 팩 스: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매출액 (기업집단 전체)	()				
자산총액 (기업집단 전체)	국내매출액 (기업집단 전체)	()				
주요사업						
합병후 존속 하거나 신설 되는 회사	회사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일자		
	주소	연락처 (대리인)	전화: 팩 스:			
	재무상황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주요사업					
합병계약일		합병등기일	합병금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		20 . . . 신고회사	대표자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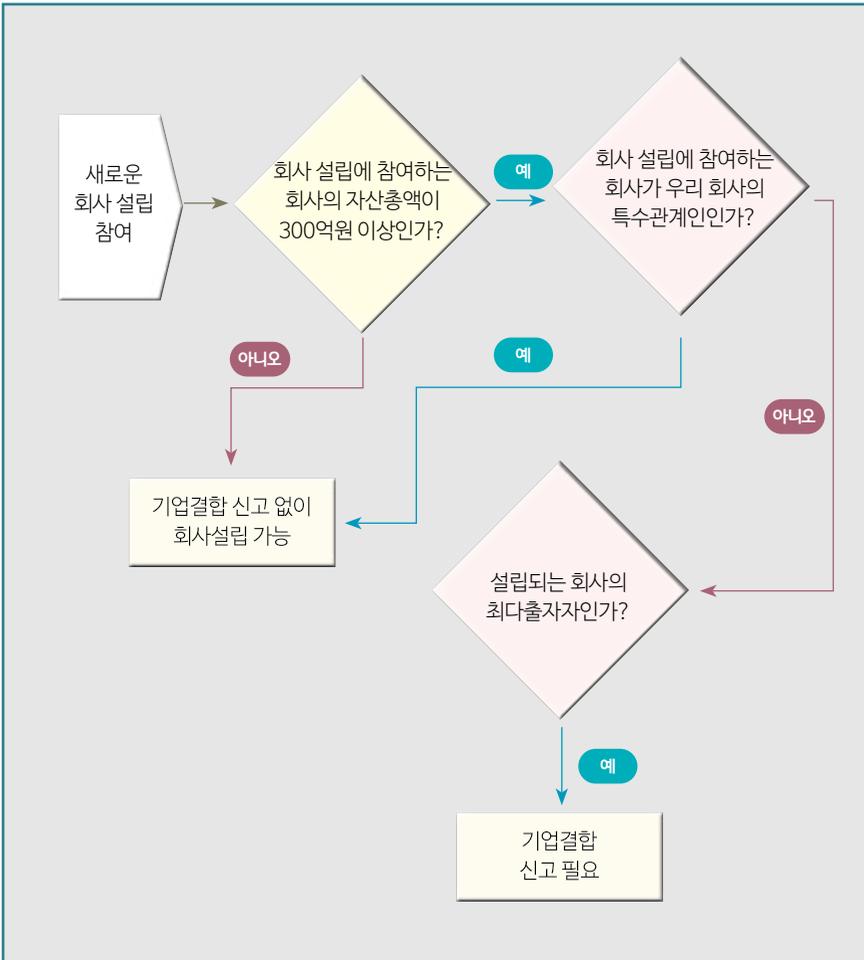
영업양수 신고시 작성서류

		해당란에 V표시					
		영업양수 신고서				신고유형	<input type="checkbox"/> 일반신고 <input type="checkbox"/> 간이신고
신고회사의 사업자번호를 기재.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는 생년월일을 기재		회사명 (또는 성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소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전 화: 팩 스:			
사업자번호							
양 수 회 사	甲 회 사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외국회사인 경우에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 양수회사의 국내매출액과 계열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재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매출액 (기업집단 전체)				()
		자산총액 (기업집단 전체)	국내매출액 (기업집단 전체)				()
주요사업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전체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을 기재					
양 도 회 사	회사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소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전 화: 팩 스: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매출액 (기업집단 전체)	()					
자산총액 (기업집단 전체)	국내매출액 (기업집단 전체)	()					
주요사업		해당란되는 곳에 O표시					
영업 양수 내용	형태	양수대상	양수금액	영업양수 계약일	대금지급 완료일		
	영업의 양수-인차						
	영업용 고정 자산의 양수						
	경영의 수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리인 및 그 대표자를 각각 기재		20 . . . 신고회사	대표자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 일반신고: 주주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 현황, 관련시장 현황, 기업결합의 개요서, 합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 간이신고: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합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첨부서류)
 • 일반신고: 주주현황, 계열회사 현황, 기업집단 전체 주요 사업내역, 관련시장 현황, 기업결합의 개요서, 영업양수관련 입증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 간이신고: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영업양수관련 입증자료

새로운 회사 설립시
업무 Flow



《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때 기업결합 시기는? 》

포스코가 최다출자자로 다른 회사와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때는 회사의 설립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 전까지 신고해야 함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기업결합 신고시
작성서류

신 고 인		상 대 회 사		예 정 주 식 인 수 내 용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서 신고인 (또는 성명) 대표자 성명 (한글) (한자) 설립일 상장일 주소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리인) 담당자: 전 화: 팩 스:		신고인 유형: <input type="checkbox"/> 일반신고 <input type="checkbox"/> 간이신고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납입자본금, 경상이익, 자산총액 (기업집단 전체)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매출액 (기업집단 전체), 국내매출액 (기업집단 전체)		주 주: 당해신고인, 특수 관계인, 계 예정 주식 소유비율(%), 총 취득금액, 회사설립 참여 의결일, 주식대금 납입기일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신고인 별로 별지에 기재. 신고인이 회사의 자인 경우에는 해당란만 명기		새로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각 회사 (신고인 제외)들을 해당 항목별로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시행령 제3조(기업 집단의 범위)의 기준에 의해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 하는 회사를 말함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함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전체의 자산 총액 및 매출액을 기재		시행령 제12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 (기업집단전체)란에는 당해신고인이 속하는 기업집단전체의 자산 총액 및 매출액을 기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고회사		대표자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 일반신고: 주주현황, 계열회사 현황, 기업집단 전체 주요 사업내역, 관련시장 현황, 기업결합의 개요서, 회사설립관련 입증자료, 새로 설립 되는 회사의 개요, 임원겸임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신설회사 사업계획서
 • 간이신고: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회사설립관련 입증자료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작성서류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본 고시 II(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분류)를 참고하여 사유 기재

필요 시 별지에 기재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기타가 다수인 경우에는 1%이상 소유자를 각각 기재

신고회사와 상대회사별로 각각 작성하되, 외국 소재 계열 회사는 국내매출액이 없을 경우 회사명, 소재지, 주요 업종만 기재

직전사업년도 매출액기준 상위 3개 품목 기준으로 작성 다만, 상대회사와 동일□우사 품목(용역 포함)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품목 매출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포함

직전사업년도말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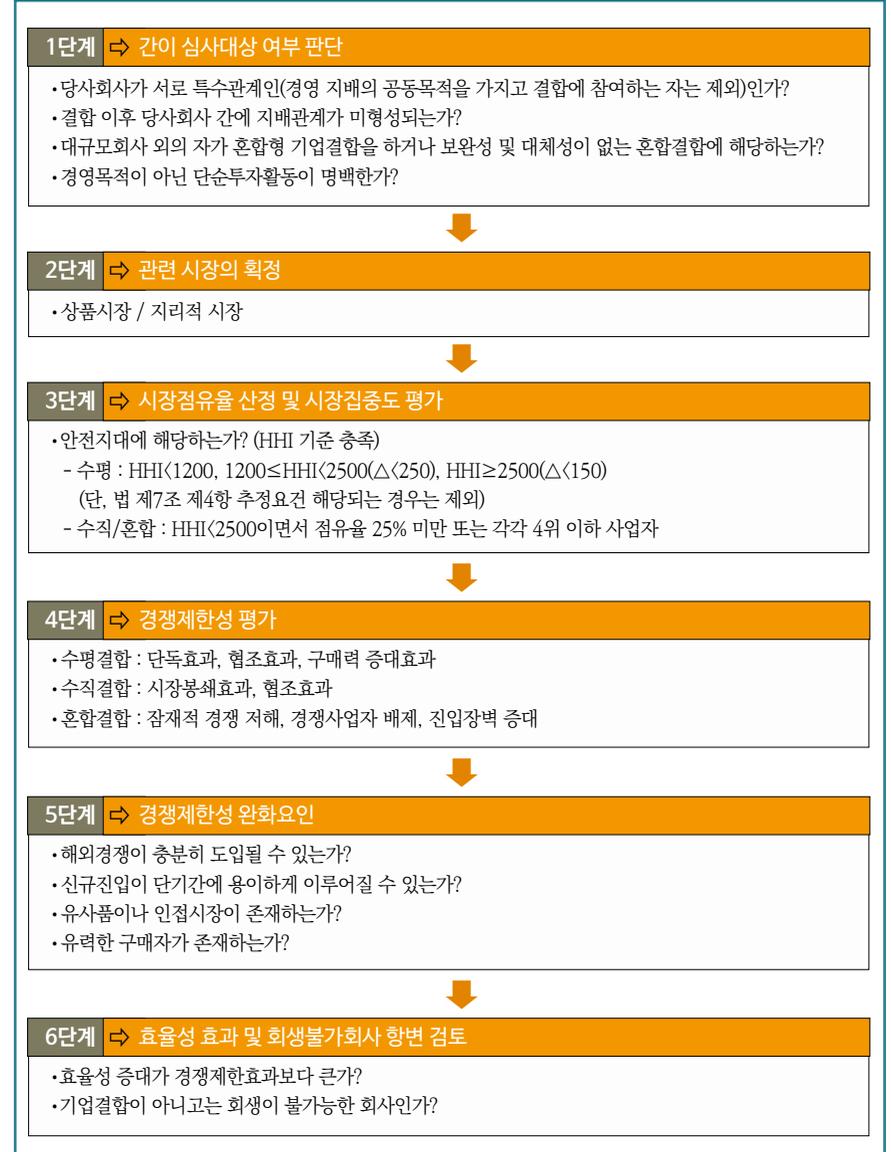
인용한 자료 서적명, 출판사 및 발표날짜 등 기재

상대회사 임원 총수의 1/3미만 임원을 겸임하여 간이신고대상인 경우만 작성

간이신고사유 ⁽¹⁾										
기업결합사유 ⁽²⁾					상대회사 주주현황 ⁽³⁾					
신고회사 주주현황 ⁽³⁾					상대회사 주주현황 ⁽³⁾					
주주명		주주명		주식소유비율(%)						
				취득전		취득후				
동일인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기타	상대회사 관련	동일인	계열회사	회사외의 자	기타	계열회사 현황 ⁽⁴⁾	
회사명	설립일	주요업종 (국내매출품목)	납입자본금	자본 총계	자산 총액	매출액 (국내매출액)	주요주주 (%)			
신고회사 주요 품목 ⁽⁵⁾										
품목		품목		품목						
품목명	매출액 ⁽⁶⁾	품목명	매출액	품목명	매출액					
상대회사 주요 품목										
품목		품목		품목						
품목명	매출액	품목명	매출액	품목명	매출액					
관련자료나 통계의 출처 ⁽⁷⁾										
상대회사 임원 현황 ⁽⁸⁾										
임원명		직위		임원 또는 종업원 겸임내용						
				회사명	직위	겸임일				

3. 기업결합의 심사

기업결합 심사 흐름도



1 기업결합 심사대상의 구분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 ① 특수관계인 간의 기업결합(경영 지배의 공동목적을 가지고 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
- ②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결합유형	지배관계 판단기준
주식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지배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지배관계 형성! -주식소유비율이 50% 미만이나, 경영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지배관계 형성! 이 때, 실질적 지배력 여부는 다음을 고려하여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각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주식 분산도, 주주 상호 간의 관계 ② 피취득회사가 그 주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취득회사 등으로부터 공급 받고 있는지 여부 ③ 취득회사 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임원겸임 관계 ④ 취득회사 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거래·자금·제휴관계 등의 유무 · 공동 지배관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 지배관계는 없으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피취득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지배관계 형성! 이 때, 실질적 지배력 여부는 다음을 고려하여 판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비율 ② 임원의 지명권 보유 여부 ③ 예산, 사업계획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 보유 여부 ④ 의결권의 공동행사 약정 존재 여부 ⑤ 사업수행에 요한 주요 행정권한 보유 여부
임원 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을 고려하여 상대회사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지배관계 형성! ① 취득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피취득회사의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의 수가 피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1/3 이상인 경우 ②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결합유형	지배관계 판단기준
회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작회사에의 참여회사 중 2 이상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해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배관계 형성!

- ③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대규모회사(특수관계인 포함)가 아닌 자가 혼합형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 관련 시장의 특성상 보완성 및 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을 하는 경우 (이 때 보완성 및 대체성은 상품의 기능 및 용도,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의 동일 또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판단)
- ④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 기타 특정 사업의 추진만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당해 사업 종료와 함께 청산되는 특수목적회사를 기업결합한 경우
- ⑤ 취득회사가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제한성 없는 기업결합으로 통지받은 기업결합을 정식으로 신고한 경우 (다만,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이후 사실관계나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⑥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을 제외한 모든 기업결합은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

2 관련시장의 획정

관련시장이란 당해 기업결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으로 '특정상품(지역)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당해 상품(지역)의 구매자 상당수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지역) 전체'를 의미함

■ 기업결합 심사 시에는 상품시장과 지리적 시장을 획정함

■ 거래대상(상품시장)

- 거래대상(상품시장)은 소비자가 상품의 특성·가격·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집합
- 특정 상품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 ①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 ② 상품의 가격의 유사성
 - ③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
 - ④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 ⑤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 ⑥ 거래단계(제조, 도매, 소매 등)
 - ⑦ 거래상대방
- 결합당사회사가 속한 산업 특성상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이 필수적이거나 지속적인 혁신경쟁이 이루어지고, 결합당사회사 중 한 쪽 이상이 그 경쟁에서 중요한 사업자인 경우 근접한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분야(이하, 혁신시장)를 별도로 획정하거나 제조판매 시장 등과 포괄하여 획정할 수 있음

■ 거래지역(지역시장)

- 거래지역(지역시장)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 중 경쟁조건이 동질적이어서 인접지역과 구별될 수 있는 지역
- 특정지역이 동일한 거래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 ① 상품의 특성(상품의 부패성, 변질성, 파손성 등) 및 판매자의 사업능력(생산능력, 판매망의 범위 등)
- ②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 지역 전환 행태
- ③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 ④ 시간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3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은 취득회사 등과 피취득회사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평형 기업결합, 수직형 기업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단

[참고] 기업결합의 유형

유형	의의
수평형 기업결합	동일 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수직형 기업결합	상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 ex) 제조업체-유통업체, 원재료공급업체-수요업체 간 결합
혼합형 기업결합	수평형/수직형 외의 기업결합(생산품목 간에 연관관계가 없는 회사 간의 결합)

■ 시장의 집중상황

- 기업결합 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시장집중도 및 그 변화정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 다만 시장집중도 분석은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 여부는 시장의 집중상황과 함께 각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①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 ㉞ 허핀달-허쉬만지수(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을 말한다. 이하 HHI라 한다)가 1,200에 미달하는 경우
- ㉟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 ㊱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

※ 다만,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추정하여 기업결합 금지

구분	내용
일반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 시장점유율이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 제2위 회사와의 차이가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일 것
대규모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 당해 기업결합으로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공정거래법 제6조)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

- 1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

②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 ㉞ 당사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HHI가 2,500 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5/100 미만인 경우
- ㉟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

■ 시장 집중도 변화추이

- 시장집중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최근 수년간의 시장집중도의 변화추이를 고려. 최근 수년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상위인 사업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이 경우 신기술개발, 특허권 등 향후 시장의 경쟁관계에 변화를 초래할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

■ 혁신시장의 시장집중도 산정

- 혁신시장의 경우 관련 상품의 매출액 등에 기반한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 혁신활동에 특화된 자산 및 역량의 규모, 해당분야 특허출원 또는 피인용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 등을 참고하여 시장 집중도를 산정할 수 있음

■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

- 다음의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판단하여 기업결합 금지

① 수평형 기업결합

- 수평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단독효과, 협조효과,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 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구분	내용
단독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업자가 당사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단독효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㉞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폭 및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 ㉟ 결합당사회사가 공급하는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의 정도 및 동 제품구매자들의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가능성 ㊱ 경쟁사업자의 결합당사회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및 매출증대의 용이성
<p>* 단독행위 관련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엘코리아의 한국엠에스디 영업양수 건(2015.5) : 경구용 피임제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82%에 달하여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능력과 유인을 갖게 되는 반면, 의약품 수입 시 식약처의 허가 등으로 인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진입 가능성도 작다고 보아 시정조치 	
협조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자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간의 가격수량거래 조건 등에 관한 협조(공동행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 간 거래조건 등의 경쟁유인을 구조적으로 약화시켜 가격인상 등이 유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협조의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사업자 간의 협조가 용이해지지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쟁사업자 간 협조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㉞ 시장상황, 시장거래, 개별사업자 등에 관한 주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㉟ 관련 시장 내 상품 간 동질성이 높은지 여부 ㊱ 가격 책정이나 마케팅의 방식 또는 그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 여부 ㊲ 관련 시장 또는 유사시장에서 과거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

구분	내용
협조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㉞ 경쟁사업자, 구매자 또는 거래방식의 특성상 경쟁사업자 간 합의 내지는 협조가 쉽게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행감시 및 위반자 제재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㉞ 공급자와 수요자 간 거래의 결과가 경쟁사업자 간에 쉽고 정확하게 공유될 수 있는지 여부 ㉟ 공급자에 대하여 구매력을 보유한 수요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㊱ 결합당사회사를 포함해 협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상당한 초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 (3) 결합상대회사가 결합 이전에 상당한 초과 생산능력을 가지고 경쟁사업자들 간 협조를 억제하는 등의 경쟁적 행태를 보여 온 사업자인 경우에도 결합 후 협조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p>* 협조행위 관련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주식취득건(2015.6) : 단합봉강, 빌렛, 연주빌렛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시장에서 사업자 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하고, 생산능력이 월등한 당사 회사 및 경쟁 사업자의 공동행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정조치 	
구매력 증대에 따른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해 결합 당사회사가 원재료 시장과 같은 상부시장에서 구매자로서의 지배력이 형성 또는 강화될 경우 구매물량 축소 등을 통하여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지를 고려
혁신 저해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결합 후 결합 당사회사가 연구개발 등 혁신활동을 감소시킬 유인 및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시장에서의 혁신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결합당사회사가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혁신사업자인지 여부 ② 과거 및 현재 결합당사회사가 수행한 혁신활동의 근접성 또는 유사성 ③ 기업결합 이후 실질적으로 혁신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가 충분인지 여부 ④ 결합당사회사와 경쟁사업자 간 혁신역량의 격차 ⑤ 결합당사회사 한 쪽이 혁신활동을 통하여 다른 쪽의 상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인지 여부
<p>* 혁신저해효과 관련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아이엔씨(AMAT)와 도쿄 일렉트론 엘티디(TEL) 합병 건(2015.4): 반도체 제조장비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착, 식각, 세정 등 14개 반도체 제조장비시장에서 혁신 역량이 독보적인 3개 기업 중 상위 1, 2위 기업이 결합함으로써 결합 이후 결합당사회사가 혁신에 투자할 유인을 크게 감소시키고, 미래 혁신적 반도체 시장 도입을 지연시키는 등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으며, 당사회사는 합병계획을 자진하여 철회 	

② 수직형 기업결합

- 수직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의 봉쇄 효과, 협조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구분	내용
봉쇄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형 기업결합을 통해 당사회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구매선 또는 판매선을 봉쇄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 시장의 봉쇄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시장 점유율 또는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구매액이 당해시장의 국내 총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나.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시장 점유율 다. 기업결합의 목적 라. 수출·입을 포함하여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 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마.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바. 당해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 등 사업계획 사. 사업자 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아.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 수직형 기업결합이 대기업 간에 이루어지거나 연속된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대하는 등 다른 사업자가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지 여부
	<p>① LAM리서치의 KLA텐코 합병건(2016.10) : 반도체 계측장비와 공정장비업체 간 - 계측·검사장비와 공정장비간 결합이 발생하여, 공정장비업체인 LAM 리서치의 경쟁사들이 봉쇄될 우려가 높다고 보아 시정조치</p> <p>② 현대제철 등의 동부특수강 주식취득건(2015.3) : 완성차업체와 철강업체 간 - 원료(Wire Rod)에서 최종수요(완성차)까지 수직계열화되어, 강선 및 마봉강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p> <p>③ 에이에스엠엘의 사이머 주식취득건(2013.6) : 반도체원재료 생산자, 구매자 간 - 원재료의존관계에 있는 DUV광원 및 리소그래피시스템시장에서의 수직결합으로 광원 구매선 및 판매선이 봉쇄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p>

협조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형 기업결합의 결과로 경쟁사업자 간의 협조 가능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 경쟁사업자 간의 협조 가능성 증가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결합 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나. 결합당사회사 중 원재료 구매회사가 원재료 공급회사들로 하여금 협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다.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협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
-------	---

③ 혼합형 기업결합

- 혼합형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는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구분	내용
잠재적 경쟁의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합형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잠재적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 잠재적 경쟁의 감소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진입하려면 특별히 유리한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지 여부 나. 당사회사 중 하나가 상대방 회사가 속해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대해 다음 요건의 1에 해당하는 잠재적 경쟁자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더라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 (ㄴ)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당사회사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 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및 시장집중도 수준 라. 당사회사 이외에 다른 유력한 잠재적 진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경쟁 사업자의 배제	· 당해 기업결합으로 당사회사의 자금력, 원재료 조달능력, 기술력, 판매력 등 종합적 사업능력이 현저히 증대되어 당해상품의 가격과 품질외의 요인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진입 장벽의 증대	· 당해 기업결합으로 시장진입을 위한 필요최소자금규모가 현저히 증가하는 등 다른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진입장벽이 증대하는 경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① SKT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건(2008.3) : 이동통신시장과 유선통신시장 - 유무선 결합상품시장에서 동 혼합형 기업결합이 SKT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시켜 경쟁 사업자 배제, 진입장벽 증대가 우려되어 시정조치 ② 하이트맥주의 진로 주식취득건(2006.1) : 맥주, 소주 시장 - 양사를 잠재적 경쟁자로 본 기업결합으로 잠재적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고, 주류 도매상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진입장벽을 증대할 우려가 있어 조치	

4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시 고려사항

- 기업결합 후 결합당사회사가 정보자산을 활용하여 시장지배력을 형성·강화·유지하는 경우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기업결합 유형별 경쟁제한성 판단 요건을 고려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 (가) 결합을 통하여 얻게 되는 정보자산이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대체하기 곤란한지 여부
 - (나) 해당 결합으로 인하여 결합당사회사가 경쟁사업자의 정보자산 접근을 제한할 유인 및 능력이 증가하는지 여부
 - (다) 결합 이후 정보자산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하여 경쟁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지 여부
 - (라) 결합당사회사가 정보자산의 수집·관리·분석·활용 등과 관련한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비가격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여부

4 경쟁제한성 완화요인 유무 확인

1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 (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상당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경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이 경우 해외경쟁의 도입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
 - ①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감 추이
 - ② 당해 상품의 국제가격 및 수급상황
 - ③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의 정도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현황
 - ④ 국제적인 유력한 경쟁자의 존재 여부
 - ⑤ 관세율 및 관세율의 인하계획 여부
 - ⑥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 또는 이윤율 변화에 따른 수입증감 추이
 - ⑦ 기타 각종 비관세 장벽
- (나) 당사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당해 상품에 대한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이 상당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에 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 (다) 경쟁회사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이 높고 기업결합후 당사회사의 국내 가격인상 등에 대응하여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해외경쟁 도입수준을 고려한 관련사례>

- ① 삼익약기의 영창약기 주식취득건(2004.9) : 피아노시장
 - 일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압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제품은 고가품, 중국 제품은 저가품으로서 수입비중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배척
- ② 삼성전자와 도시바사 간의 조인트벤처회사 설립건(2004.5) : 광디스크 시장
 - 수입비중이 40%에 달하는 등 수입이 용이하고, 해외에 강력한 경쟁 사업자가 존재하는 등 글로벌 경쟁압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허용

② 신규진입의 가능성

- (가)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이 가까운 시일 내에 충분한 정도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으로 감소되는 경쟁자의 수가 다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 (나) 신규진입의 가능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
 - ① 법적 제도적인 진입 장벽의 유무
 - ② 필요최소한의 자금규모
 - ③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생산기술조건
 - ④ 입지조건
 - ⑤ 원재료조달조건
 - ⑥ 경쟁사업자의 유통계열화의 정도 및 판매망 구축비용
 - ⑦ 제품차별화의 정도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진입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① 당해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투자계획 등을 공표한 회사
 - ② 현재의 생산시설에 중요한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당해 시장에서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이 이루어지면 중대한 진입비용이나 퇴출비용의 부담없이 가까운 시일 내에 당해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
- (라) 신규진입이 충분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억제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범위를 갖추어야 함. 특히, 차별화된 상품 시장에서는 결합 당사회사의 제품과 근접한 대체 상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존재하는지를 고려

〈신규진입을 고려한 관련사례〉

- ① CJ등의 플레너스 주식취득 건 (2004.7) : 영화상영 시장
 -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시장집중도 요건에 해당하지만, 타 사업자들이 구체적인 신규 진입계획을 갖고 있는 등 가까운 시일 내에 신규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동 기업결합 건을 승인

③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 (가) 기능 및 효용측면에서 유사하나 가격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생산기술의 발달가능성, 판매경로의 유사성 등 그 유사상품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 (나)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시장 간의 지리적 근접도, 수송수단의 존재 및 수송기술의 발전가능성, 인접시장에 있는 사업자의 규모 등 인근 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④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자가 기업결합 후에도 공급처의 전환, 신규 공급처의 발굴 및 기타 방법으로 결합기업의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때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이 경우 그 효과가 다른 구매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고려

5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

■ 다음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

①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가.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며 이러한 효율성 증대효과의 발생여부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1)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 규모의 경제생산설비의 통합생산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 ㉡ 판매조직을 통합하거나 공동활용하여 판매비용을 낮추거나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 ㉢ 시장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판매 또는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 ㉣ 운송보관시설을 공동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 ㉤ 기술의 상호보완 또는 기술인력조직자금의 공동활용 또는 효율적 이용 등에 의하여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는지 여부
- ㉥ 기타 비용을 현저히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 ㉠ 고용의 증대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 ㉡ 지방경제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 ㉢ 전후방 연관 산업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 ㉣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 ㉤ 환경오염의 개선에 현저히 기여하는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기준에 따름
 - ㉠ 설비확장,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성 증대를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 ㉡ 생산량의 감소, 서비스질의 저하 등 경쟁제한적인 방법을 통한 비용절감이 아닐 것
- (2)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3) 효율성 증대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부분을 포함하지 아니함

다.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가’에서 규정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커야 함

②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보다 적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렵거나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가. 회생이 불가한 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악화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말하며 이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회생이 불가한 사업부문의 경우도 동일)

- ㉠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 ㉡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지 제298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는 회사인지 여부

㉔ 당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회사와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나. 기업결합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함

- ㉑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㉒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의 기업결합 관련 사례>

·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건(2020.4) :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

- 피 인수 회사가 '13~'19년 자본잠식 상태인점, 미지급 채무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코로나19의 여파로 단기간 내에 영업 정상화가 어려운 점, 제주항공 외에 인수 희망자가 없는 등 기업결합 이외에 경쟁 제한성이 더 적은 방안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시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회생이 불가한 회사'로 인정하여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적용의 예외 인정

4. 계열회사 간 흡수합병시 공정거래법상 유의사항

(비교적 빈도가 잦은) 계열회사 간 흡수합병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4개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함

- ① 계열회사 간 합병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
- ② 계열회사 제외 신고
- ③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의무
- ④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1 기업결합 신고 시 유의사항

- ①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은 특수관계인 간의 기업결합으로 간이심사 대상에 해당하며,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
- ②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는 간이기업결합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정위 기업결합과에 제출해야 함
(*대상회사 : 합병의 경우, 존속 회사)
- ③ 포스코그룹은 사전신고 대상이므로 계약일 이후 이행완료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행완료일 :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2 계열회사 제외 시 유의사항

1 계열회사 제외란?

- 계열회사인 회사가 더 이상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계열제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열제외 대상 회사는 변동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2 다음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 지분율 요건

- 동일인(포스코)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계열회사 등)와 합하여 당해 회사 발행주식(우선주 제외)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 실질 지배력 요건

-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동일인이 당해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나 임원 50% 이상을 선임하고 있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하여 당해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회사 간 임원겸임 등 인사 교류가 있는 회사
 -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상품·용역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 관계가 있거나, 기타 당해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 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3 계열제외 시 유의사항

- ㉠ 계열제외는 계열편입과 달리 공정거래법 관련 규제의 해제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공정위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음

- ㉠ 계열제외를 위하여 동일인 등이 보유한 지분을 30% 미만 최다출자자로 지분 조정을 하는 경우, 비록 지분율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동일인 측이 최다출자자이므로 실질 지배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음
- ㉡ 계열제외를 위하여 동일인 등이 보유한 지분을 상당 부분 정리하였다도, 동일인 측에서 선임했던 대표이사가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거나, 동일인 측에서 선임했던 임원이 전체 임원의 50% 이상인 경우 실질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열제외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3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대기업집단의 비상장회사는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경영활동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 수시로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합병으로 인해 공시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회사합병 결정

- 회사 간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등이 있을 때에는 회사합병 결정 공시가 반드시 요함
- 공시 주체 : 인수 또는 합병 회사가 공시
- 공시 시기 : 이사회 결의 등 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로부터 7일 이내
- 공시 내용 : 합병방법, 합병목적, 합병비율, 합병 상대회사의 정보 등

2 유상증자 결정

- 지분관계가 서로 없거나, 지분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100% 출자관계가 아닌 계열회사 간 합병시에는 합병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가분에 대하여(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따로 없다 하더라도) 증자 결정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함

《 포스코AST와 포스코 NST 간 합병의 경우 》

- 합병주체는 포스코AST이며, 양 사 모두 지분은 포스코가 100% 소유
- 합병 후, 포스코NST의 보유주식은 없어지며 포스코AST가 신주 발행을 통해 보유주식이 증가함. 이 경우, 포스코AST는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 증가분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필요

4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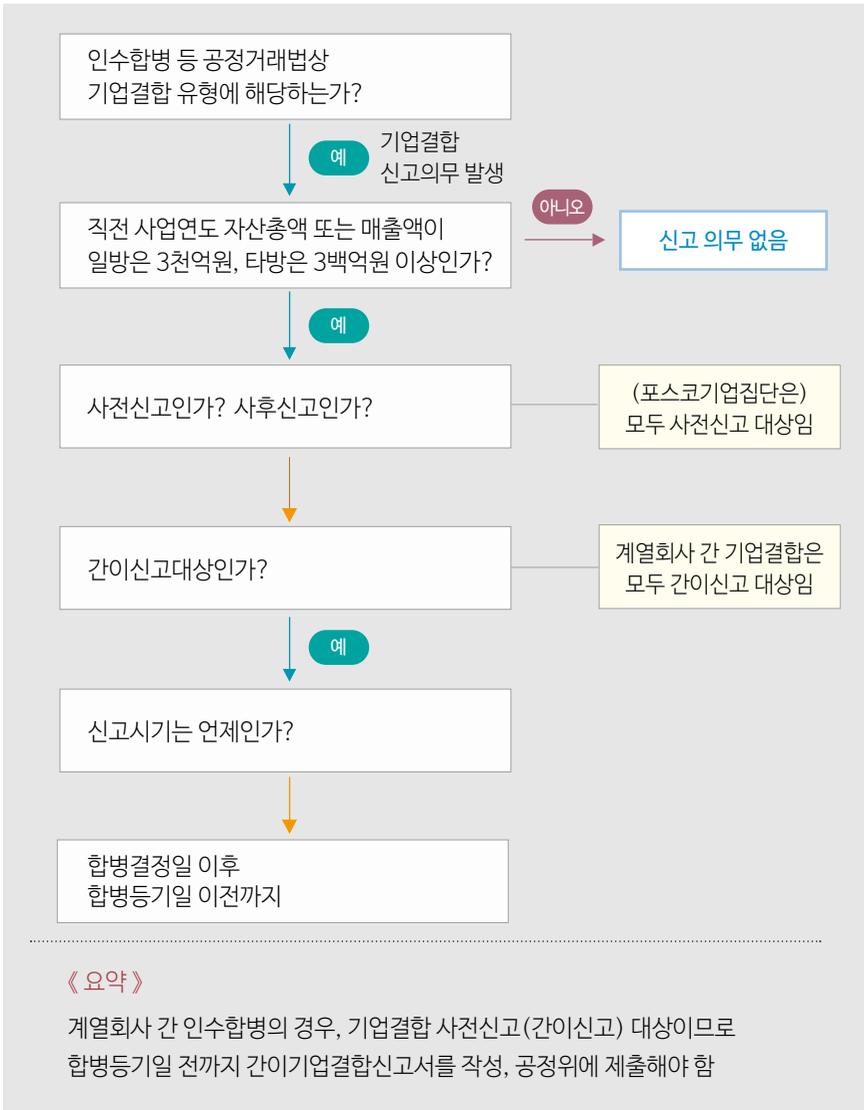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에 공시해야 함
- ※ 합병을 위하여 계열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는 경우,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 하는지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함

- 공시 주체 : 인수 또는 합병 회사가 공시
- 공시 시기 : 이사회 결의 등 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로부터 7일 이내
- 공시 내용 : 신주의 수,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 ※ 기타 투자판단 참고사항에 합병으로 인한 자본 증가임을 명기해야 함

③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 100% 출자 관계가 아닌 계열회사 간 합병 시, 합병을 위해 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동일인 측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공시를 해야 함. 동일인 측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인 측 보유주식비율이 1% 이상 변동하거나 동일인 측 최대주주의 주식수나 지분율의 변동이 없더라도 그 구성원 간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 대상
- 공시 주체 : 인수 또는 합병회사가 공시
- 공시 시기 : 주권교부일 등 지분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
- 공시 내용 : 동일인 측 지분 변동 내역 등

인수합병시,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체크사항



인수합병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 대한 체크사항

항목	해야할 일
①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지분을 이미 100%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① 회사합병 결정 공시
② 인수합병 회사 간에 서로 지분관계가 없었던 경우	① 회사합병 결정 공시 ② 유상증자 공시
③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지분을 이미 일정량(100% 미만)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① 회사합병 결정 공시 ② 유상증자 공시(합병회사가 신주발행을 통해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③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공시(1%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④ 공시시기는 언제인가?	· 회사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7일 이내 · 주권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
⑤ 공시주체는 누구인가?	· 합병회사(존속회사)

《 요약 》

인수합병 관련,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 항목은

- ① 회사합병 결정 (필수 의무)
 - ② 유상증자 결정 (조건부)
 - ③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조건부)
- 회사합병 결정 사항은 반드시 공시하고, 유상증자 및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은(회사 간 지분관계 및 신주 발행 여부를 파악하여) 공시 유무를 판단해야 함

5. 기업결합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1 법규 위반시(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

-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 또는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인 경우 당해 행위의 금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이 때 시정조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이행가능한 것이어야 함
- 공정위가 부과하는 시정조치의 유형은 조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원칙적으로는 구조적 조치를 행태적 조치에 우선하여 부과함

유형	내용
구조적 조치	금지조치, 자산매각조치, 지적재산권 조치 등 결합당사회사의 자산이나 소유구조를 변경시키는 시정조치 -(금지조치) 해당 기업결합 전체를 발생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발생한 기업결합을 원상회복시키는 조치 -(자산매각조치) 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을 결합 당사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조치 -(지적재산권 조치) 결합당사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적재산권의 소유 또는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
행태적 조치	일정 기간을 정하여 결합당사회사의 영업조건, 영업방식, 영업범위 또는 내부경영활동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

-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 제기 가능

2 시정조치 미이행시(공정거래법 제16조)

-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당 하단 기준금액의 1만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구분	내용
주식취득, 회사신설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합병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영업양수	영업양수금액

<이행강제금 부과사례>

- ① 현대HCN의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주식취득건(2013.03) 시정조치 관련
 - 공정위의 수신료 인상금지명령을 2013.4.1.~ 2016.7.31.까지의 기간 동안(1,218일)이행 하지 않아 불이행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13억 4,24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 ② 코오롱의 고탐 영업양수건(2002.12) 시정조치 관련
 - 시정조치 이행기간인 2003.4.30까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5.1부터 매 1일당 61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코오롱은 27일간의 불이행에 대해 총 1억 6,680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

3 벌칙(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30조)

-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음의 과태료 부과기준 참고)

■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시 위반행위 유형별 과태료 산정기준

■ 사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구분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2천억원~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신고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400만원	480만원	80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480만원	600만원	1,000만원
	2조원 이상	800만원	1,000만원	1,200만원

•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에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전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구분		기업결합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신고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000만원	2,400만원	3,600만원
	2조원 이상	3,0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 허위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 7,000만원

■ 부과기준 설명

-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한 자의 범위
 - 기업결합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지연 신고한 자, 허위신고한 자, 이행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 신고기한 도과기간에 따른 가중
 - 기업결합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기한을 초과하기 시작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매 1일마다 기본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다만, 가산 하는 금액은 기본금액의 150%를 넘을 수 없음
- 위반횟수의 산정
 - 당해 기업결합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간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이 기준 시행 이전에 과태료 및 경고를 받은 횟수를 합산한다)가 1회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기본금액의 20%에 해당 하는 금액을 가중
 -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위반횟수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데 포함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위반횟수도 분할신설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데 포함하지 아니함

물고 답하고(물 & 답)

물 우리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등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는가?

답 신고의무 있음. 계열회사 간 기업결합은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에 해당되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으로 추정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는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하여 신고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 신고의무 있음. 단, 2005년 4월 1일부터는 계열회사에 대한 임원 겸임의 경우는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신고의무는 없음

물 시장에서 별도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으나 주식의 무상증여 또는 주식배당 등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의 20%(공개회사일 경우 15%)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답 공정거래법상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유상증자시 실권주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나 주식의 무상증여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상승하는 경우 등 어떠한 이유로든지 주식소유 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함

물 기업결합 신고의무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주식취득 비율의 산정방법은?

답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은 기업결합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계열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주식취득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주식의 소유비율을 합산함

물 영업의 주요부분을 양수한다고 할 때 영업의 주요부분의 의미는?

답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로써 영업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물 임원을 단순 교체한 경우에도 임원겸임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답 임원의 단순교체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

물 소규모회사가 대규모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가?

답 기업결합 신고의무는 작은 규모의 회사가 큰 규모의 회사를 합병하느냐의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합병 당사회사 중 일방이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계열회사 합산)이 3,000억원 이상이고 타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음. 단,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 국내시장에서월간 100만명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음

물 자산규모 2조원인 대기업에 속하는 회사가 단독으로 100%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지?

답 순수하게 특수관계인만이 참여하는 새로운 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A사의 직원이 계열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을 때 신고의무가 있는지?

답 계열회사의 임원겸임은 신고의무가 없음

물고 답하고(물 & 답)

문 기업결합과 M&A는 어떻게 다른가?

답 일반적으로 기업결합은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 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 기업결합을 M&A라고도 하는데 이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가 합성된 용어로서 대표적인 기업결합의 유형을 나타내는 말이 일반용어화 된 것임

문 다른 회사의 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하도록 설득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불공정한 기업결합에 해당하는가?

답 단순히 다른 회사의 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하도록 설득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정당한 주식취득이지만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음

문 다른 회사와 함께 회사를 새로 설립할 때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는 최다출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답 신고의무가 있는 최다출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동시에 신고해야 함. 다만, 신고의무자 중 하나의 회사가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신고한 것으로 봄

문 취득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총액이 3,000억원 미만이나 피취득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 취득회사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는가?

답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는 취득회사뿐만 아니라 피취득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 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 취득회사는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함. 즉, 취득회사 또는 피취득회사 중 적어도 하나의 회사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회사는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함

문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기준은?

답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은 ① 외국기업 간의 기업결합과 ② 국내 회사가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2가지 경우로 구분이 가능함

- 어느 경우이든 신고의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신고요건(일방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타방 300억원 이상)을 충족하면서 외국 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3백억원 이상이어야 함(시행령 제21조 제3항)

- 다만, 외국회사가 국내기업을 결합하는 경우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기업결합 이므로 이러한 추가요건을 충족할 필요없이, 일반적인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대상에 해당함

문 B사는 A사가 사옥으로 쓰던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이 경우에 영업양수(영업용 고정자산) 신고대상인지 여부는?

답 단순히 건물을 사고파는 것이라면 경쟁과 무관하므로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만약 A, B사 모두 방송업을 하는데 방송용 장비까지 포함해서 매도한 것이라면 방송을 위한 영업용 고정자산으로 방송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가 필요함. 또한 A사가 일부는 사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하고 있었는데, B사가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매수한 경우, 임대업을 위한 영업용 고정자산이므로 신고가 필요함. A사는 건설업자로서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업을 하는 B사에 판매하는 경우, A, B의 영업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단순히 건물을 사고파는 것에 불과하여 영업용 고정자산으로 보기 어려워 신고가 불필요함

문 공정거래법 제11조 제8항에서 금지하는 기업결합 이행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답 공정거래법 제11조 제8항에 따르면 신고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물고 답하고(물 & 답)

문 새로운 회사설립에 A사가 40%, B사가 30%, C사가 30%를 출자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는 누구인가? 단, B사와 C사는 계열회사 관계임

답 신설회사 설립의 경우,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신고함(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5호)

- 주식취득 또는 회사설립 참여의 경우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 하거나 최대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회사의 특수 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함(법 제11조 제5항)
 - 이 경우 B사와 C사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60% 지분을 가진 최대출자자가 되고 두 회사가 모두 신고의무대상회사가 됨
- 다만,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를 신고대리인으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음(공정거래법 제11조 제11항)

문 A사 직원이 A사의 경영전략과는 무관하게 다른 회사 B사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한가?

답 임원겸임은 지배관계를 떠나 임원겸임행위가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며, 직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회사의 결정에 의한 것이든 법원 등기부상의 임원으로 등기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함

문 기업결합 신고의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며, 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답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가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③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가 부과됨(공정거래법 제130조 (과태료) 제1항 제1호 참조)

- 과태료의 금액은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됨
- 과태료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별로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큰 금액에 따라 최소 400~4,000만원까지 부과되며, 허위로

신고한 자는 7,000만원이 부과됨

- 그 외 신고기한 초과기간, 위반횟수, 기타 가중·감경사유에 따라 금액이 결정됨

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시 기업결합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는 어디인가?

답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시 최대출자자에게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나 PEF의 경우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을 무한책임사원(GP)이 하므로 최대출자자가 유한책임사원(LP)이라 하더라도 무한책임사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이 모든 유한책임사원을 상대회사로 하여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

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시 신고방법 및 계열회사 편입여부

답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은 간이신고대상에 해당함
설립된 PEF는 무한책임사원의 업무 진행 및 책임하에 운영되므로 일반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의 계열회사로 판단함. 다만, 지분참여자들 간의 별도 규정에 따라 PEF를 무한책임사원 외에 특정 회사의 계열사로 지정한다면 그 규정에 따라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결례

사례 ① (주)조흥은행은 2003년 8월 29일 (주)쌍용의 발행주식 총수의 20.94%를 취득하고 법정신고기한(주식대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을 91일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음

심결요지 (주)조흥은행은 대규모회사에 해당되며,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0%(상장법인 15%)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하나, (주)조흥은행은 법정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 규정을 위반하였음

제재내용 과태료 : 300만원

사례 ② 석유화학(주)는 2004년 7월 29일 채권금융기관과 (주)KP케미칼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1월 9일 (주)KP케미칼의 주식 53.8%를 취득한 후 2004년 11월 15일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음. 취득회사인 호남석유화학(주)와 피취득회사인 (주)KP케미칼은 PET를 생산·판매하고 있음

심결요지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PET시장에서 호남석유화학(주)의 시장점유율이 매출액, 판매량 기준 1위로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함. 또한, 당해시장은 초과공급 상태여서 신규진입의 가능성이 낮으며, 수입도 국내외 시장상황, 수입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기업결합으로 인해 PET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

제재내용 호남석유화학(주)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남석유화학(주) 및 (주)KP케미칼이 생산·판매하는 PET Chip의 수출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당해연도 국내가격 인상률을 외국에 수출하는 동일 제품의 외화표시 가격 인상률 이하로 하여야 하며, PET Chip의 수출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국내가격을 인하하되, 당해연도 국내 가격 인하율은 최소한 외국에 수출하는 동일제품의 외화표시 가격인하율 이상으로 하여야 함

사례 ③ 2009년 5월 롯데면세점은 파라다이스면세점의 부산 시내점 및 대구 공항점의 인수를 추진함

심결요지 공정위는 본 건 결합의 관련 시장을 ‘부산·경남 지역의 시내 면세점’으로 획정함. 관련 시장에서 롯데면세점과 파라다이스 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97.4%로 독점을 초래한다고 결론 내림. 왜냐하면, 결합 후 부산 지역에서의 면세점 간 치열한 경쟁이 소멸되고, 롯데의 영향력 증대로 인한 판매가격조정과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규브랜드 입점 방해 등 경쟁 제한 행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증대됨. 또한 관세청의 시내 면세점 특허 정책에 따라 신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본 기업결합으로 인해 대구·경남 지역의 시내 면세점 및 출국장 면세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함

제재내용 당해 기업결합 불허

사례 ④ 2009년 4월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사업자인 e-bay는 G마켓 인수를 공정위에 승인 요청함

심결요지 e-bay가 G마켓을 인수하게 되면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이 82.7%에 이르게 되므로 인터넷 비즈니스 특성상 신규 진입이 용이하고, 포털 사업자 종합 인터넷 쇼핑몰 등의 오픈마켓으로 전환 진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조건부 승인

제재내용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과

- 향후 3년간 판매 수수료율의 인상 금지
- 향후 3년간 등록 수수료, 서비스(광고) 수수료(경매방식 제외)단가의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인상률 이내로 제한
- 중소기업 판매자를 위한 보호대책 수립
- 공정거래법 준수방안 수립·시행 및 내용 판매자에게 공지

심결례

사례 ⑤ 2009년 10월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방통위에 인가 신청

심결요지 본 건은 계열회사 간의 합병으로 원칙적으로는 간이심사대상이고, 3사 모두 후발사업자로서 대부분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합병 후 추가적으로 생기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

공정위는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건없이 허용함

사례 ⑥ 롯데인천개발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터미널 건물 및 부지 등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시 동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중인 신세계 백화점과 실질적인 영업양수가 발생함. 롯데인천개발은 본 기업결합을 위해 2012년 12월 28일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2013년 1월 30일자로 9,000억원 규모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재정난 타개의 일환으로 본 인천터미널 매각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알려짐

심결요지 본 건의 상품시장은 백화점 시장으로, 지리적 시장은 인천·부천지역 시장으로 한정함

【심사 시점】 본 기업결합의 실제효과는 신세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2017년 11월 19일 이후에 발생하나, 기업결합 행위는 현재시점에 일어나기 때문에 신규 진입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려하여 경쟁 제한성 여부를 판단함

【경쟁제한성 판단】 기업결합 후 시장 집중상황, 단독효과, 구매력 증대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본건은 형식적으로 롯데·인천광역시 간 인천터미널 부지 등 매각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그 실질은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을 우회적으로 양수하는 것임

제재내용 **【구조적 조치】** 2017년 만료되는 신세계 인천점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천·부천지역 롯데

백화점 중 인천점을 포함하여 2개 점포를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로서 기존 용도로 운영하려는 자에게 매각할 것. 다만,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이 파기되거나 만료되는 시점에 경쟁 제한성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하며, 아울러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 등 발생시 공정거래위원 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명령 이행을 연장할 수 있음

【행태적 조치】 2031년까지 신세계와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는 부분에 대해 신세계가 독립적으로 백화점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토록 함

사례 ⑦ 웨스턴디지탈은 히타치GST의 주식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 (2011. 4. 8)

심결요지 공정위는 양 회사의 결합으로 인해 3.5" 데스크탑용 HDD, 가전용 (3.5") HDD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HDD 생산 업체 간 협조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함

- 히타치GST와 같은 일종의 독행기업(Maverick)이 사라짐에 따라, 사업 자 간 명시적, 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해지고, 정보공유 가능성 증대
- 또한, 기본적으로 동질적 재화인 HDD의 특성 및 여유설비의 부족 등에 따라 협조 상태에서의 이탈 가능성이 낮음

■ 효율성 증대효과 여부

- 피심인이 주장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업결합 특유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만큼 충분하다고 보기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

■ 제재내용

매각조치 등
- 3.5" 생산 관련 자산매각 (관련 지식재산권의 사용권 부여 등을 포함)
- 매각대상 영업과 관련된 자산의 이전
- 자산매각 이후 3년간 핵심부품 공급 의무
- 매각대상 영업과 관련된 각종 계약들의 이전 협조 의무

심결례

사례 ⑧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기업결합 건

■ 기업결합 개요

- 세아베스틸은 포스코로부터 포스코특수강 주식 52.16%를 인수
-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은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빌렛 등 7개 상품 시장에서 경쟁관계이므로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
- 특히, 스테인리스 선재-스테인리스 마봉강, 스테인리스 선재-스테인리스 와이어 시장에서는 원재료 공급부터 제품생산까지 수직계열화도 이루어짐

■ 관련 시장

- 상품시장 : 공구강, 플라스틱금형강, 탄합봉강, 탄합선재, 빌렛, 라운드빌렛 등
- 지리적 시장 : 결합당사가 공급하는 특수강은 수출 비중이 낮고 수입품의 경우도 품질 등의 면에서 국내 제품과 경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내 시장으로 지리적 시장을 확장

■ 경쟁제한성 판단

-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하는 7개 시장 중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빌렛 등 3개 시장에서 경쟁제한이 우려
 - 탄합봉강의 경우 결합당사 점유율 합계는 52.7%이고 결합 후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차이가 41.8%p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짐
 - 빌렛의 경우 결합당사 점유율 합계는 44.8%이고 결합 후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차이가 17.1%p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짐
 - 라운드 빌렛의 경우 국내 생산업자가 2개사에서 1개사로 감소하여 독점되어 가격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큼
- 스테인리스 선재를 원료로 마봉강과 와이어를 생산하는 시장과 관련된 수직형 기업결합의 경우 원재료 구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이 우려
 - 포스코특수강은 스테인리스 선재를 공급하는 유일한 국내 사업자(점유율 60.7%)이고 세아베스틸의 계열회사인 세아특수강은 스테인리스 마봉강(CdBar) 시장의

1위(점유율 48.9%) 사업자이고 세아메탈은 스테인리스 와이어 시장의 2위(점유율 9.7%) 사업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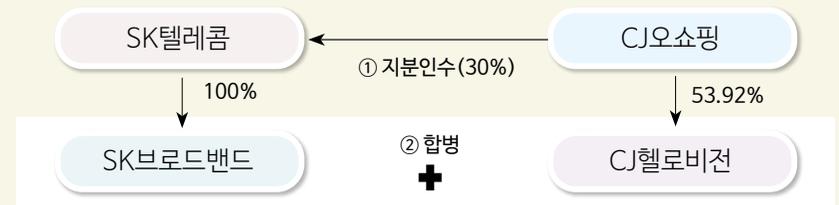
■ 시정조치

- 가격인상 등 제한 :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이 직접 경쟁하고 있는 탄합 봉강, 빌렛·라운드빌렛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가격 인상 등을 제한
- 가격차별 및 공급량 조절 제한 : 경쟁 사업자에 원재료 구매선 봉쇄가 우려되는 시장(빌렛 및 스테인리스 선재)에서는 가격 차별 및 공급량 또는 공급 비율 조절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사례 ⑨ 3개 방송 통신 사업자의 기업결합 건

■ 기업결합 개요

- SK텔레콤(이하 SKT)의 CJ헬로비전 발행 주식 30% 취득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이하 SKB) 합병(2015년 12월 신고)



심결례

■ 관련 시장 확정

- 상품시장 : 방송분야 및 통신분야
 - 방송분야 :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
 - 통신분야 : 이동통신 소매시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고속 인터넷시장, 유선전화시장, 국제전화시장
- 지리적 시장 : 유료방송시장은 CJ헬로비전이 케이블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23개 방송구역별 지역시장으로, 나머지 상품시장은 전국시장으로 확정

■ 기업결합 유형

- 유료방송시장 이중 플랫폼(케이블 TV와 IPTV) 사업자 간 기업결합인 동시에 이동통신, 고속 인터넷 등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형 결합이 발생
 - 수평형 결합 : 23개 방송 구역별 유료방송시장, 방송광고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고속인터넷시장, 유선전화시장, 국제전화시장 등
 - 수직형 결합 : 이동통신 도매시장

■ 경쟁제한성 판단

①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 구역 중 결합 당사회사 점유율 합계가 1위인 21개 방송 구역별 각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
- 시장 집중 상황
 - 기업결합 이후 21개 방송구역 유료방송시장에서 결합 당사자들의 시장점유율은 46.9%~76.0%에 이르고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최대 58.8%p에 이르는 등 결합 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 특히, 4개 지역 유료방송시장에서는 새롭게 1위 사업자가 됨
- 단독의 요금 인상 가능성
 - CJ헬로비전은 IPTV 사업자 중 가장 유력한 SKB와 결합함으로써 케이블 TV요금 인상을 억제하던 경쟁 압력이 크게 약화. 실제로 CJ헬로비전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해 오고 있음
-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압력이 존재한다고 판단

②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T가 알뜰폰 1위 사업자로서 강력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던 CJ헬로비전을 인수함으로써 이동통신 소매시장의 경쟁압력이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음

③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 이동통신 도매서비스 공급자인 SKT가 가장 유력한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함으로써 경쟁 도매 공급자들을 봉쇄시킬 가능성이 있음
- 상부시장인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SKT의 시장점유율은 45.6%이고, 하부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알뜰폰 시장에서는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이 1~2위 사업자로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28.45%임
- 만일 본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알뜰폰 가입자의 28.45%를 확보함에 따라 SKT의 경쟁사업자의 이동통신 도매서비스 판매선 봉쇄가 가능해 짐. 취득 회사인 SKT는 알뜰폰과의 경쟁으로 시장점유율이 지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익 저하를 만회하고자 이동통신 도매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봉쇄할 유인도 충분히 있음

④ 경쟁제한성에 대한 종합 결론

- 만일 이번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23개 지역 유료방송시장 및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 당사 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동 시장에서의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시정조치

-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SKT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B 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함
- 과거 방송통신 분야 사례와는 달리 수평, 수직형 기업결합이 존재되어 있어 경쟁제한적 우려가 여러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 등으로는 근본적 치유가 불가능함

포스코
스틸리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대규모기업집단
부문
(제도 및 공시)

1. 대기업집단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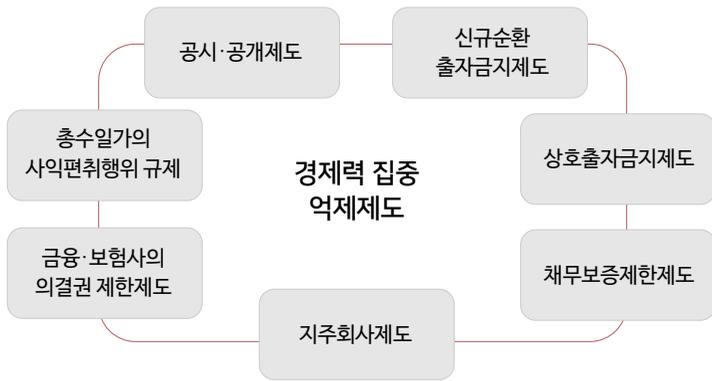
1 기업집단의 지정 (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38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매년 5월 1일부로 대기업집단(공기업 제외)으로 지정하고 기업집단에 지정된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통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있음

※ 대기업집단은 법률용어는 아니며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을 포괄하여 칭하는 경우에 사용함

지정된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시책의 대상이 됨

대기업집단 시책



《 다음의 경우는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

- 금융업을 전업으로 하는 기업집단 또는 금융·보험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 (이들 외 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집단은 지정대상 포함)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 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동일인인 기업집단

2 대기업집단의 유형 및 의무사항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에 따라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분류됨

대기업집단의 유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합계액	의무사항
공시대상 기업집단	5조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기업집단현황 공시 · 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제공 금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대상 기업집단 의무사항 일체 ·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의 금지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취득 및 소유 금지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 주식소유 현황 및 채무보증 현황의 신고 의무 등

* 단, 변경 지정기준은 개정법 시행(2021.12.30)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 지정부터 적용

국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 (2024년 5월 14일 기준 ※ 합계: 총 88개)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	순위			기업집단명	동일인
2023	2024	변동			2023	2024	변동		
1	1	0	삼성	이재용	45	44	1↓	엘엑스	구본준
2	2	0	에스케이	최태원	46	41	5↓	넷마블	방준혁
3	3	0	현대자동차	정inson	47	62	15↑	에코프로	이동채
4	4	0	엘지	구광모	48	46	2↓	이랜드	박성수
5	5	0	포스코	포스코홀딩스(주)	49	47	2↓	한국엔터테인먼트(주)(舊 한국타이어)	조양래
6	6	0	롯데	신동빈	50	52	2↑	태광	이호진
7	7	0	한화	김승연	51	50	1↓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8	9	1↑	HD현대	정몽준	52	51	1↓	다우키움	김익래
9	8	1↓	지에스	허창수	53	61	8↑	두나무	두나무(주)
10	10	0	농협	농협협동조합중앙회	54	49	5↓	삼천리	이만득
11	11	0	신세계	이명희	55	54	1↓	동원	김남정
12	12	0	케이티	(주)케이티	56	55	1↓	KG	곽재선
13	13	0	씨제이	이재현	57	56	1↓	HL	정몽원
14	14	0	한진	조원태	58	64	6↑	한국지엠	한국지엠(주)
15	15	0	카카오	김범수	59	57	2↓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16	16	0	엘에스	구자은	60	59	1↓	대방건설	구교운
17	17	0	두산	박정원	61	58	3↓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주)
18	18	0	DL	이해욱	62	63	1↑	애경	장영신
19	32	13↑	셀트리온	서정진	63	66	3↑	엠디엠	문주현
20	19	1↓	에이치엠엠	에이치엠엠(주)	64	68	4↑	크라프트	장병규
21	20	1↓	중흥건설	정창선	65	67	2↑	삼양	김윤
22	24	2↑	미래에셋	박현주	66	70	4↑	보성	이기승
23	23	0	네이버	이해진	67	65	2↓	동국제강	장세주
24	21	3↓	현대백화점	정지선	68	-	재지정	현대대상화재보험	정몽윤
25	25	0	에스-오일	에스-오일(주)	69	60	9↓	중앙	홍석현
26	22	4↓	부영	이종근	70	71	1↑	글로벌세아	김용기
27	45	18↑	쿠팡	쿠팡(주)	71	75	4↑	아이에스지주	권혁운
28	26	2↓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72	78	6↑	유진	유경선
29	27	2↓	하림	김홍국	73	-	신규	영원	성기학
30	30	0	SM	우오현	74	73	1↓	DN	김상현
31	29	2↓	에이치디씨	정몽규	75	69	6↓	고려에이치씨	박정석
32	28	4↓	영풍	장형진	76	74	2↓	오케이금융그룹	최윤
33	31	2↓	효성	조현준	77	82	5↑	BGF	홍석조
34	33	1↓	호반건설	김상열	78	-	신규	대신증권	양홍석
35	48	13↑	DB	김준기	79	76	3↓	하이트진로	박문덕
36	34	2↓	케이티앤지	(주)케이티앤지	80	79	1↓	농심	신동원
37	35	2↓	케이씨씨	정몽진	81	72	9↓	신영	정춘보
38	36	2↓	장금상선	정태순	82	77	5↓	한솔	조동길
39	53	14↑	교보생명보험	신창재	83	81	2↓	반도홀딩스	권홍사
40	39	1↓	코오롱	이용열	84	80	4↓	삼표	정도원
41	38	3↓	오씨아이	이우현	85	-	신규	하이브	방시혁
42	40	2↓	태영	윤세영	86	-	신규	소노인터내셔널	박춘희
43	43	0	넥슨	유정현	87	-	신규	원익	이용한
44	42	2↓	세아	이순형	88	-	신규	파라다이스	전필립

* 음영 표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초과)

2. 기업집단제도

1 기업집단이란?(공정거래법 제2조 제11호)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함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개 이상의 회사의 집단



기업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 개념

《동일인》

-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자연인과 법인 모두 가능
- 통상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기업집단의 총수가, 총수가 없는 집단인 경우 기업집단 내 주력회사가 동일인임

《동일인 관련자(시행령 제4조)》

-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 동일인의 배우자,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 인척
-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 계열회사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계열회사의 임원

2 기업집단의 범위

① 지분을 기준(시행령 제4조 제1호)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자 및 계열회사)와 합하여 당해 회사 발행주식(우선주 제외)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출자자인 회사

- 동일인이 단독으로 발행주식의 30% (무의결권 우선주는 제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동일인이 다음의 자(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합하여 최대출연자이거나,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혹은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임원 구성이나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계열회사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계열회사의 임원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함

② 지배력 기준(시행령 제4조 제2호)

아래 각항에 해당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동일인이 다른 주요주주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하여 당해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와 당해회사 간에

다음과 같은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포함)
- 당해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 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3 기업집단의 편입 및 제외

① 기업집단의 편입신고(시행령 제37조 제3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된 소속회사는 지정 이후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편입사유 발생 후 편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익월 1일에 편입·통지한 것으로 간주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공정거래법 제126조)

기업집단 편입신고 변동사유 발생기준

종류	지정시기
지분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권을 교부받은 날.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 대금을 지급한 날 •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의 다음날 •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새로운 회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의 설립 등기일
임원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주주와의 계약□합의 등에 의하여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 기업집단 편입 신고서 내용 》

- 당해회사의 명칭, 자본금 및 자산총액 등 회사의 개요
-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회사의 주식수
- 해당 회사의 국내회사 주식소유 현황
- 당해회사의 채무보증금액

② 기업집단의 제외(시행령 제5조 제1항)

아래 각항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당해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 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자자 간의 계약·합의 등에 의하여 동일인측이 사실상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다음 요건을 갖춘 친족독립경영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3% 미만일 것(단, 상장법인이 아닐 경우 10% 미만)
 -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와 일정관계가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일 것(단, 상장법인이 아닐 경우 15% 미만)
 -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친족계열회사 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 동일인측 계열회사와 친족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다만 조세특별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채무보증이나 거래 제외)
 -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측간의 거래(계열제외일 전·후 3년)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조치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다음 요건을 갖춘 임원독립경영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독립경영임원'이 동일인측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가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임원측 계열회사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출자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에 대하여 독립경영 임원 및 독립경영 임원과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자가 출자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단,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측 계열회사 지분을 3%(비상장사 15%) 미만까지는 허용 가능

- 비임원측 계열회사와 임원측 계열회사 간에 독립경영임원 외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 비임원측계열회사와 임원측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상호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일 것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 해당 회사로서 요건을 갖춘 회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

㉓ 기업집단의 예외 인정(시행령 제5조 제2항)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회사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그밖의 법인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법인 (다른 회사와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 외의 자로부터 채무보증 없이, 민자 SPC와 관련하여 사익편취나 부당지원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중 최대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해당 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회사
 -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2개 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자산 현물 출자, 합병 등으로 설립한 회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법인(이하 “민자SPC”) 중 동법 제 4조 제1호~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 민자SPC의 최대출자자가 임원구성·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민자SPC측 회사가 동일인측 지배회사에 출자하지 아니하며, 민자SPC측 회사와 동일인측 회사 간에 채무보증관계가 없고, (다만, 해당 민자SPC에 출자한 동일인측 회사가 해당 민자SPC에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민자SPC측 회사와 동일인측 회사 간에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위반으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기간(사업시행자 지정일~준공확인을 받기 전)동안 계열편입 유예 가능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및 자회사로서 회사 설립 등기일로부터 10년 이내 이고,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관계가 없는 회사
- 중소벤처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 5% 이상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소유하여 계열편입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로 요건 해당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중소벤처기업측 회사가 동일인측 회사에 출자하지 아니하고 중소벤처기업과 동일인측 회사 간 채무보증관계가 없으며, 요건 해당일 이후 중소벤처기업과 동일인측 간에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위반으로 조치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포스코 기업집단 편입 유예 회사 (2022년 1월 기준) 》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인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주) (2012.6.12~2022.6.11)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주)리스트벤처 (2017.12.8~2027.12.7)는 설립등기일로부터 10년간 계열편입이 유예됨
- 민자SPC인 마포하이브로드파크(주)(2016.7.26~준공일), 휴먼에코랜드(주) (2021.4.2~준공일)는 건설기간동안 계열편입이 유예됨

**새로운 회사 설립시,
업무처리 절차**

포스코와 자산총액 500억원인 회사 A와 자산총액 350억원인 회사 B와 함께 아래의 지분 구조로 새로운 회사 '월드컵'을 설립하는 경우 업무처리 절차는?

포스코	A	B
70%	20%	10%

기업결합 상대 회사 → A와 B사 모두 기업결합 상대 회사

기업결합 신고의무 발생 여부 →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A/B사의 자산총액이 모두 300억원 이상이므로 신고대상

기업결합 신고시기 → 회사 설립 결정일로부터 주금 납입기일(완료일) 사이에 신고(기업결합과)

신고 이후 해야할 일 → 포스코가 30% 이상 최다출자자이므로 설립 등기일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포스코 기업집단 편입 신고(기업집단정책과)

물고 답하고(물 & 답)

문 기업집단이란 무엇이며, 대기업집단은 어떻게 지정되는가?

답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대기업집단은 법률 용어는 아니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포괄하여 칭하는 용어임

문 기업집단과 계열회사의 차이는?

답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집단을 말하고, 계열회사는 2개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고 한다.

문 우리 회사가 지분을 전혀 보유치 않은 특정 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기업집단에 편입시켜야 하는가?

답 지분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 예를 들면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기업집단에 편입시켜야 함

문 국내 회사와 외국 회사가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외국인인 경우, 양측의 이사수가 동일하고 국내 회사가 대표이사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회사의 기업집단 편입 여부는?

답 외국인이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도 계열회사의 편입요건 중 하나인 양측의 이사수가 동일하고 동일인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열편입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서 국내 회사의 기업집단에 편입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신고를 해야 한다.

문 등기임원이 5명인 어떤 회사에 대하여 우리 회사에서 1명의 임원을 임명 하였으나, 임명한 임원이 대표이사일 경우 기업집단에 포함하여야 하는가?

답 대표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우리 회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임원수와 상관 없이 기업집단에 편입시켜야 함

심결례

사례 ① 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 2개사를 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누락하였음

심결요지 2014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개인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은 주주 명의자에 불과하고 삼성측과의 빈번한 인사교류, 주요한 의사결정에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실질주주를 삼성 측 계열회사로 판단하여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삼성의 소속회사인것으로 판단하였음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도 소속회사로 판단하였음

제재내용 【고발】 공정위는 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을 검찰에 고발조치함

사례 ②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은 2015년, 2017~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 소유회사, 친족회사 및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였음

심결요지 · 2015년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친족, 국내 계열회사, 해외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가 지분을 보유한 20개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였음
· 2017년 및 2018년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네이버(주)가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보유한 8개 회사를 계열회사에서 누락하였음

제재내용 【고발 및 경고】 공정위는 네이버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2015년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인 고발조치, 2017~2018년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함

3. 상호·순환출자 및 채무보증제한제도

1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시행령 제38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국내 총생산액의 0.5퍼센트 이상인 기업집단

- 단,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
 -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동일인인 기업집단
 -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기업집단(단, 당해회사의 자산총액을 제외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경우 제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회사

2 상호출자의 금지(공정거래법 제2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포함)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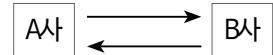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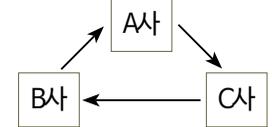
A사가 B사와 동일 기업집단 소속이고 그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인 경우
A사가 B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B사는 A사의 지분을 취득하지 못함

- 다음의 사유에 의한 출자는 6개월에 한해 상호출자제한 규정을 받지 않음
 -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6개월 이내에는 양 회사 중 하나의 회사는 상대회사 주식을 처분 (공정거래법 제21조 제2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됨 (공정거래법 제21조 제3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적용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적용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본 통지를 수령한 날을 기준을 함 (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 제2항)
 - 통지받을 당시 상호출자제한을 위반하고 있다면 지정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1년 간 적용이 유예 (공정거래법 제31조 제3항 제1호)

3 상호출자제한 위반시 제재 (공정거래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24조)

- 당해 행위의 금지, 주식의 처분, 법 위반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
-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불가
-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2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및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상호출자, 순환출자의 비교

종류	상호출자	순환출자
형태		
설명	A사가 B사에 출자하고 B사가 다시 A사에 출자하는 형태	A사가 C사에 출자하고 C사가 B사에, 다시 B사가 A사에 출자하는 형태
특징	기업집단 간의 상호출자는 금지되나, 비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는 금지되지 않음	현재 국내 재벌의 기업지배구조의 대표적 형태로 소액의 자본으로 가공자본을 형성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구조
위반 여부	공정거래법 위반	2014년 7월 법 시행 이후 신규 순환 출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이유 》

상호출자는 기업 간에 자금을 서로 주고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출자 없이 가공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거나 지배력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므로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함

4 신규 순환출자의 금지(공정거래법 제2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간 신규로 순환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함(법 제22조)

-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와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 출자를 금지함
-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의무 부과를 통해 점진적·자발적 해소를 유도함

②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

- 회사의 합병·분할, 영업전부의 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6개월)
-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 수령 (6개월), 주주배정방식 증자 참여시 실권주 인수 (1년)
- 워크아웃·자율협약 절차 개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충수일가 재산출연 등 (3년)
- ➔ 각 사유별 유예기간(6개월~3년)이내에 순환출자를 해소 해야함

③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규정에 대한 해석

- 순환출자 형성·강화·적용제외 해당 여부는 각 순환출자 고리별로 판단함
- ➔ 순환출자 형성·강화에는 6개월내 처분의무, 기존 고리내 합병 등의 적용제외 사안에는 처분의무 없음
- 유예기간(6개월) 기산점 : 합병등기일
- 처분 주체 : 계열출자를 한 회사
- 처분대상주식 : 순환출자 형성의 경우에는 주식전부처분, 순환출자 강화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출자분만 처분

④ 법 위반시 제재조치(법 제36조~제39조, 제124조)

-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법 위반사실의 공표 등 필요조치
-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불가
- 과징금(위반금액의 20% 이내) 및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5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공정거래법 제24조)

《채무보증의 개념(공정거래법 제2조 제18호)》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보험회사 제외)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

- 국내 금융기관범위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되지 않은 기업과 기업 간에 직접 행하는 보증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 해외현지법인 간 또는 해외현지법인과 국내법인 간 보증도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 계열회사 중 금융·보험 회사로부터 보증을 받는 것은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단,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으로 다음과 관련된 보증
 - 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 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의 채무에 대한 보증
 -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수금환급보증·유보금환급보증·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 금융기관 매입 및 내국 신용장개설에 대한 보증
 -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 금융기관이 당해 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공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자회사가 모회사인 공기업의 보증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재보증하는 경우

《채무보증제한 탈법행위의 유형(공정거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42조)》

-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병존적 채무보증)
-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기업집단 간 교차 채무보증)
- 기타 이면보증 행위 등

6 채무보증제한 위반시 제재조치(공정거래법 제37조, 제38조, 제124조)

- 관련 채무보증의 해소 등 시정명령
- 법 위반 채무보증액의 20% 이내에서의 과징금 부과 및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형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물고 답하고(물 & 답)

문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에 대해서만 금지되는가?

답 공정거래법 제21조의 의해 금지되는 것은 계열회사 간의 직접적인 상호출자뿐만 아니라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2014. 7. 25 시행)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음

문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도 규제대상에 해당되는가?

답 공정거래법 제24조에 의한 채무보증 금지규정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나 해외 계열회사로부터의 채무보증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문 금융·보험사의 여신과 관련하여 계열회사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채무보증에 해당되는가?

답 공정거래법 제24조에 의한 채무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된 인적 보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계열회사를 위한 담보제공(물적 보증)은 법상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문 A사, B사, C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경우, A사가 C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A사와 C사가 지분을 공동 출자하여 B사를 설립하였다면 상호출자제한 위반여부는?

답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본 사항은 상호출자제한 위반이 아님

문 금융·보험사의 여신과 관계되지 않는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도 금지되는가?

답 공정거래법 제24조에 의한 채무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된 보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내 금융·보험사의 여신과 관계되지 않은 보증(외상매입 관련 보증 등)은 법상 규제대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해외 금융·보험사의 여신과 관련된 채무보증도 법상 규제대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심결례

사례 ① SK주식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2000년 7월 31일 현재 SK에너지판매(주) 주식 71,220,193주(취득가액 기준 : 3,916억원)를 소유하고 있고, 계열회사 SK글로벌(주)는 SK주식회사 주식 14,699,169주(취득가액 기준 : 1,749억원)를 소유하고 있음. SK글로벌(주)가 2000년 7월 31일 SK에너지판매(주)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SK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SK에너지판매(주) 주식 71,220,193주를 대신하여 SK글로벌(주)로부터 SK글로벌(주) 주식 37,205,428주(3,916억원)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상호출자가 발생함

심결요지 SK주식회사는 2000년 7월 31일 SK에너지판매(주)와 SK글로벌(주)의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SK글로벌(주)와의 상호출자를 해소 시한인 2001년 1월 31일까지 해소하기 위하여 SK글로벌(주) 주식을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소시한 이후에도 처분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유하여 상호출자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SK주식회사는 SK글로벌(주)와의 상호출자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소해야 함
【과징금】 11억4,300만원

사례 ② 현대자동차(주)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의 소속회사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금지. 현대자동차(주)는 1999년 8월 16일 인천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평택항 일반부두 일부를 자동차 전용부두로 개축하여 자동차 전용선 접안시설 설치를 허가 받았음.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본 시설물을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원상복구 이행보증보험증권(17억 4,600만원)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시행을 허가함. 이후 현대자동차(주)가 기아자동차(주)에 자동차 접안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이전 인가를 신청하여 기아자동차(주) 대표 이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받음.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주)는 현대자동차(주)가 연대보증한 원상복구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채무보증제한제도를 위반

심결례

심결요지 현대자동차(주)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인 2001년 8월 13일 현대자동차(주)가 서울보증보험(주)의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계열 회사인 기아자동차(주)에 대하여 행한 연대보증은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의 금지에 해당되고 본 채무보증이 법상 허용되는 제한제외 대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사항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임

제재내용 【과 징 금】 1억7,500만원

사례 ③ 동아건설산업(주)는 계열회사인 대한통운(주)가 1,190,816주의 동아건설 산업(주)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년 6월 24일 대규모기업집단 동아의 동일인으로부터 대한통운(주)의 주식 1,162,090주를 증여받아 소유하였으며, 또한 대한통운(주)가 1999년 7월 27일 실시한 유상 증자에 참여하여 대한통운(주)의 주식 670,914주(취득가액 35억5,600만원)를 취득·소유

심결요지 동아건설산업(주)는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동아에 소속된 회사로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가 금지되어 있음 예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계열회사 대한통운(주)의 주식을 취득·소유하였 으므로 상호출자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제재내용 【시정명령】 동아건설산업(주)는 2000년 4월 15일 현재 계열 회사인 대한통운(주)와의 상호출자를 2000년 12월 31일 까지 해소하여야 함
【과 징 금】 8,000만원

사례 ④ 동양메이저(주)가 동양매직(주)의 주식 46.4%를 보유하고, 동양매직(주)가 한일합섬 주식(1.05%)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8년 5월 13일 한일합섬이 동양메이저(주)에 흡수·합병되어 동양메이저(주)와 동양매직(주) 간의 상호출자가 발생

심결요지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을 통해서 상호출자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당해 주식을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는데, 동양매직(주)와 동양메이저(주)는 이를 6개월이 경과한 2008년 11월 12일 까지 처분하지 않아 상호출자금지규정을 위반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동양매직(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호출자를 해소하도록 명령
【과 징 금】 1억7,300만원

사례 ⑤ (주)케이에코로지스가 기업집단 한라의 소속회사로 편입된 2013년 2월 1일부터 2년 유예기간 (2015. 1. 31)이 지난 2015년 8월 16일까지 (주)케이에코로지스에게 한 채무보증 행위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주)케이에코로지스에게 한 채무보증 내용을 누락하였음

심결요지 한라는 2010년 11월 16일 (주)케이에코로지스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에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케이에코로지스에 대한 연대보증을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된 날로부터 2년 유예기간(2015. 1. 31)이 지난 2015년 8월 17일에 해소하였으며,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주)케이에코로지스에 대한 채무 보증 내용을 누락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음

제재내용 【경고 조치】 경고 사유: ① 채무보증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는 바로 해소하여 법 위반행위 자진시정함
② 신고 누락행위는 한라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불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함

4. 계열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1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제25조 제1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
 - 금융·보험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 상장된 계열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다른 특수 관계인의 지분과 합하여 발행주식의 15%까지 의결권 행사 가능
 -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 정관 변경
 -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
- ⇒ 발행주식 총수에는 우선주, 자사주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포함하지 않으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함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범위 》

통계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는 업종

2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제25조 제2항)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익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말함)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

- ①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생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②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 한도 내 의결권 행사 허용(2022.12.30~단계적 시행*)

*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한도 축소(30%(~'23년) → 25%(~'24년) → 20%(~'25년) → 15%(~'26년~))

3 의결권제한 위반시 제재조치(공정거래법 제37조, 제124조)

- 당해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시정조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되면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 상호출자금지(1년 이내 해소)
- 채무보증제한(2년 이내 해소)
- 금융·보험계열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
 - 대규모내부거래이사회 의결 및 공시 / 기업집단현황 공시 /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비상장회사만 해당)
- 주식소유현황/채무보증현황 신고의 의무
-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 신규 순환출자 금지
- 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제공 금지

5. 지주회사제도

1 지주회사의 개념(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

- 구체적으로는 '자산총액 기준'과 '지주비율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자산총액 기준 :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 (2017.7.1~, 10년 유예)
 - 지주비율 기준 :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일 것

《공정거래법 개정(2021.12.30.부 시행)》

-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 상장 : 20% → 30%, 비상장 : 40%→50%
(단,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에만 적용)
-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
 -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 단, CVC 외부자금 비율 한도(40%)는 개별 펀드별 제한함
-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특례
(자회사 단계 설립 : 상장·비상장 모두 20%, 손자회사 단계 설립 : 상장·비상장 모두 50%)
 - 비계열회사 주식 취득(5% 한도내) 제한 폐지

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공정거래법 제18조)

-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한
 - 지주회사(자회사)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손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 (상장법인인 30%) 미만 소유 금지
- 자회사(손자회사) 외의 국내 다른 회사 주식소유 제한
 - 지주회사(자회사)는 자회사(손자회사)의 다른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 지주회사는 국내 비계열회사 주식을 당해회사 주식발행 총수의 5% 초과 소유 금지
- 출자 단계 제한
 - 증손 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
-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
 - 지주회사는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 보유를 금지
- 금융사와 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 금융 지주회사는 비금융사 소유가 금지되고,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사 소유가 금지
- 증손회사의 원칙적 금지
 -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가 금지되나 국내 계열회사(증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 행위제한 요건 충족 유예기간 부여
 - 각각 행위제한 규정에 대해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공정위 승인을 얻어 2년 연장 가능)의 유예기간을 부여

3 지주회사 범위반시 제재조치 (공정거래법 제37조, 제38조, 제124조, 제126조)

-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
- 위반 사유별 산정된 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부과
- 벌칙
 - 행위제한규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신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 1억원 이하 벌금

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1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정거래법 제26조, 시행령 제33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 및 용역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함**

-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함
-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함
- 적용대상거래에는 특수관계인을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으로 한 경우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도 해당
 - 계열회사 발행 유가증권을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하여 인수한 경우도 내부거래에 해당
 - '특수관계인을 위하여'란 특수관계인을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하지는 않으나,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를 의미함

《 특수관계인(공정거래법시행령 제14조) 》

- 당해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동일인)*
 - *그룹 총수가 없는 경우 기업집단 내 대표회사를 말함(포스코기업집단의 경우 포스코홀딩스(주) 동일인임)
- 동일인 관련자
 - 동일인 관련자에는 동일인의 친족(배우자,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혈족 4촌, 인척 3촌),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하는 계열회사와 비영리법인 및 그 임원 등이 포함 (시행령 제4조 제1호)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2 적용 대상회사 및 대상거래

• 법 적용 대상회사

- 공정거래법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 포스코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므로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적용 대상거래

-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자금거래는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국한되지 않음)
 - 유가증권거래는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
 - 자산거래는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포함함
 - 단, 상품 및 용역거래의 경우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인 기업집단(포스코, KT 등)에 소속된 회사는 적용되지 않음
 - 상품·용역거래는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계된 경상적 거래로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상품·용역거래인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상품·용역거래로 봄

• 적용 대상거래의 판단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함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회피하고자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1건의 거래행위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행위로 간주
- 동일 거래상대방과 같은 날 약관에 의한 여러 건의 기업어음거래가 동일 조건(발행일, 기간만료일, 이자율 등)으로 거래되는 경우 하나의 차입행위로 보아

기업어음의 금액을 합산하여 공시의무 여부 판단

- 계약서상 자동 연장 조항에 의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연장 여부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함

• 대규모내부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

- 공시대상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 채권, 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상품,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금융이나 카드 결제
 - 주식을 계열 증권사를 통하여 장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다만, 장 종료 후 시간외 거래는 공시대상)
 - 자산운용사와 계열증권사 간 수익증권 위탁판매 계약 체결

3 거래금액의 산정

- 자금·자산·유가증권 거래 : 실제 거래금액
- 담보제공 : 담보한도액
- 부동산 임대차 거래 : 연간 임대료 + 환산 연간임대료(보증금 × 이자율*) - 연간 관리비

*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적용(매년 개정)

4 공시시기 및 절차

- 공시시기
 -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는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에 공시해야 함
(단, 비상장법인은 7일 이내 공시)
 - 공시하여야 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해야 함
(7일의 기간 계산은 비영업일을 포함하며, 비영업일은 당해회사의 비영업일 기준으로 함)
- 공시절차
 -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전산망을 통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5 다른 법과의 공시내용 중복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의한 공시사항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신고하면 본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다만 그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해야 함

6 이사회 의결 및 공시사항의 주요내용 변경

- 이미 공시한 사항 중 다음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함
 -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의 변경
 - 거래금액, 거래조건(단가, 약정이자율 등)이 당초 보다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
- 일방의 이사회 의결에 의한 거래 취소 시에는 그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 공시하면 됨

《 포스코 ESG위원회 내부거래 운영현황 》

-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ESG위원회에서 내부거래 관련 사항을 심의
- 거래금액 5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ESG위원회 심의, 의결
-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 ESG위원회 사전심의 후 이사회 의결

7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정거래법 제29조, 시행령 제 36조)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취득·처분 및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후 공시를 해야 함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
 -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 취득 및 처분
 - 공익법인이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행위(주식 수, 거래금액과는 관계 없음)
 - 자금, 자산,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내부거래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를 위하여 자금, 자산,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자신의 순자산총계·기본 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인 거래
- ※ 이외의 규정은 현행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제26조 제3항 제4항)을 준용함

8 위반시 과태료 부과

1 기본금액

이사회 의결 여부	위반유형			과태료금액 (단위 :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누락 또는 허위 공시 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5,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 까지 공시한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500(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2,0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500(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5,000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7,000
	공시한 경우	-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0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7,000

2 기준금액

• 기준금액은 기본금액에 각 위반행위별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거래 금액	적용 비율(%)
100억원 이상	100
8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90
60억원 이상~80억원 미만	80
40억원 이상~60억원 미만	70
20억원 이상~40억원 미만	60
20억원 미만	50

3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조정금액은 다음의 가중 또는 감면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임의적 가중금액은 기본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 ⇒ 임의적 조정금액 = 임의적 가중금액 - 임의적 감면금액
- ⇒ 임의적 가중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가중비율의 합계
- ⇒ 임의적 감면금액 = 위반행위별 기준금액 × 감면비율의 합계

• 가중 조정사유 및 비율

- 공시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 사업자별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 10% 가중,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 가중

• 감면 조정사유 및 비율

- 거래내용이 최초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30%
- 계열 금융 투자회사에 의한 사실상의 중개금융거래로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계열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40%
-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자 사업자로서 이해관계인이 적고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적은 경우 50%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 ⇒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또는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 ⇒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물고 답하고(물 & 답)

문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 계열회사 A가 발행한 주식, 채권을 비계열회사로부터 계열회사 B가 매입하는 경우 계열회사 B는 계열회사 A를 위한 거래(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에 해당되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됨

문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 두 회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지?

답 거래규모가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있음. 만일 거래규모가 일방당사자에게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거래당사자에게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회사가 편입일 이전에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부과되는지?

답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는 기업집단 편입일로부터 발생하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없음. 다만,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로 편입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라 하여도 거래금액, 거래일시, 거래방법 등이 명시된 세부 거래조건이 아닌 단순 약정형태로 체결하고 있던 중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소속으로 편입된 이후 세부 거래조건 등을 별도 체결한 거래이거나, 당초 거래 조건이 변경되는 거래라면 거래 개시 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있음

문 발행어음이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 출금하지 않고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답 만기가 도래한 거래의 연장은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있음. 따라서 발행어음의 만기가 도래한 후 이를 출금하지 않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문 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가 50억원 이상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답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가 아니므로 출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문 당사는 포스코의 상법상 자회사입니다. 당사와 포스코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답 포스코기업집단의 동일인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포스코홀딩스)이므로 포스코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 간의 상품·용역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문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비영리법인에게도 부과되는지?

답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에 대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는 신설(2021.12.30일부)되었으며, 공익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은 공시의무가 없음. 다만, 비영리법인과 거래하는 계열회사는 거래금액*이 대규모 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의무가 있음.
(* 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문 부동산 매매계약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한 이후, 중도금과 잔금 지급시에도 별도 공시하여야 하는가?

답 중도금과 잔금 지급은 공시대상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별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없음

물고 답하고(물 & 답)

문 1일 총거래금액이 자본금의 5% 미만이며 50억원 미만일 경우(☞ 4월 12일 거래금액 40억원, 4월 14일 거래금액 10억원)에도 대규모내부거래로 보지 않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필요성이 없는지?

답 대규모내부거래의 기준이 되는 거래는 모두 건별 기준임.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그러나 이러한 거래가 동일 목적을 위한 동일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하여 이루어진 거래라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문 부동산임대차 계약시에는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상향조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지?

답 변경계약은 새로운 거래에 해당되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문 부동산 매매시 거래금액에 VAT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부동산 임대차 거래의 연간임대료 산출시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답 VAT와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음

문 회사 CI(로고) 사용에 대한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에 해당하는지?

답 계열회사와 CI(로고, 무체재산권)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거래 또는 행위는 자산거래에 해당되므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문 발행어음이 만기가 되었으나 만기연장 없이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에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답 만기가 도래한 발행어음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만기연장 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는 새로운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없음. 다만, 특별한 사정 없이 출금하지 않고, 그 기간이

장기화되어 만기연장 효과가 있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거래로 보아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문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주식을 소각하고 계열회사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출자에 따른 부수적인 거래로 보아도 되는지?

답 유상감자를 위해 출자한 계열회사에게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사들여 그 보유주식 가치만큼 주식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는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국외계열회사와 대규모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는지?

답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국외계열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없음.(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에 따라 2021.12.30 일부 시행). 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국외계열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매입하는 등 특수관계인을 위한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음

심결례

사례 ① 포스코계열회사 △△는 2011년 11월 포스코로부터 유상증자(52억원) 받은 사실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기한 내에 공시하였으나, 공시항목 중 주요 사항인 증자 참여자 및 회사와의 관계를 누락하고 기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심결요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사항 작성시, 유상증자 참여자 / 유상증자내역 / 회사와의 관계 등은 공시항목 중 주요사항에 해당하여 이를 미기입할 때에는 공시사항 누락에 해당하게 됨

제재내용 【과태료】 1,400만원

거래집단명	포스코	회사명	공시일자	2011.12.29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단위 : 백만원)						
1. 유상증자 참여자						
가. 출자금액	5,228,336,000원					
나. 출자주식수(주)	1,044,667					
2. 출자참여내역						
다. 출자 후 지분율(%)	100					
라. 출자방법	항공출자					
마. 1주당 가격(원)	5,000원					
3. 유상증자내역						
가. 증자금액						
나. 증자주식수(주)						
4. 이사회 의결일	2011.12.27					
- 사내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명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5. 기타						
※ 관할공시일	2011.12.29					

사례 ② 포스코계열회사 △△는 포스코건설로부터 2억1천5백만원을 차입받기로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2012. 12. 21)하였으나, 이에 대한 공시를 지연한 (2013. 3. 29) 사실이 있음

심결요지 대규모내부거래사항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 상장사는 1일 이내, 비상장사는 7일 이내 DART시스템에 공시해야 함

제재내용 【과태료】 350만원

거래집단명	포스코	회사명	공시일자	2013.03.29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4조제2
(단위 : 백만원)						
1. 차입유형	장기차입금					
2. 차입내역						
가. 계약체결일	2012.12.21					
나. 차입처	(주)포스코건설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다. 차입기간	2012년12월29일	상환일	2014년12월25일			
	2014년12월25일					
라. 차입금액	215					
- 직권사입연도말 자기자본	1,595					
- 자기자본대비(%)	13.74%					
마. 이자율(%)	8.50%					
바. 상환방법	안거일상환					
3. 자금원도	통영자금					
4. 거래상대방과의 차입총계 (말잔 시입연도 기준)	215					
5. 이사회 의결일	2012.12.21					

사례 ③ 포스코계열회사 △△는 포스코로부터의 부동산 매수 관련 대규모내부 거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하면서, 거래일자를 누락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심결요지 공시일 당시, 해당 부동산의 매매일자가 이사회 의결일과 공시일 사이로 계약서상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매매 일자는 공시 이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잘못 기재하였음. 이는 주요 공시사항에 대한 누락으로 인정

제재내용 【과태료】 1,800만원

1. 상명(법인명)	(주)포스코	
-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매매일자	-	
거래목적	보사(00000000)	
2. 부동산매수 내역	소재지	강원남도 광양시 금호동 868-11
거래금액(원)		9,975,000,000
거래상대방 누계금액(원)		9,975,000,000
거래순의(원)		-
3. 거래의 목적	부동산 공장신설	
4. 결정일(이사회결의일)	2010년 10월 19일	
- 사내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
- 감사 참석여부	불참	
5. 증권거래법 해당여부	예외사항	
6. 기타	매매일자는 공시 이후 결정될 예정 거래금액은 최종거래시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관할공시일		

심결례

사례 ④ 포스코계열회사 △△는 상장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인 ○○의 유가증권 매입 항목에 대하여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양식이 아닌,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양식을 사용해 공시하였음

심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은 아니나, 상장회사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항목을 비상장사 중요 공시항목으로 공시한 것이 공시오류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유의해야 함

제재내용 없음

사례 ⑤ 포스코계열회사 ○○는 2001년 7월 포스코로부터 436억원에 부동산을 임차하는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도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였음

심결요지 포스코계열회사 ○○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일정한 거래규모 이상의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

제재내용 【과태료】 7,000만원

사례 ⑥ 케이파워는 SK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2004년 12월 30일 한국산업은행 등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하여 계열회사인 에스케이주식회사(현 에스케이에너지)로부터 2,299억원의 담보를 제공받으면서 이에 대해 2004년 12월 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나 동 이사회 의결내용을 공시하지 않음

심결요지 케이파워와 에스케이주식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하나, 이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담보를 제공받아 미리 이사회 의결은 거쳤으나 공시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였음

제재내용 【과태료】 5,000만원

사례 ⑦ 아시아나항공(주)는 2003년 7월 29일 계열회사인 금호종합금융(주)로부터 115억원의 기업어음을 할인 발행하였으며, 2003년 8월 29일 및 2003년 9월 30일 각각 만기어음을 상환하지 않고 기업어음을 재발행하는 방법으로 자금의 수수 없이 이를 연장하였음

심결요지 기업어음 할인금액을 만기상환 하지 않고 이를 재발행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는 새로운 거래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이 또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하나 이를 위반하였음

제재내용 【과태료】 9,800만원

사례 ⑧ 포스코는 대한전선으로부터 2010년 포스코AST 주식(120억원)을 취득하였으나 제3자로부터 매입한 계열회사 주식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하였음

심결요지 포스코가 대한전선으로부터 포스코AST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제3자와의 거래이긴 하나 계열회사를 위한 주식거래로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로 보고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

제재내용 【과태료】 7,000만원

사례 ⑨ 포스코 계열회사 △△는 2011년 ○○계열회사에게 주식근질권 담보를 제공키로 하고 이사회 의결하였음. 이후 2013년 담보실행시점에 ○○계열회사는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인 △△계열회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음

심결요지 계열회사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그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

제재내용 【과태료】 7,000만원

7.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

1 비상장사 중요사항 수시공시(공정거래법 제27조, 시행령 제34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회사는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 재무 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공시를 하여야 함

- 공시대상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 (단, 금융·보험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100억원미만 소규모 비상장사(사익편취 규제대상 제외)는 면제)
- 연도 중에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는 신규 계열편입된 날로 부터 공시의무가 부과
 -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타법인 주식을 30% 이상 취득하여 최대출자자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공시 의무가 없음
- 연도 중에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부터 계열 제외된 회사 또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지정 제외된 기업집단은 계열 제외 또는 지정 제외된 날로부터 공시의무가 면제

《 금융·보험사는 비상장회사의 공시제도 적용을 제외 》

- 비상장 금융회사는 관련 금융업 법규에 근거하여 공시하고 있음
 - 정기공시: 영업 보고서 등
 - 수시공시: 거액 손실, 금융사고, 적기시정조치 등 당해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상장회사 공시제도 개관



소유지배구조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주요주주의 주식보유 변동(분기공시)
	임원의 변동사항(분기 공시)
재무구조	비유동자산 취득·처분
	다른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또는 처분
	증여·수증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채무면제 또는 인수
	증자·감자 결정 또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경영활동	영업양수양도, 합병회사 분할, 주식교환, 해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등의 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관리절차 개시·중단 또는 종료 결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2 공시대상 업무

1 소수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현황 및 변동

공시항목	공시기준일	공시기준	비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변동일	변동비율 1% 이상	최대주주 중 구성원 변동도 공시
주요주주의 주식보유 변동			분기공시 (2·5·8·11월 말까지)
임원의 변동	등기일	변동 내용(신임/해임 등)	등기부등본 기준

-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사항
 - 합병, 신주발행, 주식매각 등 변동 사유는 불문함
 - 액면분할 등에 의해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현황 및 비율이 변경되지 않으면 공시의무 없음
 - 최대주주가 다수인 경우 각각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공시
 - 최대주주의 주식수나 지분율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최대주주 구성원의 변동이 있으면 공시
 - 최대주주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동일인,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등기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 및 자기 주식을 각각 구분하여 적시
- 매분기 동안 최대주주를 제외한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발생주식총수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내용을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공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 주식보유 변동의 공시기준일(변동일)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 각 목에서 규정한 날로 함 》

-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 주권을 교부받은 날
-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 : 주금 납입일의 다음날
- 회사지분 양수시 : 지분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주식소유비율이 변동하는 경우 : 변동이 확정되는 날

- 임원의 구성현황 및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사항
 - 매분기 동안 임원이 변동(등기일 기준)된 내역 전체 공시,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2·5·8·11월 말까지) 공시
 - 임원이 중임된 경우에는 변동이 아니므로 공시의무가 없으나,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예) 이사가 감사로, 이사가 대표이사로)에는 임원의 변동이므로 공시해야 함

⇒ 중임의 판단기준 : 주주총회에서 해임 후 같은 날 같은 직책으로 선임된 경우 중임에 해당

2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공시항목	공시기준일	공시기준	비고
비유동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이사회 (대표이사)의 결정일	자산총액의 10% (납입자본금의 10%*)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 모두 포함(ex. 건설 중인 자산)
타 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의 취득·처분		자기자본의 5%	타법인 (국내·해외계열회사 제외)
증여 또는 수증		자기자본의 1%	무상으로 타인과 재산을 주고 받는 모든 행위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또는 채무보증		자기자본의 5%	-
채무의 변제 인수		자기자본의 5%	-
증자 또는 감자		결정 여부	최대주주의 지분변동 공시 해당 여부 확인
전환사채·신주인수 권부 사채발행		결정 여부	추후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사채에 한정함

※ : 새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비유동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비유동자산은 회계기준에 따라 분류되는 항목이 포함 (건설 중인 자산, 투자자산 등)
 - 공시기준일은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이므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서 수년에 걸쳐 지급되는 공사비가 기준금액을 과하더라도 공시대상이 아님
 -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운용리스 취득도 공시대상에 해당. 단, 리스계약기간 중 리스로 변경에 따른 자산가액 변경은 취득공시대상이 아님
 - 운용리스의 사용계약 중단·만료 시 감가상각 되고 남은 리스 자산가액이 자산총액 10% 이상인 경우 비유동자산 처분 공시대상임
-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타 법인(국내·해외 계열회사 제외)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자기자본의 1% 이상의 증여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및 증여를 받기로 한 때 그 결정사항
-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 사항
 - 공정거래법 제24조에서 말하는 채무보증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채무보증인 사항은 모두 포함
 - 따라서,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담보제공일 경우에도 공시대상이 됨
 - 타인이 아닌 자기를 위한 담보제공은 해당되지 않음
-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채무를 면제·인수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채무를 면제받기로 한 때 그 결정사항
-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기준금액이 없으므로 해당결정이 있을 때에는 공시사유가 됨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모든 사채가 아니며, 추후 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사채에 한정 됨

《적용기준》

• 자기자본 :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해 산정

$$\text{자기자본} = \text{자산총액} - \text{부채총액} \pm \text{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자기자본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 (12월 결산법인 : 금년 4. 1 ~ 다음해 3. 31)
-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③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공시항목	공시기준일	공시기준	비고
영업의 양도·양수	이사회 (대표이사)의 결정일	결정여부	상법 제374조에 근거
주식교환 및 주식 이전		결정여부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과 제360조15에 근거
회사합병·분할		결정여부	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530조의2에 근거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관리절차의 개시, 중단 등		결정여부	상법 제517조에 근거

-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제527조의2(간이합병)·제527조의3(소규모합병)·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에서 규정한 사실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사항

- 「상법」 제36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또는 주식이전 상법 제360조의 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사항
- 「상법」 제517조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폐지 및 「화의법」에 따른 화의개시 또는 폐지결정이 있는 때 그 결정사항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 규정에 의한 관리절차의 개시·중단·해제가 결정된 때 그 결정사항

3 공시시기

① 공시시기 :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 단, 임원의 변동, 주요주주의 주식보유 변동 공시는 분기공시(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7일 이내에는 공휴일도 포함되며, 7일째 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최초 영업일 까지 공시
- 기간 계산은 사유발생일로부터 하되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함

② 사유발생일 기준

- 소유지배구조 관련 **‘변동이 있을 때’**란
 - 주식을 교부받은 날,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 권리가 이전되는 날
 -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날(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
 -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그 외의 경우 감사 또는 주식의 소각 그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이 확정되는 날
- 임원의 **‘변동이 있을 때’**란 등기부등본상에 임원이 등재된 날

- 재무구조 관련 **‘결정이 있을 때’**란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

4 공시방법 및 절차

- 중요사항 공시대상 비상장회사 등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전산망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함
- 공시양식은 금융감독원이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 준용 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름

5 위반시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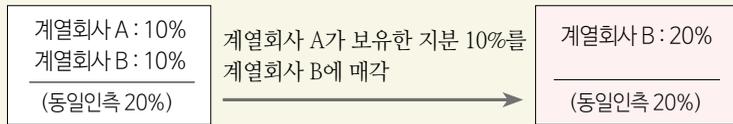
-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와 동일(171page)

물고 답하고(물 & 답)

문 증자 또는 감자, 주식액면분할 등을 통하여 주식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최대 주주의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공시대상인지?

답 주식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보유주식비율(지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공시의무는 없음. 단, 지분율의 변동이 없더라도 그 구성원 간 주식의 비율이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공시의무가 있음

문 최대주주의 총 지분율은 변동이 없으나 최대주주 간에 아래와 같이 지분이동이 있을 경우 공시의무가 있는지?



답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총 지분율은 변동이 없으나,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현황이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으므로 동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

↳ 최대주주 전체의 지분율 합계에 변동이 없을지라도 최대주주 구성원이 변동되거나, 최대주주 구성원 간 지분율이 1% 이상 변동 시에도 공시대상임

문 임원 중임은 공시사항이 아닌데, 중임(연임)과 신규선임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 A라는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고 같은 날 같은 직위로 선임된 경우를 중임이라 하여 공시대상이 아니지만, 해임일과 선임일이 다르거나, 직위가 변경된 경우는 신규 선임으로 보아 공시대상임

문 임원변동의 공시양식을 보면 변경 전 란에 '해임일(등기일)'과 변경 후 란에 '선임일(등기일)'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변동이 없는 임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답 변동이 없는 임원의 경우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똑같이 임원명을 기재하고 변경 후 란의 선임일과 등기일을 기재하면 됨

문 건설중인 공사비로 몇 년간 매월 지급되는 비용이 결산서상 유형자산으로 계상되고 있는데 공시기준일은?

답 취득에 대한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이 있을 때가 공시기준일임. 본 건은 최초 건설계획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등이 있을 때가 공시기준일
↳ 단, 최초 공사금액과 증액된 공사비를 합산한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다시 결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이를 공시해야 함

문 비상장사인 A사가 자사 사옥을 계열회사이면서 비상장사인 건설회사 B에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누가 무엇을 공시하여야 하는지?

답 A사는 동 공사계획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비유동자산 취득결정' 공시를 하여야 하며, B사는 비상장사 공시의무는 없으나, 최초로 도래하는 기업집단현황 연공시 때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현황'에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함

* 취득 중인 자산(건설 중인 자산, 투자자산 등)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며 이에 대한 결정사항도 공시대상임

문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신주발행가격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공시양식에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가?

답 본 건과 같은 경우에는 결정내용을 중심으로 우선 공시하고, 가장 중요한 신주 발행가액이 확정되면 추가로 공시해야 함

↳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 500~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

문 타 법인 주식이라 함은 보유주식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각각의 회사별 주식을 말하는 것인지?

답 타 법인 주식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때 타 법인을 각각의 회사별로 파악해 공시하는 것이 아님. 취득 또는 처분하기로 결정한 타법인 주식을 의미. 또한, 타 법인에는 국내·해외 계열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가 포함됨

물고 답하고(물 & 답)

문 비상장회사의 등기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의 주식을 매도하였을 경우 공시를 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답 최대주주는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동일인,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 및 자기주식을 각각 구분하여 적어야 하며, 등기임원이 주식을 매도하여 최대주주의 주식비율 변동이 1% 이상 있을 경우에는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사항을 공시해야 함

문 공시사항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한 규정에서 7일간의 기간에 비영업일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는가?

답 7일간의 기간에 비영업일이 있을 경우 이는 7일에 포함. 단, 7일째 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하면 됨

문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변동사항이라 할 때 최대주주란?

답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를 포함하는 개념임

문 연도 중에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편입된 회사의 공시의무 발생일은?

답 신규로 편입된 회사는 신규 계열편입된 날부터 공시의무가 발생함

문 유형자산이 최초 취득시에는 자산총액의 10%에 미달되어 공시대상이 아니었으나 자본적 지출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가치가 공시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공시대상인지?

답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비유동자산의 취득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가 공시사유의 발생일임. 이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에 의하여 유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므로 비유동자산의 취득이 아니므로 공시대상이 아님

문 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공시대상 여부?

답 단기매매 목적이라도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시대상이 됨

문 현금배당도 공시대상인지?

답 공시사항이 아님

문 담보로 백지어음을 제공하는 경우 담보금액을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

답 담보로 받는 사람은 사실상 채권금액 이상은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공시 양식에 기재할 경우 백지어음임을 명시하고 채무·채권금액이 얼마인지 적시하면 될 것임

문 최초 계약시 공시대상금액이 아니었으나 정산시 공시대상금액이 된 경우 공시 대상인지?

답 계약에 대한 결정사항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실제 계약이 있는 후 동계약에 대해 정산할 때 거래금액이 변동되어 공시기준금액에 해당하였다면 공시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공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님

문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건설공사비도 비유동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공시대상인지?

답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취득은 공시대상임. 따라서 취득 중인 자산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으로 분류된다면 이에 대한 결정사항도 공시대상임

물고 답하고(물 & 답)

- 문** 해외 타 법인 주식의 취득·처분이 달러로 거래될 경우 환율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 답** 공시사유발생일(이사회 결의일 또는 대표이사 결정 등)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된 금액으로 공시여부 판단. 다만, 이사회 결의내용에 거래금액이 원화로 명시되어 있다면 동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여부를 판단하면 됨
- 문**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경우 국내금융기관을 통한 채무보증만을 말하는 것인지?
- 답** 국내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한 채무보증도 공시대상임
- 문**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서 타인의 범위는?
- 답** '타인'은 모든 법인격을 가진 주체를 말함. 해외법인이나 해외현지법인 등도 해당, 직원에게 보증하는 경우도 해당됨
- 문** 해외법인에 제공한 담보제공 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면, 공시해야 하는가?
- 답** 담보제공 연장 관련 이사회 결정일 혹은 내부결정 없이 연장 승인절차만 거쳤다면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7일이내 공시하여야 함
- 문** 합병에 대한 공시기준일은?
- 답**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를 말함 (합병계약 체결일 또는 주주총회 승인일은 공시기준일 아님)

심결례

사례 ① 포스코계열회사 □□는 2006년 4월 18일 해외 자회사인 IBC 등 3개사가 한국 수출입은행 등 5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939억원 (자기자본 9,298억원의 10.1% 해당)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으나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06년 4월 25일까지 이를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5월 4일 공시함으로써 공시 9일을 지연

심결요지 포스코계열회사 □□는 시행령 제17의10(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의 규정에 따른 공시대상회사로서 채무보증 결정사항을 지연공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3을 위반

제재내용 【경고】

사례 ② 포스코계열회사 ◇◇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차에 걸쳐 건설중인 자산을 취득(자산총액의 10% 이상)할 것을 이사회를 통해 결의하고 결의일 기준 7일 이내 공시하여야 하나 전부 공시하지 않음

제재내용 【과태료】 1,200만원

8. 기업집단현황 공시

1 기업집단현황 공시(공정거래법 제28조, 시행령 제35조)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 또는 연 1회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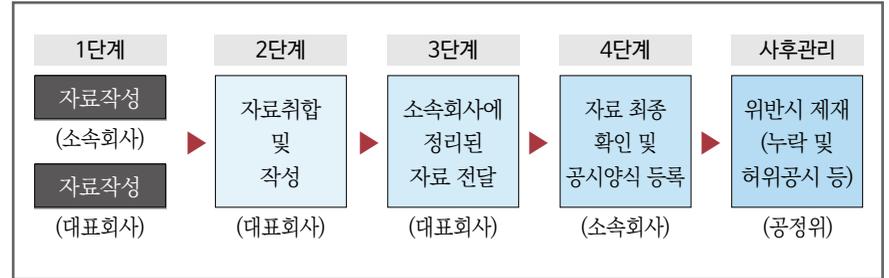
1 도입배경

- 사전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2009. 3. 3 국회 통과)하는 대신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감시장치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기업 스스로 기업집단 전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고 포괄적으로 공개하고,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와 기존의 공시·공개제도의 차이점 》

- 공정위가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유지분구조를 공개하는 제도와 중복 되지 않나요?
 - 정보공개제도는 출자현황 등 소유지배에 관련된 정보만을 공정위가 공개 하는데 비해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는 소유지배구조 외에 해외계열회사 현황, 거래현황 등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차이
- 기존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제도' 등 기존의 공시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기존의 공정위 공시제도, 한국거래소 공시제도 등은 개별회사가 개별 거래 건에 대해 공시하는 제도로 기업집단 전체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함
-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로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 연결재무제표는 회사 간 지배-종속관계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고, 결합재무제표는 2009년의 경우 작성 기업집단이 14개에 불과하여 기업집단 전체현황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음

2 공시업무 PROCESS



【소속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당해 회사로, 기업집단 현황공시 자료를 작성하고 공시할 의무가 있는 회사

【대표회사】 당해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들을 대표하는 회사로서 소속회사의 공시사항을 취합·공시하고, 소속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사항을 작성하여 공시할 책임이 있는 회사

3 공시의무대상 회사

구분	대표회사	소속회사
해당회사	(주)포스코	포스코기업집단 소속 국내 계열회사
공시사항 작성	자기회사 관련 내용을 작성	
공시내용	자기회사 관련 공시사항 소속회사로부터 취합한 내용	자기회사 관련 공시사항 대표회사의 공시를 참조공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거래 현황 공시내용 추가(연 1회)

2 공시내용

① 공시양식 1~6 (연 1회)

공시항목	공시 주체	공시 기준	공시 기준일	공시빈도
회사개요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종업원수 등 회사의 개요	금년도 지정일	연 1회
재무현황		개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직전 사업 연도말 기준	
손익현황		개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해외계열 회사현황	해외계열회사에 최다출자한 소속회사	해외계열회사 일반현황 (회사명, 업종, 소재지)	금년도 지정일	
계열회사 변동내역	계열편입 : 편입회사 계열제외 : 대표회사	국내 및 해외계열회사의 계열편입과 계열제외 내역을 공시	전년도 지정일~ 금년도 지정일	
임원현황	소속회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임원 (성명, 직위, 등기일, 경력 등)	금년도 지정일 기준	

☞ 계열회사 변동내역은 공시기한 중 변동된 계열회사만 작성

② 공시양식 7 :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제도 등의 운영현황 (연 1회)

- 공시대상
 - 이사회 구성원명,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참석여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일 등을 공시
- 공시기준 : 전년도 지정일부터 금년도 지정일 까지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현황
 - 상법 제393의2조에 따른 위원회(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에 한하여 기재
 - 공시기준 : 전년도 지정일부터 금년도 지정일 까지
- 기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제도 운영현황
 - 「도입여부 판단기준」 (금년도 지정일 기준)
 - 집중·서면투표제는 정관내용 기준, 전자투표제는 이사회 결의 기준으로 해당란에 ○, × 로 표시
 - 「제도운영사례여부 판단기준」 (전년도 지정일 ~ 금년도 지정일 까지)
 - 주주총회에서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 사례가 있는 경우 “○(실시)”로 표시
 -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를 통한 일반 주주의 결권 행사 비율 기재
- 소수주주권 행사내용
 - 소수주주권 행사내용, 행사자, 행사 사유 등을 기재
 - 공시기준 : 전년도 지정일 부터 금년도 지정일 까지

③ 공시양식 8 : 소유지분현황(연 1회)

- 공시대상 : 소속회사의 소유지분현황
- 공시기준 : 금년도 지정일 기준
 - 소유지분현황(주주현황)을 동일인측과 기타주주로 구분하여 보통주·우선주의 주식수와 지분율로 작성

지분율 계산법

- 보통주 지분율 = (보유 보통주수/총 발행 보통주 주식수) X 100
- 우선주 지분율 = (보유 우선주수/총 발행 우선주 주식수) X 100

※ 동일인 측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주주와 동일인 측의 주식소유 상세내역을 함께 공시하고 자기 주식은 최대주주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자기 주식이라고 표시

④ 공시양식 9 :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현황(분기 1회)

- 공시대상
 - 소속회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 보유현황(상법상 회사만 해당)
- 공시기준
 - 직전 분기말 장부가액
 - ※ 직전분기말 장부가액이 없거나 평가하지 않은 경우는 최근 검토보고서 내지 직전 사업연도말 장부가액 기준(단, 주석으로 표기)

⑤ 공시양식 10~11 : 자금거래 현황(연1회, 분기1회)

- 공시대상
 - 해당분기 중 발생한 순수 자금 차입약정 등을 통한 차입금을 기재 (제외대상 : 사채, 기업어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가수금, 제품, 원자재 수입에 따른 외화 단기차입금, 콜자금, 만기 7일 이내의 증권 금융 차입, 매출채권 매각 거래로 인해 발생한 단기차입금 등)
- 공시기준 :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사이의 차입금
 - ▶ 만기 연장된 금액이 있는 경우
 - 전 분기에 30억원 차입 후 당분기에 연장 → 30억원 기재
 - 단, 이때 10억원은 상환하고 20억원만 연장한 경우 20억원 기재

- 여신한도약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 분기말 실제 잔액을 기재

▶ **차입금을 분기중에 상환한 경우**

- 2분기 동안 100억원 차입 후 30억원 상환 → 100억원 기재

※ 은행 등과 여신한도 약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당좌차월,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차입)는 직전 분기말 실제 잔액을 기재

⑥ 공시양식 12~13 : 유가증권 거래 현황(연1회, 분기1회)

- 공시대상
 - 해당 분기 중 발생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 공시기준
 -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사이의 매도가(장부가액)
 - ※ 동일인(포스코) 및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제외)와 거래 시는 매입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기재

▶ **유가증권이란?**

- 주식, 회사채(전환사채, 인수권부사채, 만기 3개월 미만 채권 등도 포함), 수익 증권인 펀드, 기업어음(CP) 등 거래대상이 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단 7일 이내의 기업어음은 제외

※ 유상증자도 유상증자를 실시한 회사가 발행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⑦ 공시양식 14 : 계열회사 간 상품 용역거래 현황(연 1회)

- 공시대상
 -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을 국내 계열회사와 해외 계열회사로 나누어 기재 (금융사 = 영업수익)
 - ※ 양식의 매출액 총계는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일치해야 함

• 공시기준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사이의 손익계산서상 매출로 계상되는 전
계정과목들의 장부상 매출액

※ 해외수출을 위해 국내상사에게 판매되는 상품(일명 로컬수출)의 경우 당해 매출액이
소속회사의 국내매출로 계상되면 국내매출, 해외수출로 계상되면 해외매출로 기재

※ 연간 거래금액을 공시할 때 분기별 거래금액을 같이 명시

⑧ 공시양식 15 : 계열회사 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용

• 공시대상

- 사업기간 중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이 연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회사와의 거래내역(상장사는 분기 1회, 비상장사는 연1회)

-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이 연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00억원 이상)일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각각 공시(연 1회)

• 공시기준

- 상장사 →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 비상장사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 공시대상이 되는 개별회사와의 거래 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건별 금액이 작성회사 전체
매출액의 1% 미만이거나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합산하여 기재 가능

⑨ 공시양식 16 :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자문용역 거래현황

• 공시대상

- 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거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용역대금, 대금산정 방식 등을 공시

• 공시기준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⑩ 공시양식 17 :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 공시대상

- 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대상 부동산,
임대기간, 금액 등을 공시

• 공시기준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

⑪ 공시양식 18, 20 : 기타 자산거래 현황(연1회, 분기1회)

• 공시대상

- 소속회사가 재무상태표에 유·무형 자산으로 계상한 자산의 거래

• 공시기준

- 직전 분기 개시일~종료일 사이에 계열회사 등에게 매도(임대, 리스 포함)한 금액을
처분가액 기준으로 공시

※ 동일인(포스코) 및 동일인 관련자(계열회사 제외)와 거래 시는 매입한 기타자산에
대해서도 기재

⑫ 공시양식 19 :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연 1회)

• 공시대상

- 특정기업집단임을 식별하기 위한 기호·문자·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권을 의미

• 공시기준

-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종료일까지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실적이 있는 회사
(사용료 지급회사, 수취회사)가 공시

⑬ 공시양식 21 : 계열회사 간 채권·채무잔액 현황(연 1회)

- 공시대상
 - 실물채권 : 매출채권, 미수금, 선금금, 보증금 잔액(기타 자산의 임대보증금)
 - 금융채권 : 대여금 유가증권 중 회사채 잔액
 - ☞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 공시기준 : 채권회사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보유한 채권 잔액

⑭ 공시양식 21 : 계열회사 간 채권·채무잔액 현황(연 1회)

- 공시대상
 - 공정거래법상 제한이 되는 채무보증과 제한이 되지 않는 채무보증
- 공시기준
 - 보증회사가 직전 분기말 기준으로 존재하는 채무보증금액

《공정거래법상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 공정거래법상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란 무엇인가요?
 - 공정거래법 제24조 본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금융사 제외)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채무보증을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채무보증'을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으로 규정
 - * '여신'이란 국내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의미
- 공정거래법상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란 무엇인가요?
 - 공정거래법 제24조 단서 및 각 호에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채무보증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이라 함

-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회사 간 직접 차입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과 관련된 채무보증, 계열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조합, 개인, 해외계열회사 등에 대한 채무보증 포함)
 - ※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시에는 공정거래법상 제한이 되는 채무보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

⑮ 공시양식 23 : 계열회사 간 담보제공 현황(분기 1회)

- 공시대상
 - 계열회사에 제공한 담보
- 공시기준
 -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계열회사에 제공한 담보의 내역
 - ※ 채무보증과 담보제공은 어떻게 다른가요?
 - 채무보증은 인적담보를 의미하며 담보제공은 물권담보와 예금담보 등 물적담보를 의미함

⑯ 공시 양식 24 :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연 1회)

- 공시대상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적용대상 회사의 거래상대방 회사*
 -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은 20%) 이상인 회사
- 공시기준
 - 직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

⑰ 공시 양식 25~26: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 현황 (연1회, 분기1회)

- 공시대상
 - 계열회사 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순환출자현황

⑱ 공시양식 27 :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 계열회사 현황 (연1회)

- 공시대상
 -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 지주회사 체제에 포함되지 않고 체제 밖에 별도로 존재하는 국내계열회사 및 그 주주현황

⑲ 공시양식 28 :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분기1회)

- 공시대상
 -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현황 및 의결권 행사 여부

연도중 편입 제외된 경우

- 편입통지일, 계열 제외 통지일을 기준으로 공시대상 여부를 판단
- 신규로 편입된 회사는 계열 편입된 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공시기한일까지 해당 사항을 공시
- 신규계열 편입된 회사의 경우 계열 편입일이 포함된 기간의 거래내역 전체를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기재
- 계열 제외된 회사 또는 지정 제외된 기업집단은 계열 제외 또는 지정 제외된 날부터 공시의무가 면제
- 계열제외된 회사의 거래상대방인 소속회사는 계열 제외된 회사의 계열 제외일 포함기간의 거래내역을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기재

3 과태료 부과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로 공시한 경우,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 공시기한을 초과하여 공시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가능(공정거래법 제14조 및 제130조, 시행령 제94조 및 별표9)

① 시정명령 :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등

- 미공시·허위공시로 인해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소속회사는 공시의무를 이행하거나 공시내용을 정정해야 하고,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수정된 사항을 기업집단 전체현황 공시양식에 반영

② 과태료 : 사업자의 경우 1억원 이하, 임직원의 경우 1천만원 이하

③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유형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공시여부	공시기한 준수 여부	누락 또는 허위 공시 여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5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100(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1,000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도 적용

물고 답하고(물 & 답)

물 재무현황 작성시, 차입금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 재무재표상 차입금 계정으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외화단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의
유동성장기부채, 외화장기차입금의 유동성장기부채 등
사채의 경우, 사채가 차입금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합산하여 기재할
것(사채가 별도 계정일 경우 합산하지 않음)

물 해외계열회사 현황 작성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 해외계열회사의 최대출자자인 소속회사가 작성, 공시. 해외계열회사 여부는
국내계열회사 판단기준과 동일한 기준(30% 이상 최대출자자 또는 실질
지배력 기준) 적용

물 합병 후 피합병회사로부터 차입금, 사채 등을 인수하는 경우 이들 금액도
차입현황,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포함하는지?

답 피합병회사가 공시대상기간(직전 분기) 동안 차입한 금액, 발행한 사채금액
등은 포함하여 기재하고, 공시대상기간 이전에 차입한 금액, 발행한 사채
금액은 기재할 필요없음

물 모회사가 자회사의 건설이행보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연대보증하는 경우,
채무보증에 해당하는지?

답 공정거래법 제2조 제19호 여신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항목에 공시해야 함. 단, 해외건설 공사이행보증을 예외조건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 항목에 공시해야 함

물 금융·보험사의 경우 주된 영업활동을 하는 금융거래에서 파생되어 발생하는
대여금(증권사의 신용공여금, 담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 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대여금현황에 포함
시켜야 하는가?

답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자금차입·대여현황은 특수관계인과의 순수한 재무적
성격의 자금차입약정에 따른 자금대차거래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에 다른 금융거래에 부수된 대여금은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자금대차거래로 보지 않음

물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받은 경우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하나?

답 유상증자에 참여한 회사는 공시의무가 없으며, 유상증자를 실시한 회사가
공시를 해야 함

물 포스코와 포스코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는 무엇인가?

답 포스코기업집단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는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상장사는 분기 1회, 비상장사는 연 1회 공시해야 함. 다만, 포스코는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이므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는
없음

물 2020.6.25. 계열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2분기 공시의무가 있는지?

답 계열제외 통지일부터 공시의무가 면제. 따라서 2분기 공시의무가 없음. 다만
계열제외된 회사와 거래한 소속회사는 계열제외된 회사의 제외일 포함기간의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함

물 해외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어디에 공시해야 하나?

답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현황의 기타합계에 포함해서 공시를 해야 함

물고 답하고(물 & 답)

물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은?

답 사채·기업어음 등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가수금, 제품·원자재 등 수입에 따른 외화단기차입금(Usance, 유산스만 제외), 콜차입·만기 7일 이내 증권 금융 차입, 매출채권 매각 거래로 인해 발생한 단기차입금 등

물 소속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한 경우 공시대상 인지?

답 소속회사가 유상감자를 실시할 때는 공시대상 아님. 다만, 소속회사가 유상감자를 당할 때는 공시대상임

물 2/4분기에 국내계열회사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한 후 같은 분기동안 30억원 상환한 경우 차입한 금액을 얼마로 공시해야 하는지?

답 100억원을 기재해야 함. 분기동안 차입한 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였더라도 상환한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총 차입금액을 기재해야 함

심결례

사례 ① 포스코계열회사 △△는 ‘계열회사 간 상품, 용역거래 현황’에서 전체 소계와 계열회사 합계의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

제재내용 【과태료】 200만원

(6)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작성 시업연도 개사일 "종료일 기준, 단위: 백만원)

회사명	거래상대방	거래업종	대표상품	거래내용	거래금액
비 금 용 회 사	포스코건설(주)	41225	산업물류터전 설	물류터전비공 사용	25,014
		41224	폐기물처리및 오염방지시설 건설	폐수처리설비	20,364
		41129	기타 비주거 용 건물건설 업	기타설비공사	22,654
			소계	68,032	
	계열회사간 합계 소계			77,122	

사례 ③ 포스코계열회사 △△는 ‘계열회사 간 상품, 용역거래 현황’에서 공시된 금액과 감사보고서상 수치가 서로 일치해야 하나, 불일치하여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제재내용 【과태료】 320만원

(5)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작성 시업연도 개사일 "종료일 기준, 단위: 백만원)

계열회사 비금용회사 공용회사	계열회사										합계 (백만원)				
	(주) 포스 오일 텍	(주) 포스 화학 텍	철강 연무 업종 (주)	(주) 포스 화학 업종 (주)		소계	소계								
비 금 용 회 사	1,176	22	1,726	49,594	1,367	3,297	8	154	30	2,109	10,867	3,001	75,980	-	75,980

심결례

사례 ② 포스코계열회사 △△는 ‘손익현황’에서 영업외손익을 재무제표상 금액과 다르게 322백만원으로 잘못 기재함(재무제표상 금액은 273백만원)

제재내용 【과태료】 300만원

계열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본총계)	
	현금및 현금성 자산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자산 총계	차입금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부채 총계	자본금		자본 총계
비 금 용 회 사	1,018	6,513	73,389	79,903	99	1,640	32,628	34,269	39,450	45,633	75
계열회사명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당기순이익	이익비율						
비 금 용 회 사	15,567	3,099	322	2,609	1						

사례 ④ 포스코계열회사 □□는 기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 운영현황에서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규정이 있어 ‘×’로 기재해야 하나, ‘○’로 잘못 기재해서 공시함

제재내용 【과태료】 200만원

계열회사명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비고
비 금 용 회 사 (주)포스코 엘이디	○	○	-	-

사례 ⑤ 포스코계열회사 △△는 이사회 운영현황에서 작성기준일*(전년도 5월 1일부터 당해연도 4월 30일까지)을 착각하여 그 기간동안 개최된 이사회 일부 안건을 누락하여 공시하였음

*이사회 운영 현황 작성기준 변경: 전년도 지정일부터 당해연도 지정일 까지

제재내용 【과태료】 500만원

사례 ⑥ 포스코계열회사 ○○는 □□계열회사에게 28,500백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사는 하였으나,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현황’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를 누락함

제재내용 【과태료】 400만원

매입회사 \ 매도회사	계열회사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합계 (매도금액)
	A	B	...	소계	C	...	소계		
㉕	B	㉖			㉗			㉘	㉙

심결례

사례 ⑦ 포스코계열회사 △△는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40억원을 만기 후 다시 연장하였으나, 연장한 해당 분기에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에이를 다시 공시하여야 함에도 '해당 없음'으로 공시를 누락함

제재내용 【과태료】 200만원

(1)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현황

가. 계열회사로부터 자금 차입현황

(직전 분기 개시일 ~ 종료일 기준, 단위 : 백만원)

해당 없음

포스코
스틸리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IV

불공정거래행위 부문

1. 부당한 공동행위
2. 부당한 지원 행위
3.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법 제40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Cartel, 담합)란 부당하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말함

①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이유

- 카르텔은 시장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시장경제의 암(癌)'으로 비유됨. 기업에서는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권없이 구입하도록 강제하게 되며,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기술혁신의 침체로 잠재 생산능력의 증가를 저해하는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OECD 및 선진경쟁당국들은 카르텔이 최소한 10% 정도의 가격인상을 유발한다고 추산

②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다음의 3가지 요소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어 법에 위반됨
 - 둘 이상의 사업자
 - : 둘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 합의의 존재
 - : 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는 계약·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함
 - 경쟁제한성
 -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간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사업자가 가격, 수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야 함

《유의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됨
- 과당경쟁 방지, 경영 압박에 대한 업계의 자구책, 정부 고시가격 준수 등이 부당한공동행위를 합리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
- 원재료·상품을 구입하는 제조·유통업자의 구매시의 공동행위도 문제가 됨
 -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는 것
 - 특정 공급자로부터만 구매하기로 하는 것
 - 공급자에 대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강요하기 위해 공동구매하기로 하는 것
- 부당한 공동행위는 일시에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성립함

《합의의 개념》

-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 간 의사 합의의 합치를 의미(합의만 있고 실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
- 합의는 계약·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 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
 - ↳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도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가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의식적 병행행위일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정황 증거(정보 교환, 만남의 증거 등)가 있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됨

2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법 제40조 제5항)

부당한 공동행위는 명시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법은 추정제도를 두어 아래 (가), (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추정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사실만 있는 경우 직접적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정하여 그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나) 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 성립요건 :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황증거 + 외형상 일치

(1) 정황증거

■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황증거로 인정되는 사항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 예 해당 사업자 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공동으로 행해져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행해졌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 예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 예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 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 변동폭이 동일한 경우
-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 예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또는 판례에서 인정된 정황증거

- 합의사실을 나타내는 회사 내부문건 (단, 합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실제 행위와도 일치한다면 합의에 대한 직접적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실무자, 임원모임 또는 협의체 등에서 가격인상 등을 논의한 사실
- 가격인상 정보 또는 영업방식을 사전 교환한 사실
- 원가나 비용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시기에 동일한 가격수준, 같은 인상률로 인상한 사실
- 시장구조, 과거 법 위반 전력 등
- 모임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2) 외형상 일치

■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요소

-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시점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 간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예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 인상하자는 등의 방향만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라면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외형상 일치 인정 가능

■ 외형상 일치 인정 가능 사례

- 경쟁사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 품질이 대체로 동일하고 상호대체성이 큰 시멘트를 제조하는 7개 사업자들이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대체로 14%에 근접하나 회사별로 최대 1.4%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

㉠ 법상 부당공동행위(정보교환 담합 제외)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은 때

● 성립요건 : 외형상 일치 +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1) 외형상 일치

※ 상기 ㉠ 항의, (2) 외형상 일치 요건과 내용 동일

(2)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여부 판단기준

- 정보의 종류 및 성격
 - 가격, 생산량 등 교환되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교환된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
- 정보가 교환된 시점
 -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가 교환된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
-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 등 경쟁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

■ 필요한 정보의 교환 인정 가능 사례

- 가격, 생산량, 원가, 판매·채고·출고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서 미래정보, 비공개 정보,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만 배타적으로 교환된 경우

- 가격인상 결정 시점에 임박하여 인상일자, 인상계획 내역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가격인상계획 관련 정보가 상호 교환되었고, 각 회사들이 제시한 가격 인상안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인상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

《 합의 추정의 복명 》

-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아래 (가), (나) 중 어느 하나를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명할 수 있음
- (가) 합의 추정의 전제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단의 ①, ② 중 어느 하나를 입증)
 - ① 외형상 일치가 없었다는 점
 - ② 합의가 있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는 점 또는 외형상 일치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적이 없었다는 점
- (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 【예 1】 가격에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부프로세스를 거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
 - 【예 2】 다른 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단순 추종하는 과정(의식적 병행행위)에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예 3】 행정지도(구두 등 유형 불문)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3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법 제40조 제2항)

공동행위 중 산업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통해 이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공동행위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은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법 제40조 제2항)

- ①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 ② 연구·기술개발
- ③ 거래조건의 합리화
- ④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4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법 제40조 제1항 제1호~제9호)

-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거래시 상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는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가격, 생산량, 그 밖의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의 정보」 : 가격, 생산량 외 ① 상품·용역 원가, ② 출고량·재고량·판매량, ③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

㉠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으로 가격 인상·인하율을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 예 경쟁 철강업체와 특정제품에 대해 가격인상을 합의하는 행위
-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최저가격 등 가격 설정기준을 정하는 행위
 - 예 경쟁 철강업체와 특정제품에 대해 기준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경쟁 철강업체와 공동으로 특정업체를 제재하는 행위
-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 구성요소의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 계산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행위
- 과당경쟁 방지, 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동일한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동일한 수준의 가격인상을 한 경우
- 법률 등에서 가격수준을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위법한 경우

- 행정기관이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함
- 행정기관이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사업자들이 이를 기화로 별도의 합의를 한 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

[예시 1] 행정기관이 가격 인상률을 5% 이하로 하도록 행정지도한데 대해 사업자들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가격 인상률을 5%로 통일한 경우

[예시 2] 행정지도 전에 사업자들이 가격인상 정도 등을 합의한 후 행정지도에 공동으로 대응한 경우

[예시 3]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후, 별도로 모임을 가지고 행정 지도의 수용 여부, 시행절차나 방법 등을 합의한 경우 (이 경우에는 합의의 내용 및 성격, 중대성의 정도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위법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이 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 ① 그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방법 등이 근거법령에 부합하고
 - ② 사업자들이 그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
- 행정지도에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따른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시 3] 행정기관이 각 사업자의 요금수준을 사실상 인가한 결과 사업자들 간에 가격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하게 형성된 경우

*** 행정지도 :**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실제상 지시, 권고, 요망, 주의, 경고 등의 다양한 용어로 시행되고 있다)를 말함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중요 적발 사건

담합 유형	사건명	시기	조치수준	적용법조	주요내용
			과징금		
가격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월	약 199억 원	구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이동통신사들의 아파트 옥상 등 중계기설치 장소에 대한 임차료 담합
입찰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2월	약 9억 원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국내 7개 건설사, 식당에서 제비뽑기로 순번 정해 공사 나눠먹기로 담합
물량, 입찰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한국전력공사 발주)	3월	약 8억 원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한전 발주 입찰에서 17년간 담합 (물량배분, 입찰담합)
입찰	24개 건설사 발주(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 관련 31개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	*4월	약 931억 원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31개 사업자가 총 24개 건설사 발주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
입찰	강원도 개발공사 발주 알펜시아리조트 자산 매각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4월	약 510억 원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 8호(입찰담합)	강원도개발공사가 발주한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입찰에서 6개사 담합
입찰	전시모형등 입찰 관련 5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5월	약 2천만 원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시립미술관 수요 입찰에서 5개 업체 담합
입찰	삼성전자 반도체공정 제어감시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6월	약 140억 원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삼성에스디에스(주)가 발주한 34건의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13개 사업자 입찰담합
입찰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관련 2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7월	약 12억 원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대우건설이 발주한 7건 입찰에서 20개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 둘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상대방 제한	대학교 증명서 발급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8월	약 11억 원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2호(거래조건담합)및 제4호(거래상대방 제한 담합)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 및 증명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하고 다른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담합
가격, 거래상대방 제한	3개 코발트 엑스 촉매 제조업자의 가격,납품 담합 제재	9월	약 6억 원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제1호(가격담합) 및 제4 (거래상대방 제한)	공급가격과 거래처 및 공급물량을 서로 합의한 행위
입찰	시스템육식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부당공동행위 제재	10월	약 67억 원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신 공정거래법 제40조	9개 사업자는 114건 시스템 육식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

조치수준 : 행위금지 시정명령 포함임

*8개 가구사,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하여 검찰 고발

**4개사와 배상운 그룹회장에 대하여 검찰 고발

심결례

사례 ① 포스코강판(현 포스코스틸리온), 동부제철(현 KG스틸),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 등 6개사는 2004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임원 및 영업팀장 모임(임원들이 참석하는 컬러강판협의회를 통해 큰틀의 가격을 합의하고, 구체적인 가격결정은 팀장모임에서 결정) 등을 통하여 총 16차례에 걸쳐 컬러강판 기준가격 인상, 인하폭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함

심결요지 컬러강판 국내시장의 약 85% 점유하고 있는 6개사 임·직원들이 모임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실적 및 기타 가격결정이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시장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6개 업체에 총 934억
【고 발】 5개 업체 법인 고발

사례 ②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7개 제강사는 2010년~2018년(약 8년) 기간 동안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 및 그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였으며, 이러한 합의는 이들 제강사의 공장 소재지(영남권/경인권)별 구매팀장 모임(총155회, 영남권 120회, 경인권 35회)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 정보*교환을 통해 이루어짐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변동 계획, 재고량·입고량, 수입 계획 등 기준가격 결정에 중요한 정보

심결요지 7개 제강사가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 및 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유지·변경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며 철스크랩 기준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기준 가격 결정에 이용한 행위는 사실상 직접 합의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금지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 정보 교환 금지명령, 교육 명령
【과 징 금】 7개 업체에 총 3,000억 8천3백만원

사례 ③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등 16개사는 '05년 11월 ~ '17. 7 월까지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 60여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이행여부를 점검·독려하고,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담합은 대표이사급 모임 외 별도 모임(임·직원 워크숍)을 통해서도 이루어 짐

심결요지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 등 16개사는 12년간 16차례에 걸쳐 가격인상을 합의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 가격할인 경쟁도 제한 하였으며, 20차례에 걸쳐 출고량 감축을 합의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올품 등 5개사 고발】
【과 징 금】 1,758억 원

사례 ④-1 노래방기기 시장점유율을 99% 차지하는 금영·티제이미디어는 2007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양사의 영업부서장들이 매월 호텔 커피숍 등에서 만나 노래방기기 및 신곡 업데이트 요금 등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대리점에 대한 지원·할인 정책을 축소기로 협의한 후 각 사의 임원에게 보고한 후 인상 시기 등을 합의하여 결정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56억 7400만 원

사례 ④-2 노래방기기 시장점유율을 99% 차지하는 금영·TJ미디어는 2007년 1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2011년 각각 과징금 41억 1700만 원, 15억 5700만 원이 부과되었으나 금영·TJ미디어는 각각 리니언시로 금영은 과징금을 100% 면제받았고, TJ미디어는 절반인 7억 7900만 원을 부과받았음.

그러나 2014년 10월 내부 제보를 받아 이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금영과 TJ미디어는 과징금을 줄일 목적으로 자진신고하는 문제까지 상의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남.

심결례

공정위는 감경해 주었던 과징금 48억 9600만 원을 다시 부과함.

제재내용 【과 징 금】 48억 9600만 원

사례 ⑤ 4개(LGU+, KT, SKT, SKO&S)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13 ~ '19년까지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하였음

심결요지 담합사들은 2011년부터 4G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전국망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서 임차료가 상승하자 이를 낮추기 위하여 기본합의, 고액국소 합의, 신규계약 합의, 설비중설 합의 등으로 담합하였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199억 76백만 원

㉡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 조건을 공동으로 정하는 행위

※ 거래조건

- 위탁수수료, 출하장려금, 판매장려금 등의 수준, 무료 상품·서비스 제공 여부, 특정 유형의 소비자에 대한 상품·서비스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조건

※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

- 지급 수단,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과 같이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과 관련된 조건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대금지급 방법을 제한하거나, 상품 인도일부터 대금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이나 어음의 만기일 등을 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등의 공급방식, 운송조건 등을 제한하거나, 애프터 서비스의 기간, 내용, 방법 등을 제한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업체들로부터의 가격인상 요청에 대하여 구입자들이 합의하여 가격인상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하거나 인상폭을 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거나 특정 공급자에게서만 구매하기로 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 조건을 동일화함으로써 증진되는 소비자의 이익이 사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월등히 큰 경우
- 법령 등에 따라 일정한 거래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심결례

사례 ① 4개 빙과제조업체들은 2004년 1월 31일 전남 광양시 소재 모식당에서 전남 동부권 빙과대리점 대표자 10여 명과 함께 모임을 갖고 덤핑업자에 대한 대책 등 '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04년 2월 4일 (주)빙그레 과천시점 회의실에서 거래조건 설정, 거래상대방 제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등을 담은 '시장 안정화기준'을 결정하여 실행하였음

심결요지 4개 사업자들은 광주, 전남지역의 80%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공동으로 거래조건 설정, 거래상대방 제한 등을 합의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법 위반행위임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개 지방일간지에 1회 게재, 공표

㉡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자별로 상품의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할당하거나 용역조건을 제한하는 등 공동으로 그 수준을 결정하는 행위
- 최고·최저 생산량, 필요 재고량 등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생산량 등 수량의수준을 정하는 행위
- 가동률, 가동시간, 시설의 신·증설 및 개체 등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구매량, 구매가격, 구매하는 물품의 인도방법 등을 결정하거나 구매량 또는 납품업체를 사업자 간에 할당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원재료 공동구매로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중소기업 간 공동구매로 대기업과의 경쟁에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제품 수송차량을 공동활용하여 원가절감 및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

심결례

사례 ① 대한제분 등 8개 밀가루 제조, 판매업체들은 2000년 1월 영업임원회의를 개최하고 각 사별 밀가루 내수 반출량을 협회비 비율대로 정하기로 하고 각 사의 담당 임원들이 매월 1회 만나 반출량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로 합의하였음. 이후 매월 1회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월별 기준 반출량을 합의하였으며 2005년까지 이를 지속함

심결요지 밀가루 제조, 판매업체들은 밀가루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이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2000년 1월 영업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밀가루 총 반출량을 사전에 정한 후 피심인별로 반출량을 기준비율대로 하기로 함으로써 국내 밀가루 시장에 있어서 공급량을 제한, 할당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공표명령】 위반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공표
【과 징 금】 대한제분 122억3천400만원 등 총 435억4천700만원

사례 ② (주)엘에스 등 34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은 한전에서 발주하는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참여사들 간에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 예정자를 선정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평균 99.4%) 받은 후, 배분 비율대로 참여사들 간에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였음

심결요지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시장에서 11년간(1998~2008년)에 걸쳐 고질적으로 이루어졌던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물량배분 및 낙찰가격 담합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고 발】 (주)엘에스, 대한전선, 가온전선, 전선조합
【과 징 금】 32개사(전선조합 포함) 총 386억원

㉠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으로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 하고만 거래하도록 공동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공동으로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심결례

사례 ① (주)수성케이블 방송 및 (주)씨엠비대구수성방송은 2006년 2월 2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소재 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여 건립되는 캐슬골드파크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가입자 유치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구역을 단지별로 나누어 1~3단지 1천803세대는 (주)수성케이블방송 4, 5단지 2천453세대는 (주)씨엠비대구수성방송이 전담하기로 합의하여 실행하였음

심결요지 (주)수성케이블방송 및 (주)씨엠비대구수성방송은 공동으로 거래지역을 정하고 서로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합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실제 행위를 통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회피하여 경쟁제한성을 증가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통보명령】 30일 이내 캐슬골드파크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㉔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자별 생산·판매시설 등 설비의 규모를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
- 공동으로 설비의 신·증설 또는 개체를 제한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행위
- 공동으로 장비의 도입자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설비의 신·증설 또는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㉕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으로 규격 또는 종류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생산품목을 결정하는 등 사업영역을 설정하는 행위
- 거래승인 거부, 거래시기 제한 등 신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단,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상품이나 규격을 공동결정하는 행위는 문제되지 않음

심결례

사례 ① KTF와 LGT는 2004년 1월부터 SKT 가입자들만 기존번호를 유지하면서 KTF, LGT로 이동전화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되자 신규가입자 확대를 목적으로 무제한 정액요금 상품을 출시하였음. SKT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에 무제한 정액요금 제도의 인가를 신청하였음. 그러던 중 3사가 서로 합의하여 무제한 정액요금 상품은 모두 폐지하며 SKT의 인가 신청도 철회하기로 3사 간에 합의하였음

심결요지 SKT, KTF, LGT 3사가 무제한 정액요금 상품의 판매 및 출시노력을 중단하기로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에 해당되며 본 합의는 다양한 요금 상품의 판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SKT 6억6천만원 등 총 17억8천200만원

㉔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공동수행·관리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판매, 거래, 원자재의 구매, 기타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는 행위
- 가격의 공동결정이나 판매량 제한 등 경쟁제한적 효과를 목적으로 경쟁사업자들 간에 생산, 판매, 구매 등을 담당하는 공동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㉕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1) 개념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 ①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 ②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 ③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이 되는 요소가 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심결례

사례 ①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11개사는 '12년 ~ '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함. 해당 업체 담당자들은 입찰 당일 모여 최종 결정된 각 업체별 배분 물·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하기 전 예행연습까지 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담합에 가담한 11개사에 대해 ‘행위 금지 명령’ 부과
【과 징 금】 2,565억 원
【검찰고발】 담합을 주도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대 제강사, 개인 9명

※ 2022.8.12일 공정위 보도 후 2022.10.12일 해당 제강사 검찰 압수수색 함

【판례】

- ‘입찰담합’이란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인 것을 그로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 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가격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낙찰자가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00.6.9. 선고99두2314)
- 일부 입찰자와 담합이 있었으나 다른 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음(대법1983.1.18. 선고81도824)

심결례

- 법(舊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요하고 반드시 이에 대한 실행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법(舊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합의는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합의할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함(대법원 98두15849, 1999.2.23. 선고)

사례 ②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터키공사 입찰 관련 21개 건설업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가 2009년 1월~4월까지 입찰 공고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공구에서 216공구까지 16개 공구로 분할하여 입찰 실시
- 포스코건설, 현대개발산업, 대우건설 등 21개 건설사는 입찰 합의 이전에 경쟁사업자의 임직원들과 각종 모임을 통하여 접촉을 하였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교환하였음
- 각종 정보를 통하여 각 공구별 참여사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개별공구에서의 낙찰자-들러리 합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선정하고 이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건설사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함

심결요지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21개 업체에 총 1,323억
【고발】 16개 업체 법인 고발

사례 ③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담합 건(의결 제2007-436호)

「합의」

금호산업과 포스코건설은 상주시에서 2005년 6월 7일 고시한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서로 협조하여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있음

※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볼 때에도 피심인들이 사전에 입찰시의 투찰금액을 합의한 사실이 인정됨

- (1) 첫째, 포스코건설이 2005년 8월 31일 작성한 'BTL 하수관거 민자사업 최근 평가결과 및 당사 참여방안' 문건의 '3. 당사 진행사업 참여방안'에 '상주시: 낙찰율 90% 이하 투찰(평가 후 환경관리공단과의 담합 의혹 불식)'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음
- (2) 둘째, 포스코건설이 2005년 9월 8일 작성한 '하수관거 BTL 민자사업 최근 입찰동향 및 당사 참여방안 보고' 문건에 완전경쟁이라는 표현과 함께 '합의경쟁'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음
- (3) 셋째, 금호산업이 2005년 9월 21일 작성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추진 일정표' 문건에 '경쟁'이라고 기재한 것과는 달리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입찰 건은 경쟁이라고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4) 넷째, 이외에도 고려개발 주식회사가 2006년 1월 10일 작성한 '지방 자치단체 방문 일지' 문건에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 금호산업 (명의상 경쟁)'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있음

「실행」

- 금호산업은 포스코건설이 추천해준 지역건설사 및 재무투자자와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포스코건설에서 작성해준 제안서(사업계획서, 설계 도서, 투찰금액 등)를 접수받아 명의만 금호산업으로 변경하여 상주시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
- 포스코건설은 2005년 9월 5일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입찰에

심결례

참가하면서 피심인 금호산업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고시금액(공사예정금액) 대비 92.6%인 투찰금액 775억원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투찰)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음

- 금호산업도 2005년 9월 5일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입찰에 참가하면서 피심인 포스코건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고시금액(공사예정금액) 대비 95.9%인 투찰금액 803억원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투찰)하여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되도록 하였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포스코건설 57억9천800만원 (금호산업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 면제)

사례 ④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주)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 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가 담합하였음

심결요지 씨제이대한통운(주) 등 7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철강재 운송 용역 입찰에서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한 후, 3,796건의 입찰별로 낙찰 예정 회사를 정했으며,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 배분), 제8호(입찰 담합)에 위반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됨

제재내용 【시정명령】【과 징 금】 460억 4,100만 원

사례 ⑤ 13개 협력업체들은 '15 ~ '23년까지 삼성SDS가 발주한 총 334건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사전에 유선 연락,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음

심결요지 피에스이엔지 등 13개사는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의 견적서 또는 투찰가격을 전달하면 들러리사는 그 내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음. 이는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현 40조 및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위반하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됨

제재내용 【시정명령】【과 징 금】 104억 5,900만 원

입찰 관련 행동지침

1. 수주자 선정에 관한 행위

(1) 수주예정자 등의 결정

【유의사항】

① 사업참여 관련 정보교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발주정보, 사업활동 실적, 대상물건 등과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예정자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됨

②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 사업자는 과거 입찰에 있어서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이후의 수주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③ 입찰가격의 조정 등

- 사업자는 수주예정자 이외의 입찰참가자가 수주예정자로부터 입찰가격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입찰가격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④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한 이익공여

- 사업자는 수주예정자에게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하여 업무발주, 금전지불 등의 이익제공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⑤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대한 참가의 요청, 강요 등

- 사업자는 입찰참가를 예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참가할 것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를 것을 요청, 강요하고 결정에 참가, 협력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 간 차별적인 취급 등으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결정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 간 차별적 취급, 금전지불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2) 지명과 입찰참가 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 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됨

(3) 공동기업체의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

- 공동기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사업자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됨

2. 입찰가격에 대한 행위

(1) 최저 입찰가격 등의 결정

- 사업자는 입찰에 관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

【유의사항】

•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를 타 사업자와 교환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발주자가 예정가격의 산정을 위해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동향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정보를 교환, 수집, 제공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3. 수주수량 등에 대한 행위

(1) 수주수량·비율 등의 결정

- 사업자는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의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

(2) 정보의 수집·제공, 경영방침 등

【수주예정자 등의 결정 행위에 관한 유의사항】

- 수주의욕의 정보교환 등
-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최저입찰가격 등의 결정 행위에 관한 유의사항】

- ※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 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3) 지명과 입찰참가 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 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됨

(4)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에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로 주의해야 할 행위 유형

- 영업장소의 수 또는 위치를 제한하는 행위
- 특정한 원료의 사용비율을 정하거나 직원의 채용 또는 자유로운 기술개발이나 이용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광고의 내용, 횟수, 매체 등을 제한하거나 결정하는 행위

㉕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교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정보교환 합의의 위법성 성립요건

- ① 합의의 성립 :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간 합의 성립
 - 경쟁상 민감한 정보 :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조건
 - 정보 교환 : 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하며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 포함 (단, 중간매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만 한 경우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음)

- 합의 : 명시적 의사연락 뿐 아니라 묵시적·암묵적 의사의 합치 포함

- * 묵시적·암묵적 의사의 합치의 경우 ▲ 정보교환이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직급 간, 의사결정 전에 이루어지고, ▲ 교환된 정보를 각자 활용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

- ② 경쟁제한 : 그 합의의 실행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
 -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는지 여부는 ㉠ 시장상황, ㉡ 시장구조 및 상품 특성, ㉢ 점유율, ㉣ 정보의 특성, ㉤ 정보교환의 양태, ㉥ 정보교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③ 효율성 증대효과 :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함
 - 정보교환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러한 효과 창출에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며,

효율성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 정보교환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부당한 공동행위로 주의해야 할 행위 유형(예시)

- 경쟁사들이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출고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 구성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에게 재고량, 판매량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단체가 이를 문서로 정리하여 전체 사업자들에게 송부한 경우
- 시장점유율 상위 기업들이 매월 말 가격정보를 경쟁사들에게 통지하면, 이를 통보받은 경쟁사들이 해당 가격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관행이 5년 가량 지속되어 온 경우

5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 시정조치(법 제42조)

- 공동행위 행위자에 대한 당해 행위 중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과징금(법 제43조, 시행령 [별표6] 2.3)

- 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의 20%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4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함
 - 여기서 관련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의미함

㉢ 벌칙(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주의사항

“경쟁사와 정기적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포스코스틸리온 00과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철 00과장입니다. 오는 4월에 철강 현황 세미나가 있는데요. 세미나 끝나고 같이 저녁이나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떨습니까?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끼리 이런저런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하하.”

“예. 그러시죠. 좋습니다. 하하.”

↳ 부당한 공동행위는 명시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 간 모임, 의사 연락 등 정황증거만으로도 합의한 것으로 추정 가능(법 제40조 제5항)하므로 경쟁사 관계자와 연락, 특히 외부에서의 만남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6 자진신고자 감경제도(Leniency Program)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 고발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법 제44조, 시행령 제51조)

㉠ 과징금 면제 및 시정조치 면제 또는 감경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 중

-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최초 제공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하였을 것

-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 과징금 50% 감경 및 시정조치 감경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 중

-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 자
-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 반복 법 위반 사업자 감면 제한

■ 부당한 공동행위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나 조사협조를 하더라도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 불가

㉣ 재판에서 조사과정과 달리 진술하는 등의 경우 감면 취소

■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면제받은 자가

-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정 불출석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물고 답하고(물 & 답)

물 다른 철강사업자들이 우리 회사의 가격인상과 비슷한 시기와 인상률로 가격이나 판매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럴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가?

답 다른 경쟁사업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경쟁사업자들이 하는대로 따라서 하는 것은 의식적 동조행위임. 그러나 의식적 동조행위 자체만으로 위반행위가 되지 않으며 정황증거가 같이 제시되어야 법 위반이 될 수 있음. 또한 국내 철강사업자들은 비슷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어 원가상승 요인이 있었다면 타 회사들이 우리 회사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할 수는 없음

물 우리 회사가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특정물품을 구매하여 구매가격을 낮출 경우도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가?

답 현재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100% 지분을 가진 계열회사와의 공동구매일 경우는 계열회사를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하여 공정거래법에 문제되지 않음. 그러나 100% 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와 공동구매할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위반 여부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함

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종업체 간에 생산시설을 공유하는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가?

답 동종업체 간에 생산시설을 공유하는 공동행위는 경쟁제한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증대효과보다 설비의 신·증설을 억제하여 공급량을 제한할 목적으로 한다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관련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클수록 경쟁제한 효과가 더 크게 되어 법 위반 가능성이 커짐

물 판매부서에 전달하는 문서에 경쟁사 정보(가격 인상 및 신상품 출시 등)가 언급되면 문제가 되는가?

답 경쟁회사와 공동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현업에서 판매활동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서 경쟁사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낮음. 그러나 현업부서에 대한 단순한 정보전달이라도 만일 경쟁사 현업부서와의 협조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정보전달 행위가 합의추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함

물 반덤핑 수검자료 준비를 위해 관계사들과 거래가격, 거래조건 등 기타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공동대응 행위는 관계사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가?

답 반덤핑 심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관계사 간에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을 분석하고 정리한 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록 그 과정에서 관계사를 모니터링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음. 단, 외국의 반덤핑 제소 등의 방지를 위하여 국내 사업자들 간에 상품의 가격, 수량, 거래상대방 등 거래 조건에 관하여 공동협정을 체결하거나 공동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반덤핑 제소 대책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될 수 있음

물 정부의 행정지도로 사업자들이 공동행위를 한 경우가 법 위반인가?

답 행정관청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사업자 간에 행해지는 공동행위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공동행위와는 구별되어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됨. 예를 들어 행정관청에서 소집한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회의가 끝난 후 관련 사업자들이 일치해서 동일한 선에서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 행위 등은 법 위반임.

단, 공정거래법 제116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행정지도에 의한 공동행위는 법 위반이 되지 않음

2. 부당한 지원행위

1 부당한 지원행위

사업자 간, 특히 계열회사 간의 지원행위는 한계기업의 퇴출을 막거나 경쟁기업의 압박을 통하여 경제력 집중의 유지 및 확장수단이 되고 있으며, 또한 피지원기업이 위치한 개별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도 침해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 부당한 지원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9)

- ①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산(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상품·용역, 인력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②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 통행세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대해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부당한 지원행위의 판단기준

부당한 지원행위는 지원행위 여부와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위법성을 판단

※ 부당한 지원행위 안전지대에 해당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에 따라 사전에 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

■ 지원행위 여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

가격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 보다 높거나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 정상가격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지원 행위 유형별 정상 가격 산출 방법】

▶ ‘자금’ 지원 행위에서의 정상 가격(개별 정상 금리) 산출 방법

-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 간 자금(가지급금·대여금 등) 거래와 거래 조건이
 - ①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 객체와 특수 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 ②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 객체와 특수 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 ③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 적용

▶ ‘자산·상품·용역’ 지원 행위의 정상 가격 산출 방법

- 해당 자산(유가 증권·부동산·무체 재산권 등)·상품·용역 거래와
 - ①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 ②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 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 ③ 만일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

-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
 -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 과도하게 귀속되는 경우
 -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유지가 가능하여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경우
- ※ 예외사유 :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으로 거래 목적달성에 불가피한 경우

■ 지원행위의 예시

①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을 거래한 경우

- 회계처리 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경우
 - 상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한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지원 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게을리 하는 경우
 - 지원객체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 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하는 경우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기타 자금의 거래에 의한 지원행위는 실제 적용된 금리가 해당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경우에 성립함
 - (안전지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의 자금거래에 의한 실제적용금리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와의 차이가 개별정상금리 또는 일반정상금리의 7% 미만인면서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 ②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거래한 경우
- 역외편드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 등을 저리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어음 또는 주식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한 경우 [주식 고가매입]

- 제3자 배정 또는 실권주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인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여 증자 후의 지분율이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증자 전 제1대 주주이거나 증자 후 제1대 주주가 되는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하며, 의결권이 제한되는 계열 금융사 등은 제1대 주주로 보지 않음)
 - [주식고가매입]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 부터 매수한 경우 [부동산 저가매도 또는 부동산 고가매수]
 -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지원객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결과를 지원객체에 무상양도하여 지원객체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무체재산권 무상양도]
- #### ③ 부동산을 임대차한 경우
- 지원객체에게 공장·매장·사무실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한 경우 [부동산 저가 임대]
 - 지원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부동산 고가임차]
- #### ④ 상품·용역을 거래한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한 경우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 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 지급하는 경우
 - 거래물량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 비용절감 효과가 지원객체에 과도하게 귀속되는 경우
 - 거래물량만으로 지원객체의 사업개시·유지가 가능하여 지원객체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경우
- #### ⑤ 인력을 제공한 경우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한 경우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 한 경우

⑥ 거래단계를 추가하거나 거처서 거래한 경우

- 통상적인 직거래 관행 및 기존의 거래 형태와 달리, 지원객체를 통해 제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면서 실제 거래에 있어 지원객체의 역할을 지원주체가 수행하거나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역할이 중복되는 등 지원객체가 거래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경우

■ 지원행위의 부당성 여부

-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 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쟁력 집중이 야기되는 경우, 지원 주체의 계열사 간 내부 시장을 활용한 지원 행위를 통해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한 지원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 부당성이 인정됨

- ①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또는 강화할 경우
- ② 지원객체가 속하는 거래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경쟁사업자에 비하여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④ 지원객체가 속하는 거래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⑤ 불공정한 방법 또는 절차를 통해 지원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①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기업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대상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하여 손실분담을 위해 불가피한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채무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객체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지원객체에 대하여 기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지분비율에 따라 지원객체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사전에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기업체(계열회사 제외)를 지원하는 경우
- ③ 개별 지원행위 또는 일련의 지원행위로 인한 지원금액이 1억 원 이하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해당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자생력 배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
- 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건, 사회적 기업에게 각종 용역을 위탁하거나, 사회적 기업에게 시설·설비를 무상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경우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주의사항

“계열회사에게 공장, 사무실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해 주거나, 업무 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하고 인건비를 받지 않는 등의 행위를해서는 안됩니다.”

“당 그룹에서는 다음 분기부터 계열회사 컨설팅을 전담하는 TFT를 만들어, 몇 개월 간 파견을 보내서 각 회사의 인력·행정·프로세스 등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솔루션까지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컨설팅 비용은 따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합니다.

심결례

사례 ① 롯데피에스넷(주)가 ATM기를 제조사인 네오아이씨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9월부터 2012. 7월까지 계열회사인 롯데알미늄(舊 롯데기공)을 통하여 구매한 사실이 있음. 위 기간 동안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는 네오아이씨피로부터 ATM기 3,534대를 66,635백만원에 매입하여, 롯데피에스넷에 70,786백만원에 판매함

심결요지 롯데피에스넷(주)의 간접구매 방식은 당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불필요한 유통비용만 증가하였으며 어떠한 경제적 효율도 발생하지 않음. 롯데알미늄은 아무런 실질적 역할 없이 형식적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중간마진을 챙겨 재무구조가 현저히 개선됨. 이는 별다른 역할이 없는 계열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 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며 (舊)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6억 4,900만원

사례 ② 태광그룹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주)는 골프장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골프장 착공 이전인 2008년 사전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태광그룹 9개사가 '회원금예치금' 명목으로 골프장 회원권 72구좌를 총 792억원 (구좌당 11억원)에 매입하기로 사전투자약정함. 태광그룹 9개사는 분양가격이 투자원금과 같음에도 사전약정에 따라 총 792억원에 해당하는 회원권 72구좌를 취득함

심결요지 태광그룹 9개사의 본 건 거래행위는 회원권을 취득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골프장 건설자금을 선납 예치한 자금지원에 해당하며, 선납 예치금에 따른 적정 수준의 이자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으므로, 동림관광개발(주)에게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 것임. 이는 골프장 건설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자금지원행위이며 (舊)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총 46억원
【고발】 태광산업(주), 흥국생명보험(주), 대한화섬(주)

사례 ③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현대모비스(주) 및 현대제철(주)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자신들 제품의 생산·판매에 부수하는 완성차 배달탁송, 철강운송 등 각종 물류업무를 새로 설립된 계열회사인 글로벌(주)에게 사업양수도나 수익계약 방식을 통해 상당부분 몰아주기함

심결요지 글로벌(주)에게 몰아준 운송물량은 지원주체의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화물운송수선업시장 1위 사업자와 비교한 크기, 화물운송 주선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크기, 글로벌(주)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현저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며,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글로벌(주)에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총 96억원(현대자동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 총 631억원 중 물류업무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사례 ④ 삼양식품은 약 20년간(1997년~2015년 3월) 자신의 소속 직원과 임원에게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여 줌. 또한, 삼양식품은 약 7년간(2007년 4월~2014년 11월)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셔틀버스(연 평균 450대 이상)를 무상으로 대여하여 줌

심결요지 삼양식품의 지원 금액은 인력 지원 관련 약 13억원, 차량 지원 관련 약 7억원 등 총 20억원임

심결례

에코그린캠퍼스(삼양목장)의 재무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특히 목장 관광 사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하였고, 인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 여건을 유지시켜 준 것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舊)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됨

【시정명령】

【과 징 금】 삼양식품 3억 100만 원, 에코그린캠퍼스 100만 원

사례 ⑤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 비교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였으며, 미래에셋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 비교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했음

심결요지 (舊)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우려로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 능력, 가격, 거래 조건 등에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를 하는 등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음

제재내용 【과 징 금】 43억 9,100만 원

사례 ⑥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인 삼성전자 등 4개사는 2013년 4월부터 공정위 심의일(2021.6.2.)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향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심결요지 약 9년간의 지원행위를 통해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웰스토리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며, 웰스토리는 내부거래를 통해 취득한 안정적 수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수행하였음. 웰스토리는 이 사건 지원행위를 발판으로 단체 급식 경쟁입찰에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독립 급식업체의 생존을 위협했고, 지원 행위에 의해 웰스토리의 사업 기반과 재무 상태가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됨으로써 웰스토리의 경쟁 여건이 경쟁 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하게 제고되었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삼성전자 등 4개사(지원주체) 및 웰스토리(지원주체)
총 2,349억 원

【고 발】 삼성전자(주), 前미래전략실장

사례 ⑦ 기업집단 ‘이랜드’의 이랜드리테일은 무리한 인수합병 추진으로 자금난에 빠진 이랜드월드에 560억 원을 6개월 대여하면서 이자와 지연이자를 받지 않았으며, 이랜드리테일은 2013.11월 ~ 2016.3월 기간 동안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함

심결요지 이랜드월드(의류 제조 및 도·소매 판매업)는 동일인 박성수 및 특수관계인 등이 99.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기업집단 「이랜드」 소유·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면서, 계열회사인 이랜드월드는 2010년 이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하여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 실행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향후 금지명령

【과 징 금】 40억 7천 9백만 원

심결례

사례 ⑧ (주)경동원은 (주)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매출원가보다도 낮게 설정하여 (주)경동나비엔에 현저하게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하였으며, (주)경동나비엔은 경쟁이 치열한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 할 수 있었음

심결요지 (주)경동원의 지원행위가 없었다면 (주)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악화되어 판매를 중단·축소할 개연성도 있었음.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계열회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함

제재내용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과징금】36억 8천만 원

물고 답하고(물 & 답)

물 계열회사 간의 제반거래에 있어서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 계열회사 간의 거래에서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와 부당지원 행위가 주로 문제됨. 따라서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회사와 차별하여 계열회사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아울러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자금·자산·인력 등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물 계열회사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소규모 인원이라 비용 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는지?

답 특정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인원을 파견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다수 계열회사들이 동시에 특정 계열회사에 인원을 파견한다면 인력을 통한 부당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부당지원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비용 정산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음

물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거래시 특별한 역할이 없는 해당 계열회사를 거래 중간단계에 포함시켜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답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거래하면서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부당지원 행위 중 ‘통행세 지원행위’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3.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

1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를 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가진다면 법에 위반됨

㉠ 공동의 거래거절(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1.가)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공급거절,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 거래계속의 거절 등이 포함됨
-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

↳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음

- 공동의 거절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 위법성 판단기준

-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함

☞ 사업자들의 공동의 거래거절이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

- 재고부족,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사전에 합리적인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부당하게’의 구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와 ‘부당하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

-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어 행위의 외형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행위자에 있음
-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 유형은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행위의 유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과 효율성 증대효과·소비자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성을 입증해야 함

㉠ 그 밖의 거래거절(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1.나)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의 거래거절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사업자 단독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로서 공동의 거래거절 대상 행위와 동일
 - ↳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대상이 되지 않음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거절 물품·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

☞ 다음과 같은 합리적 사유로 거래를 거절할 경우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주의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거래한 특정사업자와 거래를 중단 또는 수량을 현저히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포스코 00과장입니다. 이번 △△설비 00부품 구매 건에 관련해서 말인데요. 귀사에서 그동안 꾸준히 공급해 주셨는데 다음 달부터는 그러실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구요? 저희가 뭐 그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하나요?”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 또는 상품·용역의 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기타의 거래거절 행위에 해당합니다

심결례

사례 ① 포스코는 협력작업 계약에 따라, 선재공장에서 제품소재 및 제품의 입출하·절단·연마 등의 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는 화성기업(주)의 대표에게 면담요청을 하여 협력작업에 대한 사업양도를 요구하였으며, 화성기업(주)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9년 12월 3일 3년 기간으로 연장한 재계약의 만료시점인 2000년 3월 31일에 거래를 종료하고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음

심결요지 화성기업(주)는 포스코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많은 인력과 장비를 포스코 사업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본 협력작업과 같은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포스코 이외의 거래처를 확보할 수 없는 여건이므로 포스코는 화성기업(주)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으며, 또한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협력작업에 대한 사업양도를 강요한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에 해당함

계약자유 원칙상 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재계약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자율적 판단사항이나, 본 건은 협력작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설비규모, 대체거래선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거래가 전제 또는 예상되는 계약관계로서 사업양도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타당한 사유 없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계획임을 통보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서면통지명령】 30일 이내 시정명령 사실을 협력작업 관계에 있는 모든 거래업체에 서면통지

사례 ② (주)녹십자는 의약품 '정주용 헤파빅'의 국내 독점 생산·공급자로서 2010년 서울대병원 납품업자인 도매상 A의 제품 공급 요청을 물량 한정을 이유로 거절하였음, 도매상 A는 서울대병원에 납품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타 도매상으로부터 헤파빅을 비싸게 구입하여 손해를 보며 납품함

심결요지 2010년 거래거절 당시, (주)녹십자는 전년도 초과 생산량이 존재 하였음을 고려시 도매상 A에게 공급할 여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독점생산 의약품 공급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舊)공정 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물고 답하고(물 & 답)

물 같은 지역에 이미 자사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판매점이 개설되어 있어 다른 사업자의 판매점 계약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법 위반인지?

답 거래개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거래를 거절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본 건의 경우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물 본사가 정해진 가격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는 이유로 판매점과 거래를 중단하였다면?

답 판매점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제품 판매가격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며, 따라서 판매점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법 위반임. 또한 이를 이유로 거래거절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목적달성을 위한 거래거절로서 불법행위임

물 계약만으로 따라 해당 판매대리점과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체결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여부는?

답 계약만료 시점에 즈음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사전통보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음(그러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우리 회사가 거래거절을 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처리요망)

물 거래종료 당연사유가 아닌 회사 내 정책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정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갖춰야 하는지?

답 회사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모색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기간을 부여해야 함

물 납품업체의 납품실적 부진 또는 규정위반 등이 발생하여 납품업체와의 계약기간 중 납품중지 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답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을 위반하여 당사의 신뢰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납품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중단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음

물 납품업체들이 공동으로 특정점에 대한 구매를 거부 또는 제한해 줄 것을 우리 회사에 요구하고 이에 따라 우리 회사가 특정점에 대한 구매를 중단할 경우 위법인지?

답 납품업체들의 행위는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사업자에게 거래거절을 하게 한 행위로서 위법이며, 우리 회사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점에 대한 구매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위법임

물 납품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최고 없는 계약해지를 규정할 경우 계약의 효력 여부는?

답 법적인 계약의 효력 여부는 별개로 판단할 문제이나, 포괄적 계약해지 사유와 최고 없는 계약해지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우리 회사의 경우 계약내용에 상관없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됨

물 거래중인 납품업체들이 공동그룹을 결성하여 그룹의 자격으로 무리한 거래 조건변경 등을 제시할 경우 그 납품업체들과 거래를 중단하면 법 위반인가?

답 거래여부의 판단은 가격이나 거래조건, 거래수량 등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무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하여 더 이상 거래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거래를 거절하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2 차별적 취급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나,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적 설정이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 가격차별(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2.가)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 가격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가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말하며, 할인율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이 포함됨, 거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의미)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가격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에 미달하는지 여부
- 가격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 경쟁제한성을 가져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가격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한 경우
- 가격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거래조건 차별(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2.나)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수량, 품질, 규격, 대금지급조건, 인도조건, 수송조건, 리베이트, A/S조건, 하자 책임기간 등)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거래조건 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계약의 이행방법, 대금의 결제조건 등 거래내용면에서의 차별)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거래조건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거래조건 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거래조건 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거래조건 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거래조건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시행령 제52조 [별표2]2.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행위의 판단기준**■ **대상 행위**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등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차별 취급하는 경우
-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㉕ **집단적 차별(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2.라)**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경우

■ **집단적 차별 행위의 판단기준**■ **대상 행위**

-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 취급하는 행위(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반드시 행위가 발생해야 함)

■ **위법성 판단기준**

- 행위자가 집단적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지위를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집단적 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 집단적 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집단적 차별이 지속적인지 여부
-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가 집단적 차별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 전환 용이성 여부 등

☞ **다음은 합리적 사유로 차별적 취급이 성립되지 않음**

- 운송비용, 판매비용, 고객관계의 지속기간, 거래량의 다과,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거래가격 및 거래조건 등에 차별을 두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이 있더라도 비영리기관이나 자선단체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주의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게만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포스코스틸리온 00과장입니다. 금번 00계약 건 말인데요. 같은 계열회사이고 하니 수수료를 조금 더 싸게 할 수 없을까요? 다른 회사들보다 딱 0.5%만 할인 받는 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심결례

사례 ① 포스코는 1994년 1월~1995년 5월 중 열연코일을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비계열사인 동부제강(주) 등 5개사에게는 제품 출고 전에 선수어음 및 외상 30일로 받는 반면 계열회사인 (주) 포스틸로부터는 제품출고 후 70일 만기어음으로 받은 사실이 있음

심결요지 비계열회사인 동부제강(주) 등 5개사로부터는 선수어음을 받은 반면에 계열회사에게는 70일 만기어음을 수령함으로써 계열회사에게 판매대금 결제기간을 최고 70일까지 유리하게 한 행위는 거래규모, 판매가격 등 제요인을 고려하여 검토해 볼 때, 경쟁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차별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위하여 판매대금 결제조건에 관하여 현저하게 차별취급한 행위로 인정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공표명령】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1회 게재

물고 답하고(물 & 답)

물 동일한 제품을 경쟁이 낮은 곳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판매점에게 판매하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 여부?

답 기본적으로 판매가격은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수요가 매우 많은 지역에서 판매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합리적 차별이라 볼 수 있음

물 특정 판매점에게만 가격할인, 보조금 등 긴밀한 지원을 할 경우는?

답 운송비 차이나 거래량의 다과에 따른 합리적인 거래조건 차별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특정 판매점에게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다른 판매점이 그 판매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 가능성이 큼

물 계열회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상사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경우 차별적 행위에 해당하는가?

답 물량 이외의 거래조건이 동일하다면 어느 상사에게 어느 정도 비율의 물량을 배정하는가는 자사의 재량이므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단, 계약기간 중 물량감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물 물품을 구입하면서 비계열회사인 A사가 계열회사인 B사보다 견적가격을 싸게 제시하였음에도 B사와 거래하기로 하였다면 법 위반인가?

답 A사가 공급하는 물품이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불량률이 높은 등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단,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이 될 수 있음

물고 답하고(물 & 답)

- 문** 협력업체를 매 분기별로 평가하고 이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대금결제를 차별화할 경우 문제가 있는가?
- 답** 인센티브 성격의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위는 거래의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문**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격이나 기술수준이 별 차이가 없을 경우 계열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 답** 거래상대방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므로, 동일한 조건하에서 계열회사를 선정하였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음
- 문** 동일상품을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가?
- 답**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가격의 기준을 정해 놓고 파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으로 보기 어려움.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다른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차별로서 문제 삼기는 어려움
- 문** 대량구입과 소량구입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받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가?
- 답** 판매물량, 거래기간 및 금액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음
- 문** 우리 회사의 구매정책과는 무관하게 물품 판매업체의 영업정책상 우리 회사의 우수한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다른 회사에 비해 대금결제 조건을 유리하게 해주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가? 만일 계열회사가 그런 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한다면?
- 답** 모든 거래에 있어서는 항상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거래조건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음. 거래상대방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도 당해 회사의 영업정책이나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음

3 거래상 지위남용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 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됨

■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요건

- ① 지속적인 거래관계 존재
 - 계속적 거래를 위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 투자여부 검토
- ②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함
 -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 비중 검토
 - ※ 상기 요건의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예시)

-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자와 시설임차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 간 거래관계

㉠ 구입강제(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6.가)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구입강제 행위의 판단 기준

■ 대상 행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인정)
-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구입강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

㉠ 이익제공 강요(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6.나)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이익제공 강요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토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
- 판매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부담·인력 파견을 강요하고,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이익제공 강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당해 행위의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당해 이익제공의 내용과 성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판매목표 강제(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6.다)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 제품 공급 중단 등을 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
- ➔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 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불이익 제공(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6.라)

-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 제공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거래상대방에게 일반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포함)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계약 기간 중 부당한 거래 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을 설정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 설정, 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등
 - ➔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 **경영간섭(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6.마)**

- 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경영간섭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 판매처의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자금 출납 등 사업 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경영간섭이 부당한지 여부 등
 - ➔ 경영간섭의 의도 및 목적,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경영간섭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 판단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주의사항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 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안 됩니다.”

“포스코 00과장입니다. 귀사의 △△과장님 계시죠? 전 이 사람이 귀사에서 근무하는 한 계속 거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매너도 없고, 매번 약속을 어기니까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보내시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시든지 안하면, 다신 귀사에 발주하는 일 없을테니 그리 아세요.”

↳ 거래상 우월한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합니다.

심결례

사례 ① 한국야쿠르트는 시장변동 상황, 근무일수 및 전년도 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지점별, 제품별 다음년도 판매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12월 각 지점에 통보하였음. 또한 2002년도부터 판매목표 달성률 등이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증평대리점 등 15개 대리점에 패널티를 부과하여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경고조치를 하면서 벌점 30점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한 사실이 있음

심결요지 한국야쿠르트가 위탁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래특유의 투자존재 여부, 거래의존도, 거래처 이전의 용이성,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등 여러요소를 판단하여야 함. 본 행위에서는 위탁대리점이 우유대리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점, 다른 거래처를 선택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시 한국야쿠르트가 위탁대리점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있음
한국야쿠르트가 위탁대리점에 대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판매목표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 ②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임의공급방식으로 구입을 강요하고,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 판촉사원의 파견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리하였음에도 대리점과의 사전협의 없이 진열 판촉사원 임금을 50% 이상 전가함

심결요지 남양유업은 법률자문·내부검토 등을 통해 대리점에 임의적 주문 할당이 위법한 구입 강제에 해당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지속하였으며, 진열 판촉사원 투입 및 교체여부를 결정하고 근무시간, 근태관리 및 급여 등 제반사항을 결정·관리하는 등 실질적 고용주임에도

대리점에 급여를 부담시켜 (舊)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함

제재내용 【시정명령】【과 징 금】 총 123억 원 【검찰고발】

사례 ③ 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홀딩스는 2007년 8월~2008년 11월 기간 동안 거래관계에 있는 3개 홈쇼핑사(GS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에게 자신의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주)가 춘천에 건설 예정인 골프장에 사전투자할 것을 강요한 행위가 있음

심결요지 태광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가 오너일가 소유 계열사의 골프장 건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홈쇼핑사들까지 동원한 사례로서, 채널편성권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골프장 사전투자를 강요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례에 해당함

제재내용 【시정명령】【과 징 금】 4천200만 원

사례 ④ 쿠팡(주)는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였음

심결요지 쿠팡(주)의 행위는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됨

제재내용 【시정명령】향후 재발 방지명령,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과 징 금】 총32억 9천 7백만원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내용임

물고 답하고(물 & 답)

물 판매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판매점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관한 정보, 매출 상세정보, 생산·판매·재고 현황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모니터링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답 판매점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확보하고 동 정보들에 근거하여 판매점의 경영에 간섭을 하는 등 부당한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모니터링 자체만 가지고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단 현실적으로 모니터링 과정에서 대리점이 원하지 않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간섭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물 판매점이 기 거래실적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분기 판매계획을 초과해서 구매한 경우 초과량에 대하여 가격을 할인해 주면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하는가?

답 계획량을 초과하지 못했을 경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량을 초과했을 경우 일정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판매계획량은 판매점이 전 분기 실적 등을 감안하여 구매하겠다고 요청하는 양을 기준으로 상호 결정한 것이고, 또한 판매점에게 정상적인 마진을 보상해준 상태에서 순수하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라면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물 구입강제 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 상품을 구입토록 강제하는 행위인데 여기서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란 어떤 것인가?

답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입증된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거래상대방의 주문이 없는데도 회사의 재고량 해소를 위해 일방적으로 공급하면서 반품을 불허하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의 영업과 무관한 제품을 필요 이상으로 구입하게 하는 경우 ③ 신제품을 거래상대방의 의사를 불문하고 대량 공급하고 반품을 불허하는 경우 ④ 거래상대방이 자재의 구입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재를 별도의 운송비까지 지급하면서 구입한 경우

4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유통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법에 위반됨

㉠ 배타조건부 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7.가)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 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배타조건부 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상대 사업자의 숫자가 많고 그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음)
- 배타조건부 거래의 실시기간(장기인 경우 경쟁에 영향미칠 수 있음)
- 배타조건부 거래의 의도 및 목적
- 배타조건부 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타 경쟁제한 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가 다음과 같은 합리성이 있을 경우 법 위반이 아님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 전문성 등으로 인해 A/S활동 등에 있어 배타조건부 거래가 필수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타조건부 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등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 배타조건부 거래로 인해 유통업체의 무임승차 방지, 판매 및 조달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7.나)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행위의 판단기준

■ 대상 행위

-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구속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위법성 판단기준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지역제한을 하여도 제재가 없는 등 구속성이 엄격하지 않은 지역제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
-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 되어 있는지 여부
-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가격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주의사항

“판매점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해 경쟁사 제품의 취급을 제한·금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포스코 00과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판매점 운영합리화 차원에서 연간 단위로 판매점 평가, 관리 툴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 항목 중에서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합니다.

심결례

사례 ① 크라운제과는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서 계약서상에 대리점이 관할 영업구역 외에서 영업을 할 때 피심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대리점이 관할 영업구역을 이탈하여 거래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심결요지 크라운제과는 자신의 대리점과 거래함에 있어 대리점의 거래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기준, 일정한 판매지역을 할당해 주고 해당 판매지역 내의 소매점등과 거래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즉, 대리점이 크라운제과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해당 판매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 사전에 크라운제과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점이 피심인에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판매지역 이외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피심인과 대리점 간에 체결한 거래약정에 따라 피심인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크라운제과의 위 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舊)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 ② KT&G 수도권 3개 지사·지점은 관할지역 담배소매상들에게 경쟁사업자 담배를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고, KT&G 서울지역 4개 지사·지점은 2005년 8월 18일 출시한 '로크릭스(LOCRIX)'의 판매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관할구역 내 담배소매상들에게 로크릭스의 동종 담배라 할 수 있는 경쟁사업자들의 타르 6mg급 담배를 일정기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대금을 할인해 주었음. 또한 경쟁사업자의 담배 및 담배광고물을 매장에 진열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도 있음

심결요지 KT&G는 자기 담배의 가격·품질 및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소매상과 약정을 맺어 이들과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약하는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담배소매상에 대한 자신의 담배 수요를 유지 또는 창출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舊)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에 위반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물고 답하고(물 & 답)

문 제조업체가 대리점과 계약시 계약서상에 판매 및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법 위반이 되는지?

답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됨. 단, 지역의 판매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는 특정지역에 대한 판매책임제, 판매거점제 등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음

문 대리점에게 판매지역을 일정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되는가?

답 지역제한의 경우 구속성의 정도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즉, 지역구속성이 약한 단순한 지역책임제나 판매거점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됨 (제조업자가 판매점에 대해 일정한 지역을 주된 판매지역으로 설정할 뿐 지역외의 판매도 허용되는 경우)
그러나 지역구속성이 강한 지역제한은 문제가 됨. 예컨대 해당제품의 시장이 독과점 상태에 있고 지역제한이 이를 심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제한을 어겼을 때 공급중단, 계약해지 등 제재수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문 제조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의 상호를 부착한 대리점에 대하여 자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답 자사 상호를 부착한 대리점에 대하여 자사 제품만을 취급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거래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시장지배적 사업이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 (법 제2조 제3호)

2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의 판단 기준

아래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할 수 있음

· 시장점유율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50% 이상,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75% 이상 사업자(단,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자 제외)

·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 및 정도

- 당해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지며 신규 진입 가능성은 법적·제도적 진입장벽의 유무, 필요 최소한의 자금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

·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 당해 사업자에 비해 경쟁사업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지며 경쟁사업자의 규모를 판단할 때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생산능력, 원재료 구매비중 또는 공급비중, 자금력 등을 고려

· 경쟁사업자 간 공동행위의 가능성

- 사업자 간 가격·수량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한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음

• 유사품 또는 인접시장의 존재

- 유사품 및 인접시장이 존재하여 당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짐

• 시장봉쇄력

- 당해 사업자의 원자재 구매비율이나 공급비율이 50% 이상(3개 이하 사업자 75%)에 해당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짐

• 자금력

- 당해 사업자의 자금력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크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자금력의 판단에는 자본 또는 부채의 동원능력, 매출액, 이윤, 순이익률, 현금흐름, 자본시장에의 접근 가능성, 계열회사의 자금력 등을 고려함

• 기타 고려요인

- 거래선 변경 가능 여부,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 등

2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에 해당하는 각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 (법 제6조)

-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단, 시장점유율 10%미만인 자는 제외)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

㉠ 가격남용 행위(법 제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9조 제1항)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통상적 수준)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 가격남용 행위의 판단기준

• 가격

-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함

• 수급의 변동

-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객관적 변동을 말하며, 이 경우 상당기간 동안 당해 품목의 수요 및 공급이 안정적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함

•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

-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재료비·노무비·제조경비·판매관리비·영업외 비용 등의 변동을 말함

• 동종 또는 유사 업종

-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분야를 위주로 판단하되, 당해 거래분야 위주의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시장 또는 인접시장을 포함하여 고려함

•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

- 각각의 비용항목과 전체 비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당해 사업자의 재무상황, 비용의 변동추세, 다른 사업자의 유사항목 비용지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현저한 상승 또는 근소한 하락

- 최근 당해 품목의 가격변동 및 수급상황, 당해 품목의 생산자 물가지수, 당해 사업자의 수출시장에서의 가격인상률, 당해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출고조절 행위(법 제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9조 제2항)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 출고조절 행위의 판단기준

- 최근의 추세
 - 상당기간 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 지역별, 거래처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수급의 변동요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을 감안
-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
 -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 출하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함(단, 직영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및 출하량을 합산)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 유무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의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의 증가 여부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의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출하 여부
 - 원재료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자신은 동 원재료를 이용, 정상적으로 관련제품을 생산하면서 타 사업자에게는 동 원재료의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

-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을 말함

심결례

사례 ① (주)신동방은 1997년 12월 8일~16일 기간 중 대두유 제품의 판매량을 현저히 감소시킨 반면, 동 제품의 재고량은 증가시킴으로써 대두유 제품의 국내 출고량을 조절함

심결요지 ① 1997년 12월에 대두유 제품에 대한 가격불안 심리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출고조절 기간 중 피심인의 대두유 판매량은 감소하고, 재고량은 계속 증가한 점 ② 출고조절 기간 중 피심인이 대두유 출고량을 제한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③ 출고조절 기간 중 대두유 출고량을 줄이고 설날 성수기에 인상된 가격(1997년 12월 16.9% 인상, 1998년 1월 13.7% 인상)으로 판매하기 위한 영업전략에 의한 것이라는 점 ④ 그 결과 피심인의 대두유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주)해표의 1998년 1월 매출실적과 경상 이익률이 다른 달에 비해 월등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두유 제품의 국내 출고량을 부당하게 조절한 행위로서 법에 위반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3억1천500만 원

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법 제5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9조 제3항)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의 판단기준

- 간접적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방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 다른 사업자의 생산·재무·판매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
- 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량,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타당성이 없는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 사업자금을 대여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행위
 - 사업활동에 필요한 소정 절차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경쟁력을 침해하기 위한 특허권 침해소송 제기하는 행위

심결례

사례 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사(이하 이들 3사를 통칭하여 퀄컴)는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 특허 보유자이자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로서 FRAND 확약을 어기고 다음의 행위를 실행함

* FRAND 확약 :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 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

- ①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 특허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
- ②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하여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
- ③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

심결요지 퀄컴이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온 행위는 모뎀칩셋시장 및 이동통신 SEP 라이선스 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며, 다른 사업자의 R&D 활동을 저해하여 이동통신 기술 R&D 경쟁도 왜곡하게 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 및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행위(법 제5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9조 제4항)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 직·간접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제한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신규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 신규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 행위의 판단기준

- 기타 다음의 행위로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 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또는 기간설비에 접근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신규진입 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절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에 필요한 소정절차의 이행을 부당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 당해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의 수급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및 소비자이익 저해 행위 (법 제5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9조 제5항)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의 판단기준

- 낮은 대가의 공급 또는 높은 대가의 구입
 - 염가 또는 고가의 정도, 공급 또는 구입의 수량 및 기간, 품목의 특성 및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행위의 목적,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유무,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 및 자금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

- 기존 사업자의 면허권 등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여 경쟁사업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행위
- 경쟁사업자의 시설, 기술, 자본 및 원재료 등의 제공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제공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도록 요청 또는 강제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의 주요 시장에 상당 기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집중 판매하는 경우
- 권장 소비자가격(가격에 대한 명칭에 관계없이)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과다하게 높거나 낮게 표시하는 경우
- 기타 소비자의 재산상·신체상·정신상의 제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주의사항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대리점에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등 출고량을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포스코 00과장입니다. 귀 대리점에서는 그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저가 제품을 고객사에 유통시키고 계십니다. 방침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저희도 불가피하게 귀사의 공급량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감소시키는 등 부당하게 출고량을 조절하는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합니다.

심결례

사례 ① 국내 PC용 CPU 시장에서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인텔은 2002년 3/4분기부터 2005년 2/4분기까지 국내 CPU 시장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국내 PC 제조회사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경쟁사업자인 AMD사의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음

심결요지 인텔이 국내 PC 제조회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는 국내 PC제조 회사들의 거래상대방 선택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였고, 실제로 피심인과 경쟁사업자인 AMD사의 시장점유율 수준 및 추이(AMD사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부터 2006년 기간 대부분 10%를 넘지 못하였고 특히 AMD사의 시장점유율이 올라가면 피심인은 PC 제조회사들에게 새로운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AMD사의 점유율은 다시 하락)를 보면 피심인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억제하는 등 경쟁을 현저히 제한하여 (舊)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에 위반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됨

제재내용 【과징금】 총 266억원

포스코
스틸리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하도급 부문

1. 하도급 관련 규제
2. 하도급법 주요 내용

1. 하도급 관련 규제

1 하도급법의 목적 및 입법취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거래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

2 하도급법의 체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적용대상

- 목적 :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 적용업종 : 제조, 수리, 건설, 용역
- 적용대상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거래,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간 거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 적용기간 :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기술자료 관련은 7년 이내)

㉡ 하도급거래의 규제내용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 「하도급대금 연동제」 포함
-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의 공개(※ '21.12.9 법 개정안 국회의결, 공포 1년 후 시행)
- 선급금 지급 의무
-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의무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 부당특약 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금지
- 물품 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청구의 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유출행위 금지
-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보복조치의 금지
- 탈법행위 금지

■ 발주자의 의무사항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

■ 수급사업자의 의무·준수사항

- 서류보존 의무

- 계약이행보증(건설) 의무
- 신의칙 준수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 거부
- 신고시 증거서류 제출

㉔ 법 위반에 대한 주요 제재내용

■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명령 등)
-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
(기술유용 등 법 위반금액 산정 곤란 시에는 20억원 이내 정액 과징금 부과)
- 과태료 부과: 2억원 이하
- 상습 법위반자 조치(입찰제한, 영업정지 등 요청)

■ 사법적 제재(공정위의 전속고발)

- 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부당경영간섭 금지 및 탈법행위 금지 위반자
- 3억원 이하의 벌금
 - 보복조치

※ 양벌규정 : 행위자 및 법인 처벌

■ 하도급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행위(3배 손해배상 책임)

- ① 부당단가인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및 감액 금지)
- ② 부당발주취소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③ 부당반품 금지
- ④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3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㉑ 하도급의 정의

■ 민법상 하도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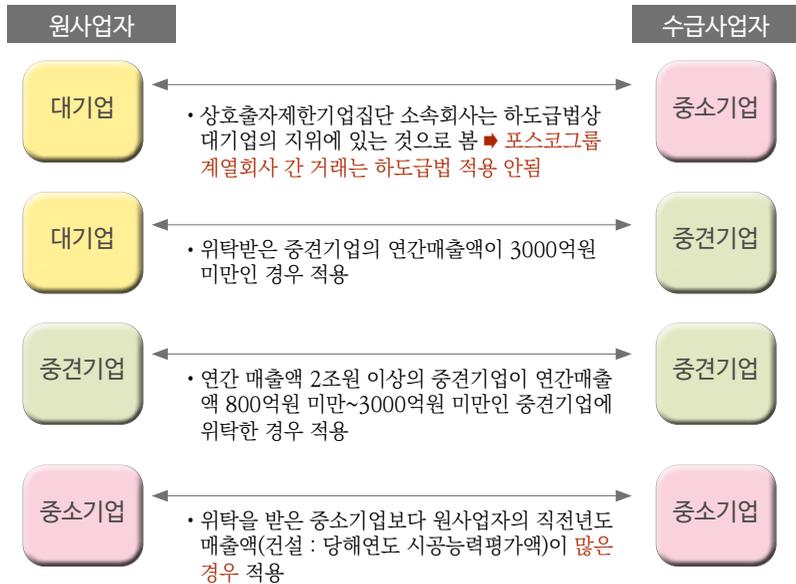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어느 일을 완성하고 그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거래형태이다. (민법 제664조 참조)
- 하도급이란 도급계약에 따른 재도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다시 그 도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급인(하수급인)에게 다시 도급하는 거래 형태를 의미함

■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 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㉑ 법 적용 대상요건

■ 적용대상 사업자(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



《 중소기업 정의 》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 업종별 3개년 평균 or 연간매출액 4백억원 이하~1천 5백억원 이하
-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 충족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

《 중견기업 정의 》

⇒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공공기관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아닌 기업

※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로 보호되는 경우

- 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로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 ② 소규모 중견기업이 연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부터 위탁을 받는 경우
-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에 한하여 수급사업자로 적용 (하도급대금의 지급, 보복조치 금지 규정 등)

■ 적용제외대상 중소기업(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연간매출액(시공능력 평가액)이 일정규모 미만 중소기업은 원사업자 대상에서 제외

위탁 유형	연간매출액(시공능력평가액)
용역위탁	10억원 미만
제조·수리위탁	30억원 미만
건설위탁	45억원 미만

㉒ 적용대상 거래

■ 제조하도급(‘제조위탁’: 하도급법 제2조 제6항)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① 물품의 제조 ② 물품의 판매 ③ 물품의 수리 ④ 건설
- ↳ 그 業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 고시

①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業으로 하는 경우

- 제조·수리·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거래 포함). 단,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함

-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 단, 대량생산 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함
 - 물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사형, 목형 등
 -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
 - 상기 물품의 제조·수리를 위한 도장, 도금, 주조, 단조, 조립, 염색, 봉제 등(임) 가공
 - ☞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간주

② 사업자가 건설을 業으로 하는 경우

-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가드레일, 표지판 등 시설물을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제작위탁
- 레미콘, 아스콘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등의 첨부 없이 규격, 품질 등을 지정하여 납품하도록 제조위탁하는 것
- 주방가구, 신발장, 거실장, 창틀 등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제조위탁
- 규격·표준화된 자재라도 특별히 사양서 등을 첨부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는 해당됨

■ 수리하도급(‘수리위탁’: 하도급법 제2조 제8항)

- 주문에 의해 물품을 수리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수리를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예시】

- ① 차량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② 선박수리업자가 선박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③ 발전기수리업자가 발전기의 수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건설하도급(‘건설위탁’: 하도급법 제2조 제9항)

- 건설업자가 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①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業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자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건설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 「전기공사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③ 자체 발주공사의 건설위탁

- 건설업자가 아파트 신축공사 등 건설공사를 자기가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 용역하도급(‘용역위탁’: 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이 경우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용역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함

①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

- 정보프로그램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나 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조합된 것
-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 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
- 문자, 도형, 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체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 (예 디자인, 상표, 설계도면 등)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 및 연구 및 개발과 관련된 성과물

② 역무의 공급위탁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 (설계 제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 하는 활동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활동
-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 장소, 경비 등의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 발주자의 정의(법 제2조 제10항)

-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단,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함

라 법 적용대상 기간

■ 관련규정

-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단,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분쟁조정 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함 (하도급법 제23조)

《 거래종료일 》

- 제조·수리 및 지식·정보성과물의 제작위탁 :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
- 건설위탁 :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물고 답하고(물 & 답)

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일괄 재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법 적용여부는?

답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의 적정한 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하도급법상 적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일괄 재하도급이더라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음

물 제조업을 하는 대기업이 공장 증축을 위해 중소기업자와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에 해당하는지?

답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자격 있는 건설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는 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당해 위탁은 도급계약일 뿐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은 아님

물 제철소 조업 및 정비작업 수행 외주파트너사 중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여부는?

답 외주파트너사 중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위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포장, 가공업체등은 수급사업자에 해당되나, 청소 등 단순노무 및 운송 등은 제외됨

2. 하도급법 주요 내용

1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가 서면발급 및 서류보존 의무

■ 서면의 발급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중요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함

■ 중요 기재사항(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 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목적물)의 내용
- ②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는 시기 및 장소
- ③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 ④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조정금액 등)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⑥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 등의 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⑦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하도급대금 연동제)

■ 서면의 발급시기 : 사전 발급

-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

■ 예외적으로 일부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발급 가능(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발급이 가능하나,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않은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시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사항을 적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함**
↳ 해당사항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함(법 제3조 제4항)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하여 기재하는 경우
- 제조·수리·건설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 전산으로 발주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
- 발주처 통보 등의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 다툼으로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미발급하는 경우(서면 미발급에 해당)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기본계약서(개별계약서)를 발급하고 이에따라 주문서, 발주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는 경우
-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견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등으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FAX, VAN 또는 전산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발급하고 수출용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개별계약서로 갈음한 경우
- 서면 발급을 공정위가 제시하는 표준하도급 계약서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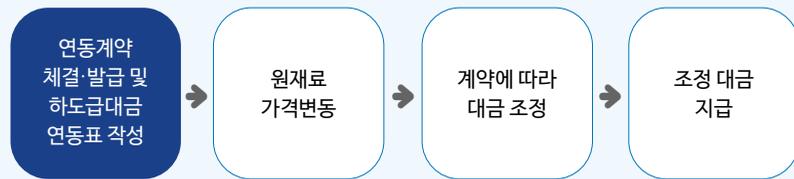
하도급대금 연동제

* '23.10.4 시행, 시행일 이후 최초 체결·갱신 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제 관련 표준 연동/미연동 계약서, 가이드북, FAQ를 제공
(홈페이지 www.ftc.go.kr → 정책/제도 → 기업거래정책 → 하도급거래 → 자료실)

○ 정의(하도급법 제2조 제17항, 제3조 제2항 제3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연동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



○ 적용대상 거래 :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 거래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 연동 약정 체결 의무의 예외 (하도급법 제3조 제4항)

- ①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인 경우
- ②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③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다만 그 취지와 사유를 미연동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함)

※ 시나리오별 연동계약서 작성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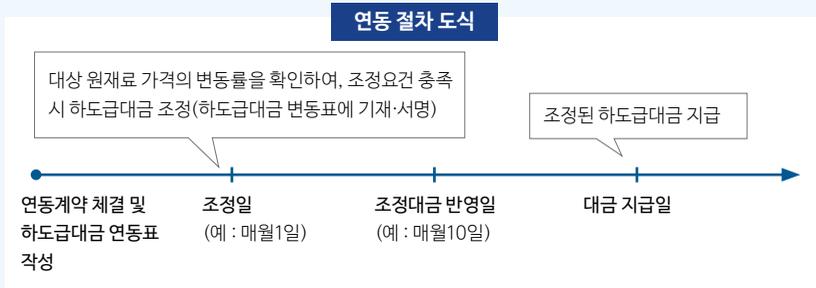
○ 연동 약정서 법정 기재사항 (시행령 제3조 제2항)

- ① 목적물등의 명칭
- ② 주요 원재료
- ③ 조정요건
- ④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 ⑤ 연동 산식
- ⑥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 ⑦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구분	내용
목적물등의 명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을 위탁한 것의 명칭
주요 원재료	목적물등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시점 비교시점 : 조정주기에 따라 기준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확인하는 시점
조정요건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
조정주기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조정일	조정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
조정대금 반영일	목적물 등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연동 산식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 하도급연동 계약의 절차



◎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연동 관련 탈법행위* 금지

* 탈법행위 :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약정을 체결할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 (쫄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

- 과태료(5천만원 이하), 시정조치, 공표 및 벌점(3.1 또는 5.1점)부과

② 그 밖의 위반(서면기재 누락, 성실 협의의무 위반 등)

- 과태료(1천만원 이하), 시정조치, 공표 및 벌점(0.25~2.0점) 부과

■ 하도급 계약 추정제(하도급법 제3조 제8항, 제9항)

· 원사업자가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일정한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 **일정한 사항** :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통지와 회신**은 내용증명우편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 제외)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함

·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의 성립을 서면으로 확인, 향후 분쟁에 대비 가능

· 부인하는 경우 : 계약의 불성립을 확인하고 작업중단, 하도급업체의 손해 예방 가능

· 회신이 없는 경우 : 계약 성립 추정, 추후 분쟁 발생시 소송 등을 통한 구제 가능

■ 서류의 보존(하도급법 제3조 제12항)

■ 보존 서류(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 ① 하도급계약서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미연동 계약서 포함
- ② 제조 등의 위탁 목적물의 물품수량증명서
- ③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이 기록된 검사보고서
- ④ 하도급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수단 등이 기록된 서류(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
- ⑤ 선급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으로 및 지연이자, 관세 등 환급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록된 서류
- ⑥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 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등이 기록된 서류

- ⑦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기록한 서류
- ⑧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기록한 서류
- ⑨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서면
- ⑩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 ⑪ 수급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가 목적물 등의 공급원이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가 기록된 서류
- ⑫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과 관련된 서류,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

■ 보존기간(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

※ 단, 기술자료와 관련된 기술자료 요구서면 및 비밀유지계약 서면은 7년간 보존

■ 컴퓨터 등 전자매체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보존된 서류도 인정(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의 지불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도급대금 지불 전의 관계서류(검수 관계, 반품관계, 하도급대금의 결정 등)를 파기하는 경우
- 계약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원본을 파기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양이 방대하여 보존이 어려워 마이크로필름, 컴퓨터디스켓 등의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보존하는 경우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권장(법 제3조의2) : 의무사항은 아님

-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건설자재, 전기, 기계,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자기상표부착제품(PB)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공(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정보마당 → 표준하도급계약서

물고 답하고(물 & 답)

물 하도급대금 연동제에서 '주요 원재료'의 의미는?

답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 등을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하며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음(참고로, 원재료 라 함은 가공이나 용역이 투여 됨으로써 최종재의 일부를 이루거나, 생산의 과정에서 그 형태가 변형되어 최종재에 결합하거나 최종재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것을 말함. 그러나,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하나 물리적·화학적으로 최종 물품 등의 구성품을 이루지 아니하거나 그 자체가 완성된 최종 물품으로서 독자적 기능을 가지는 물품은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음)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법 제2조 제16항에 따라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를 말함

원재료의 비용이란 계약 체결 시점에 수급사업자가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부가세가 포함됨

심결례

사례 ①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16,681건의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함. 계약 서면 16,681건 가운데 서면 발급일보다 작업 시작일이 빠른 계약이 7,254건, 서면 발급일보다 최초 작업 실적 발생 월이 빠른 계약이 9,427건이었음.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음

심결요지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하는 관행적인 '선 시공 후 계약' 행위는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

제재내용 【시정명령】【과징금】 153억원
※ 과징금은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위탁취소도 포함된 금액

사례 ②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38,45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고 계약 서면 38,451건 가운데 전자서명을 완료하기 전에 이미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6,646건, 공사 완료 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늦게 발급한 건을 없애고 다시 계약을 맺은 경우가 1,121건이었음

심결요지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을 적고 당사자 간의 서명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일은 전자서명 완료일이 되어야 하나, 삼성중공업은 계약 일자를 하도급 업체와의 전자 서명이 완료된 날이 아닌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설정했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36억원 및 법인 고발

㉔ 선금금 지급 의무

■ 선금금 지급이란?

- 발주자가 위탁하면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의 착수를 쉽게 하기 위해 원재료를 구매하거나 노무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이러한 선금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선금금의 지급(하도급법 제6조)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때에는 그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금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선금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선금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시 어음할인료 지급

■ 적용 기준

- 선금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선금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금금액 산정기준
 -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금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다만, 발주자가 선금금의 사용내역(용도, 지급대상 품목)을 지정하여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역별로 다음과 같이 하도급율을 감안한 선금금을 산정 지급
 - 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용도와 각 항목별 비율을 지정받아 선금금을 지급 받은 경우 : 그 용도와 항목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 예 토목건축공사에 토공사, 철콘공사, 조경공사가 있을 경우, 발주자가 선금금을 지급하면서 토공사부문에 30%, 철콘공사부문에 20%를 선금금으로 지정하여 지급 하였다면, 원사업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하도급계약 금액의 30%, 20%를 선금금으로 지급하면 됨
 - ㄴ 용도를 지정받지 않고 전체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을 선금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 관련된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예) 발주자가 용도 지정 없이 계약금액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관련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각각 하도급계약금액의 1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지연 제출하여 원사업자가 선급금의 법정 지급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통보일로부터 제출일까지)은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음

■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지급 기준

- 공정위 고시 : 지연이율 연 15.5% (2015. 7. 1~)
어음할인율 연 7.5% (2012. 8. 21~)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한 경우
-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지급한 경우
-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선급금을 공종별, 품목별로 용도를 지정하여 지급받았는데 하도급내용은 공종이나 품목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
- 선급금 지급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보증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주의사항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00과장입니다. 금번에 00현장 건 관련해서 선급금을 드려야 하는데, 요새 저희 자금사정이 좀 안좋아서 절반은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허, 이해해 주실 거죠?”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선급금 지급」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심결례

사례 ① 상원종합건설(주)는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건설위탁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을 94일 초과 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선급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비율 보다 낮은 비율로 지급하는 한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

심결요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선급금 지연지급 행위, 선급금 지급비율 미유지 행위,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로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

제재내용 【시정명령】

묻고 답하고(물 & 답)

물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다음 기성에서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답 하도급법상 선급금은 장래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성물에 맞추어 공제해 나가는 것이 원칙인 바, 선급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물 1996년 4월 10일에 발주자로부터 본사건물 신축공사를 100억원에 도급받아 1996년 5월 1일에 일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10억원에 건설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선급금으로 수령하였다면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기일 및 지급금액은?

답 ① 지급기일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기 이전인 1996년 4월 10일이라면 건설위탁일인 1996년 5월 1일부터 15일 이내, 즉 1996년 5월 16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이후인 1996년 5월 10일이라면 1996년 5월 25일까지 선급금을 지급해야 함

② 지급금액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공사비의 일정률로 지급받았을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비의 10%를 선급금으로 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도 10%인 1억원을 지급해야 함. 발주자가 선급금의 사용용도 등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지정하였다면 그 지정내역별로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함

물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의 부도로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답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로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므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미지급 선급금에 대한 화의채권 귀속여부는 화의법상 문제로 별도 판단 필요

물 발주처로부터 전체 공사에 대한 선급금 20%를 수령하고, 이 중 일부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한 결과, 발주처와 계약한 도급금액의 120%일 경우 선급금 지급은?

답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하도급 금액에 발주자로부터의 선급금 수령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㉔ 내국신용장(Local L/C)의개설의무

■ 내국신용장 개설(법 제7조)

-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주어야 함
-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물품수령증명서(인수증)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법 제8조 제2항)

■ 적용기준

-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원사업자 입증책임)
 - 수급사업자가 영세하거나 내국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작성능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월 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합의한 상태에서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등

! 참작사유 !

- 내국신용장 개설을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의 물품매도확약서가 필요하므로 수급사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제조위탁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은 원사업자의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없음
- 수급사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면 됨
- 원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아 법정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을 경우 원사업자는 원신용장이 개설되는 대로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면 됨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정당한 이유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못했으나 이를 분명히 입증해 준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15일 초과하여 물품매도확약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준 경우

■ 하도급법상 내국신용장 개설과 관세 환급에 대한 흐름도

구분		하도급법 규정	적용범위
내국신용장 개설	발주서(제조위탁) 매도확약서 제출(Offer Sheet) 내국신용장 개설(Local L/C)	15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	하도급법 제7조
	물품수령 인수증 교부	즉시 (통상 10일 이내 인수증 교부)	하도급법 제8조
	기초원자재 납세증명서 제출 완제품 수출	60일 이내 관세액 지급	하도급법 제15조
관세 환급	수출자의 관세 환급 하도업체에 관세 지급	15일 이내 관세액 지급	하도급법 제15조

▶ 관세 환급액을 법정기일(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가 지연이자(연 15.5%) 부담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주의사항

“내국신용장을 개설치 않거나, 15일을 넘겨서 개설·교부해서는 안 됩니다.”

“00과장입니다.··· 이번 00구매 건 관련해서 내국신용장 대신에 구매승인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매번 거래하는 건데, 굳이 신용장 발행해야 될 필요 있겠어요? 번거롭게. 그냥 구매승인서로 진행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 제조 등의 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미개설시, 하도급법 제7조 「내국신용장 개설」에 위반됩니다.

심결례

사례 ① 현대중합상사(주)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종합무역상사로서 범동교역외 6개 수급사업자에게 수출용 물품인 남성용 자켓 등을 제조위탁함에 있어서 내국신용장을 법정기일 경과 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줌

심결요지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하는 바, 피심인의 내국신용장 지연 개설행위는 하도급법 제7조 위반

제재내용 【시정명령】

물고 답하고(물 & 답)

물 수출용 물품을 제조위탁시 수급사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늦게 제출함으로써 신용장 개설이 법정기일인 15일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법에 위반되는지?

답 이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음. 단, 수급사업자가 적기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경우에서도 원사업자는 물품매도확약서를 수취하는 대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함

물 제조업자가 수출용 제품의 부품을 부품제조업자에게 1995년 10월 1일 제조위탁하고 1995년 11월 1일 부품제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으며, 이후 부품제조업자는 1995년 12월 1일 목적물을 납품하였으며, 제조업자는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으로 1995년 12월 20일 부품제조업자에게 물품수령증명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양 당사자 간에 적법한 하도급거래를 하였는지?

묻고 답하고(문 & 답)

답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1995년 10월 16일까지는 내국신용장(Local L/C)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주어야 함에도 1995년 11월 1일 개설해 준 행위는 내국신용장 지연개설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7조에 위반임
다음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있어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물품 관련 거래인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 후 즉시(10일 이내 검사 완료하고 완료 즉시) 물품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최소한 10일 초과하여 교부한 것은 하도급법 제8조에 위반임

문 수급사업자 중 무역금융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내국신용장(Local L/C) 거래를 구매승인서 거래로 변경하는 것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답 하도급법 제7조에서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물품구매 승인서로 대체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 즉, 원칙적으로 구매 승인서로 내국신용장을 대신할 수는 없음

㉔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하도급법 제9조)

- 수급사업자가 납품·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객관적이며 공정·타당하여야 함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적용기준

- 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제3의 공인기관 등에서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
-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임
- 검사결과와 통지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않음
 - ② 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음

■ **대량 납품하는 거래의 경우**

- 제조업에서 대량 납품의 경우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납품완료 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단,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됨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검사할 경우
- 검사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했으나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공정·타당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경우
-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 검사기준, 방법 및 시기를 정한 이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하는 경우
- 검사기준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
- 통상 적용되는 검사기준보다 매우 엄격하게 정해서 통상적으로는 합격판정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불량품의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의 지급을 과다하게 유보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기성청구 또는 공사를 준공하고 준공통지를 원사업자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가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한 경우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제조공정에서 나타난 불량을 수급사업자가 인정하여 적법하게 대금을 공제하기로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정당한 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제조업에서 대량 납품에 따른 샘플검사 또는 무검사 인주시 계약서에 반품 관련사항을 명백히 밝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납품 후에도 반품 가능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주의사항

“**납품·인도받은 목적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구두로 통보해서는 안 됩니다.**”

“00과장입니다. ... 금번 00물품은 어제 잘 받았구요. 샘플 테스트 결과, 별 하자 없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서면으로 테스트 결과 꼭 보내달라구요? 한 두 번 거래하는 것도 아니면서, 귀찮게 뭘 그렇게 일일이...”

↳ 하도급법 제9조 제2항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에 따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미통지 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결례

사례 ① 2004년 9월 15일 신고인에게 강원도 원주시 정산지구의 '농업용 저수지 제당의 그라우팅 공사'를 위탁 후, 2004년 12월 14일 신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하도급계약상의 기성금(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인 '감독관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15일 발주자인 농업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 원주시사에 준공검사를 요청하자, 감독관이자 발주자인 원주시사는 준공검사를 요청 받은 당일 저수지제당의 누수를 측정된 결과 측정시점에서의 누수량은 허용 누수량 범위 내로 치수되었음을 인정하나, 제당의 수위가 공사 착공 전 수위에 미치지 못하므로 추후 수위 상승에 따른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인 검토의견을 피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음. 이에 피심인은 발주자의 검토의견은 기성금 지급조건인 준공인가가 아님을 이유로 기성금 8천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음

심결요지 하도급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사업자가 납품 또는 인도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성금 지급조건인 '감독관 승인'은 그 승인을 위한 검사시점, 검사시 제당의 수위, 허용 누수량 및 그 측정방법 등을 협의하여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급조건은 하도급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으로 볼 수 없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물고 답하고(물 & 답)

- 물** 지속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어 월 1회 마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월 1회로 정한 마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고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물품의 검사결과를 해 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 답** 하도급대금 지급시에는 월 1회로 정한 마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지만, 검사결과와 통보는 실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주어야 함
- 물** 건설위탁관계에서 공사를 목적으로 현장에 재료를 반입한 뒤, 인수증 및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목적물 수령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 답** 목적물의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간주함.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목적으로 현장에 재료를 반입한 후 원사업자로부터 인수증 및 확인서를 받지 않았고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기 사실이 입증되면 하도급법에 의한 목적물의 수령으로 간주됨
- 물** 수급사업자가 기성을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기성검사 증빙서류를 접수한 이후에 검사를 하여도 무방한지?
- 답**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물** 원사업자가 완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부품 중 불량품을 발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량부품의 수리 또는 양품과 교환을 요구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 답**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부품에 대한 검사결과를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목적물의 수량이 많아 샘플링 검사를 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등)에는 상기기간을

물고 답하고(물 & 답)

초과하더라도 불량부품의 수리 또는 교환요구가 가능하나, 지나치게 장기간이 경과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수리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함

문 VMI(Vendor Managed Inventory) 운영계약서의 내용이 하도급법 위반여부? (VMI운영계약은 사용량에 따른 지불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임)

답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의 목적물 수령 의무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경우 물품을 제조하여 제때 납품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제조경비, 보관비용 등 관련 제비용을 적기에 회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임. 따라서 하도급법상 목적물의 수령일은 원칙적으로 VMI 창고에 물품이 실제 입고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사업자는 이를 기준으로 검사, 대금지급 등 하도급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문 포장된 상태로 위탁상품을 인수하기 때문에 인수시에 하자를 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쌍방 합의하에 납품 후 발견되는 불량을 1개월 단위로 취합하여 서면통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와 납품 이후에 발생하는 불량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의 평균 불량율 범위 내에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답 목적물 인수시 검사가 불가능하다면 일단 합격한 것으로 보되, 판매단계에서 발견되는 불량품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해결방법을 정해 약정할 수 있을 것임. 하자보증금 예치에 대한 약정 자체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다른 담보수단이 있는데도 보증금의 예치를 요구하거나, 정상적인 상관행을 초과하여 납품대금에서 유보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음

문 납품받은 부품 중 불량품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보상 요구가 가능한지?

답 보상비용 청구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이나,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 위반 소지가 있음. 또한 불량부품으로 인한 완제품의 결함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 직·간접비용에 대한 보상범위 및 방법은 쌍방 간 서면합의로 정하면 될 것이나, 보상비용 전액을 확실히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음

문 건축물 준공 후 발주처와의 계약금액 미정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서면으로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

답 건설 위탁의 경우 건축물이 준공되었을 때 수급사업자의 검사요청을 받는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임

㉑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지급비율 등 (하도급법 제13조)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1항)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으로 간주(법 제13조 제2항)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3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면 안 됨(법 제13조 제4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면 안 됨(법 제13조 제5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 받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6항)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7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3조 제8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함(법 제13조 제10항)

■ 적용기준

■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함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중 먼저 도래한 기간이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동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 하도급대금 지급시기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한을 유예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한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한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 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수령일 기준

- 제조·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이며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
-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
-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

■ 현금 결제비율 유지 적용기준

- 현금비율의 산정방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수령액/도급대금수령액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 : 현금지급액/하도급대금지급액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당해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현금으로 인정되는 결제수단 : 현금, 수표

■ 어음만기일 유지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안 됨
- ☞ 타인 발행의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의 어음을 교부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간주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현금결제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법 제13조 제4항, 제5항)의 적용대상

- 1999년 4월 1일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적용

[하도급계약 체결시점 판단기준]

- ① 제조위탁의 경우 기본계약이 아니라 발주서 등에 의한 개별계약 체결시점
- ② 건설위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계약이 아니라 당초 하도급계약 체결시점
- 재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재하도급 관계에서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받은 수급사업자(재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는 2차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결제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기준의 적용을 받음
- 선금금 지급에서도 현금결제비율 및 어음만기일 유지기준의 적용을 받음

■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계산방법

- 어음할인율은 시중은행의 상업어음할인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급법 제13조 제9항)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 고시 어음할인율 : 연 7.5% (2015. 10. 23~)

$$\text{어음할인료} = \text{어음지급액수} \times \text{할인율} \times \text{지연일수}/365\text{일}$$

- 지연이자는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 「선금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 고시 지연이율 : 연 15.5% (2015. 7. 1~)

$$\text{지연이자} = \text{지연지급 하도급대금} \times \text{지연이율} \times \text{지연일수}/365\text{일}$$

☞ 유의사항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목적물의 수령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령일에 대한 입증자료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 목적물의 납품과 동시에 대금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하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어음할인료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결제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월 1·2회 납품받고도 마감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그 달 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잡는 경우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주의사항

“하도급대금 어음 지급시,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 경과시 이자가 발생합니다.”

“00과장입니다... 금번 수령한 00물품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 물품 받고나서 60일이 경과했으니까,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면요? 허허, 거래 한 두번 하실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이리십니까?”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시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법 제13조에 위반됩니다.

심결례

사례 ① (주)태아건설은 2009년 9월 25일에 ‘경인 아라뱃길 제6공구 수역굴착공사’에 필요한 40mm 규격의 쇠석골재 및 혼합골재를 (주)경인씨엔엘에게 제조 위탁한 후 2010년 6월 8일까지 쇠석골재 82,704㎡, 혼합골재 54,024㎡를 납품 받았음에도 이 중 혼합골재의 하도급대금 7억 1,300 만원을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음

심결요지 혼합골재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1,500만원

사례 ② (주)삼호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방산·하중 간 도로 개설공사 중 토공사, 배수 구조물공사 및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주)한국토건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2003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인수한 목적물 관련 하도급대금 252억6,034만원 중, 2억6,174만원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연이자 4,738만원을 지급하지 않음. 그리고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일부를 현금성 결제수단이 아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함

심결요지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며,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일부를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한 것은 제4항에 위반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심결례

사례 ③ 포스코ICT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한국 씨씨에스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브라질 CSP 제철소 관련 전자기기, 배전반 등을 제조 위탁하고, 2014년 6월 25일부터 2015년 11월 14일까지 목적물을 수령 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53,918천원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또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휴먼에어텍 등 15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건설·용역 위탁을 한 후, 2013년 9월 30일부터 2015년 5월 28일까지 목적물을 수령 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1,907,669천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8,61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심결요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포스코ICT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됨.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도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물고 답하고(물 & 답)

물 하도급법상 기간계산 원칙, 기산일 결정,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 계산기준은?

답 「기간계산 원칙」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시작일을 기간에서 산입하지 않고 해당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에 만료
「기산일의 결정」 원사업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1일째 되는 날임
「계산 예시」 목적물 인수일이 2010년 3월 14일인 경우, 시작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2010년 3월 15일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2010년 5월 13일, 기산일은 2010년 5월 14일이며, 이 날부터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가 적용됨

물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기산일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의 판단기준은?

답 「제조위탁」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을 받은 날.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마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
「건설위탁」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검사가 완료된 날
「용역위탁」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물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인수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가?

답 하도급거래 당사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이므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함. 즉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의 대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에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일수 30일만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물고 답하고(물 & 답)

답 당사자 간 약정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더라도, 실제 지급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경우에는 하도급상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단, 당사자 간의 약정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하도급법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인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임

문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금융기관에서 할인가능한 어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할인가능 어음'이란 어떤 어음을 의미하며, 할인가능 어음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 「할인가능 어음」 다음의 금융기관에 의해 어음할인 적격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

- ① 은행법 및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 ②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 ③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생명보험회사
- ④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신용금고
- 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
- ⑥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 ⑦ 상법에 의해 설립된 팩토링업무 취급기관

➔ 할인가능 어음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자 : 원사업자

문 Plant 제어 컴퓨터 시스템을 납품, 설치완료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 중 대금 지급조건이 선금금 20%, 기성금 70%, 준공 완료 후 10%로 되어 있음을 들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종합준공이 안 되었음)로 시운전이 불가능함에도 15%의 공사대금을 6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 보호책은?

답 이 경우 준공의 성격이 단순히 납품, 시공으로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양사가 계약을 통해 여타 공정의 공기지연도 예상하면서 모든 공정이 완료된 후 시운전이 완료되어야 준공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면 시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금을 유보하고 있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당초 계약에서 정한 준공금 10%를 초과한 15%를 유보하고 있다면 그 초과분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음

문 해외 Project를 Turn - key 수주할 경우 물품납품시 대부분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5~15%를 유보하고 Project 종합준공 후 유보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도급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경우 원사업자가 국내업체(하도급법 적용 대상)에게 상기의 대금지급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약체결시 하도급법 위반 여부?

답 발주자가 일정 비율의 공사대금을 Project 종합준공 이후로 유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를 전가하여 일부 하도급대금 지급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 다만, 목적물의 성능을 종합 준공 이후라야 알 수 있거나 시운전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정당한 이유로 검사에 장기간이 필요하여 당해 업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을 유보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문 현금성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여부?

답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바,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였더라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임

물고 답하고(물 & 답)

문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의 부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답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분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책임을 부담하나, 지분을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로 연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 다만, 하도급계약이 단독명의로 체결된 경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명날인한 공동도급사만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의무를 부담

문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의 예외조항으로 '대등한 지위에서의 약정'과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이 인정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답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라 함은 회사의 외형규모인 자본금, 종업원수,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객관적으로 상호 대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업종의 특성에 따른 시장점유정도, 생산능력 및 기술수준, 제품 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으며, '당해업종의 특수성'이란 당시의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당해업종의 상관행 및 경제현상의 비정상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금지급 기일을 지킬 수 없을 경우라 하겠음. 상기 예외 규정의 적용은 하도급법의 입법취지로 볼 때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함

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청구서에 근거하여 지급시, 수급사업자로부터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아 대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하도급법상 지급지연인지?

답 목적물 수령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은 원사업자의 의무로서 수급사업자가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목적물 수령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임

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의무(※ '21.12.9 개정안 국회의결, 공포 1년 후 시행)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 공시의무 부과 (하도급법 제13조의3)

•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에 대하여 공시하여야 함

* ① 지급수단, ② 지급금액, ③ 지급기간, ④ 원사업자 자신의 회사 내에 설치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기구'에 관한 사항

※ 포스코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므로 유의

사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의무

■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법 제13조의2)

•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 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제13조의2 제1항)

• 원사업자는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제13조의2 제2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 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 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부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 제13조의2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 계약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법 제13조의 2 제3항)

-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봄 (법 제13조의 2 제4항)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다음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함 (법 제13조의2 제5항)
 -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 ②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③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④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 보증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법 제13조의2 제 6항)
 - ① 원사업자가 당좌거래 또는 금융거래 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②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③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등이 취소·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그 밖에 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년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 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음 (법 제13조의2 제7항)
-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않을 수 있음 (법 제13조의2 제9항)
-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음 (법 제13조의2 제10항)

■ 적용기준

- 종전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승계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계 당시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정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함. 단, 추가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되지 않음
- 하도급대금 보증금액 범위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 - 선금금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text{계약금액} - \text{선금금}) / \text{공사기간(월수)}] \times 4$$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고,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text{계약금액} - \text{선금금}) / \text{공사기간(월수)}] \times \text{기성금 지급주기(월수)} \times 2$$

■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하도급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원사업자가 자신은 보증서를 교부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는 계약이행보증으로 현금을 예치토록 하거나 기성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의무를 면제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의 보증 의무 면제를 악용하여 하도급공사를 세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하도급법상 탈법행위)
- 원사업자 자체발주공사에서 당사자들 간 합의로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경우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해 조건부로 합의한 상태(㉔ 원사업자 부도시)에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는 그 증가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한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의 하도급대금에 대해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㉔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의무**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법 제15조)**

-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법 제15조 제1항)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세 등 환급상당액의 지급은 수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법 제15조 제2항)
-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법 제15조 제3항)

■ **적용 기준**

-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과 관련하여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사업자에게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함
- 환급받은 날로부터 15일 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함(지연이율 : 연 15.5%)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관세 등 환급액의 지연 지급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예시)
 - 수급사업자가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인도한 경우
 -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 등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상의 기재내용이 실거래와 상이하여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관세 환급을 받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로부터 관세 등 환급에 필요한 환급위임장의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지체없이 발급해 준 경우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주의사항

“환급받은 관세액은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00과장입니다. 이번 00관련해서 환급받은 금액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제가 다음 주부터 여름휴가거든요. 여름휴가 다녀와서 입금해 드리도록 하죠. 며칠 차인데, 뭐 큰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 관세 등을 환급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해야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 하도급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 지급」에 위반됩니다.

물고 답하고(물 & 답)

물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재는?

답 하도급법상 관세 환급금을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리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물 관세 환급의 기초자료인 기초원자재납세증명서 또는 분할증명서를 협력업체의 지연접수로 인해 해당 자재 또는 제품의 매출발생 및 관세 환급처리 종료로 관세 환급이 불가한 경우, 미지급사유가 되는지?

답 원사업자가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세 환급에 필요한 기납증 등을 지연하여 인도한 경우, 그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원사업자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는 경우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 비용이 들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음(법 제16조 제1항)
-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16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법 제16조 제3항)
- 원사업자가 제1항의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 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 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봄(법 제16조 제4항)

■ 적용기준

■ 적용요건

- 제조·건설위탁한 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했어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받아야 함
-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이어야 함

■ 조정기준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금을 조정 받은 원사업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 준 경우 적법함
-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는데 있어서 물가변동 조정기준 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조정기일**

- 발주자로부터 조정(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함

■ **조정금액 지급시기**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함.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15.5%)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함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주의사항

“설계변경 등 조정 사유 발생 시, 하도급대금을 꼭 조정해야 합니다.”

“00그룹 00과장입니다. 이번에 발주사로부터 스펙이 약간 변경되서 추가 금액을 약간 더 받았습시다만, 액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롭게 하도급대금을 또 조정해야 될까 싶습니다.”

↳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지급받았을 때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 하도급법 제16 조에 위반됩니다.

심결례

사례 ① 벽산건설은 수급사업자인 대남토건주식회사에게 ‘진동-마산 국도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고,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내역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내역				
1차 물가변동	2008.12.1.	2,105,124	조정	2008.12.31.	2009.11.5	308	730,858
2,3차 물가변동	2009.12.11.	5,860,379	조정	2010.1.10.	2011.7.13	548	1,118,796
부산리임도 신설에 따른 설계변경	2008.12.1	70,480	조정	2008.12.31	2009.11.5	308	39,743
진동우회도로 신설에 따른 설계변경	2010.12.16	54,305	조정	2011.1.15	2011.7.13	178	31,665
순성토 운반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010.12.16	-397,466	조정	2011.1.15	2011.7.13	178	-312,985

심결요지 벽산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았음에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178~548일을 지나 대남토건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 조정하였으므로 이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

제재내용 【시정명령】

물고 답하고(물 & 답)

문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방법 및 시기는?

답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원도급계약 시점과 하도급계약 시점이 다른 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물가변동을 적용해 주는 기준시점이 하도급계약 시점보다 앞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가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없음. 또한 하도급계약 시점으로부터 물가변동 적용시점까지의 기간이 원도급계약에서 물가변동이 적용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시 그 만큼을 공제할 수 있음

문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신발장, 씽크대 등을 제조위탁시, 위 시설물을 제작납품만 하고 원사업자가 설치한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가 있는지?

답 하도급법상 물가변동분 반영 의무는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해당 위탁물을 제조하는데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면 발주자로부터 적용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함

문 하도급계약 체결시 계약예정금액이 당해연도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금액임을 수급사업자가 인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기한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조정해 주어야 하는지?

답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단,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계약하면서 당해 연도의 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하여 입증되고,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해주지 않아도 됨

문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단가를 조정함에 있어 기존의 공종에 대한 추가 시공 부분과 신규 공종 추가의 경우 조정기준은?

답 「기존 하도급단가가 있는 공종에 대한 추가 시공부분」 우선 당초의 하도급단가를 유사단가로 보고 도급단가의 등락률(설계변경에 따른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

「기존 하도급계약 내역서에 없는 신규 공종부분」 발주처로부터 적용받은 단가를 기초로 하여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

문 전문건설업체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후 시공 중인 아래 공사계약의 위법성 여부는?

- 답** ① 하도급내역서에 공과잡비가 10% 적용되어 있으나 특기사항으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 시 5%만 적용한다'는 내용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공과잡비를 받았다면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5% 제한은 위법임
- ② '견적 내용 중 도급이 없는 공종은 차후 설계변경에 반영되더라도 기 적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 동 특약사항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추가공사비를 지급해야 함
- ③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을 규정하고 특기사항으로 당해 년도에는 물가변동 대금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전에 계약되었다면, 동 조정 기준시점 이전의 하도급계약 해당 분에 대해서는 대금조정을 해주어야 함

문 원사업자의 지시로 투입비와 간접비 5.8%를 지급받기로 하고 추가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을 증액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의2)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16조의2 제1항)
-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적용 안 됨(법 제16조의2 제2항)
-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 다만, 조합이 해당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16조의2 제3항)
- 조합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기 전이나 신청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16조의2 제4항)
-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함(법 제16조의2 제5항)
-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보며, 제3항 본문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이 제4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봄(법 제16조의2 제6항)
-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음(법 제16조의2 제7항)

-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6조의2 제8항)
-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 절차·방법,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의 신청 및 중앙회의 협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16조의2 제9항)
- 원사업자는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6조의2 제10항)
-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경우 조합 또는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는 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음
 -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적용 기준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가능
-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도 조정신청 가능

-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지 않았더라도 조정신청 가능
 -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조정의무가 발생함
- 공사 저가수주에 따른 단순 적자보전 사항은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
 - ☞ 따라서 공급원가 변동에 아닌 다른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음
- 조합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변동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기준일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함)로 함
 -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 10%
 -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는 경우에는 7%로 함
 -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 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결을 거쳐야 하며, 법정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함)에 임하지 않은 경우
- 단가 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재고물량, 잔여 납품물량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시점을 지연하여 제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성실히 조정 협의에 임하였다면 그 결과 수급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님

■ 분쟁조정협의회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합의지연 시 영업활동이 심각히 곤란하게 되는 등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물고 답하고(물 & 답)

물 공급원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발주처로부터 원도급금액에 대한 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신청에 꼭 응해야만 하는 것인지?

답 철근, 시멘트 등 건설 자재 가격 및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는 것이며,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위법임.

다만, 하도급대금 조정 요청 사유가 공급원가의 변동이 아닌 저가수주 등으로 인한 적자보전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협의 신청 내용 검토 결과 협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협의를 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2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하도급법 제4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할 수 없음(법 제4조 제1항)

▶ 하도급 3배 배상제에 해당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공정위 처분에 더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 책임 (⇒ 법 제35조 제2항)

☞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이득,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예시(하도급법 제4조 제2항)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②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④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⑤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⑥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¹⁾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²⁾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①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①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로 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전력비, 수도광열비 등)과 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정경비(산재보험료, 공용보험료 등)는 제외

- ⑦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⑧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적용기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및 객관적 요건을 갖춰야 함. 두 요건은 상호보완적으로 부당성이 큰 경우에는 가격기준을 낮추어서, 부당성이 적은 경우에는 가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게 됨
- 주관적 요건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결정
 - 원사업자의 강요에 의한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 원사업자가 기망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판단을 방해하는 경우 등
- 객관적 요건 :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 ‘통상 지급되는 대가’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

- ‘낮은 가격’이란 시장 평균가격과의 괴리정도, 원재료 등의 가격동향, 당해 하도급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취하게 되는 이익의 정도, 단가결정 방법의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자재(원부자재 포함)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 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실행예산 범위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건설 등을 위탁한 후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경쟁입찰 또는 부대입찰의 경우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 금액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서상 직접공사비 수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주의사항

“원가절감,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협력업체에게 단가 인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 수의계약시에는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의 합 미만으로, 경쟁입찰의 경우 업체의 투찰 이후 다시 대금인하 협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심결례

사례 ① SK건설은 입찰 전 현장설명회에서 ‘최저가 낙찰’이 기준이라고 제시하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내부 원가절감 기준 예가’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최저가 2개업체를 상대로 재입찰을 실시하였음

심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현설에서 낙찰기준을 ‘최저가’로 공지하였고, 낙찰 혹은 유찰선언 없이 다시 입찰을 실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인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SK건설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 ②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작업 현장에서 수정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생산 부서에서 실제 투입시수(실제 투입 노동시간)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 시수를 산정하여 검토 부서·예산 부서의 검토를 요청함.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예산부서는 합리적·객관적인 근거 없이 생산 부서가 요청한 수정 추가 시수를 삭감했고, 이 과정에서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대금을 받을 사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음.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의 시수 삭감 과정에서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 수준보다도 낮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심결요지 공사가 이미 시작되어 대금 결정 시 불리한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153억원

※ 과징금은 사전 서면미발급, 부당위탁취소도 포함된 금액

사례 ③ 포철산기는 2008년 1월 24일부터 같은해 10월 22일까지 11건의 공사를 6개의 수급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금액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심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도급내역 상의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되므로 직접공사비의 합보다 낮은 금액인 하도급계약을 위법하다고 판단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 ④ STX조선해양은 통상적으로 선박블록 임가공에 대해 M/H 단가를 부과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수급사업자에게 이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내부기준에 따름. 해당 계약은 이러한 M/H가 기재되지 않고 총액만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선경기 불황, 수주부진 등의 이유로 일률적으로 선행타재는 25%, 타재는 30%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여 결정

심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계약에서 단가를 인하함에 있어 그 하락 요인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5천100만원

심결례

사례 ⑤ 포스코ICT는 2014년 7월 11일부터 2016년 6월 17일까지 '광양 5고로 DCS H/W 1식' 등 11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을 전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각 계약 건의 예산에 해당하는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소싱그룹의 평균 낙찰율, 예비투찰자들의 견적가격, 최근 구입가 등 여러 가격을 조사하여 그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조사금액을 산정한 후 조사금액과 같거나 조사금액보다 0.9~4.4% 더 낮은 금액으로 기준가격을 결정함. 또한, 전자상거래이용약관 및 입찰유의서 등을 통해 최초 설정한 기준가격이 재입찰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도 공지하지 않음. 포스코ICT는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 입찰가가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 유찰시키고, 재입찰 과정에서 기준가격을 상향 또는 하향조정 후, 재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몇 차례의 유찰에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입찰가가 나오지 않으면 최종 입찰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초 입찰가보다 5,000천원 ~416,250천원 낮게 계약금액을 결정함

심결요지 포스코ICT는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자신이 책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입찰가를 제출하는 참여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시키고, 기준가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는 등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낙찰자 등을 선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입찰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함

제재내용 【시정명령】【과 징 금】

사례 ⑥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경 선체도장 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난해보다 일률적인 비율(3.22%, 4.80%)로 인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 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음

심결요지 선체 도장 작업이 이루어지는 도크 또는 선종별로 작업의 난이도가 각각 다르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고, 생산부서는 비물량성 공사일 때, 능률 등을 반영하여 실제 투입 공수보다 낮게 수정 추가 공수를 산정했음. 이는 원인 부서·예산부서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합리적·객관적인 근거없이 추가로 삭감된 것임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36억원 및 법인 고발

물고 답하고(물 & 답)

문 정부발주 공사시 저가 하도급 심사의 대상이 되면 하도급법상 문제가 되는가?

답 하도급법의 규정은 수의계약 시에는 직접공사비 이하, 경쟁입찰 시에는 최저가 투찰금액에 대한 추가 인하협상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도급에 대비하여 하도급대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즉,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하도급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서 ‘통상적 지급되는 대가’ 이하인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주의하여야 함

문 원가절감 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당초보다 낮게 계약한 경우에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되는가?

답 합리적인 원가절감요인을 제시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 할당된 원가절감 목표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여질 수 있음. 통상 장기적인 제조 납품의 경우 거래초년도보다 이후에 원가절감 사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문 경쟁입찰 시 하도급대금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답 최저가 금액이 실행예산보다 초과함을 이유로 네고를 통해 최저가 금액보다 낮게 체결하면 법 위반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찰 후 재입찰을 실시함이 타당함

문 물량을 5배 이상 많이 공급하는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를 기준으로 추가 공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도 무관한지 여부?

답 하도급단가는 그 물량의 대소에 따라 단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물량이 5배 되는 타사업자의 단가기준으로 계약변경 강요시 위반소지

문 자재발주를 위한 사양설명 시 100톤이 필요하나, 공정에 따라 감소나 증가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실제 80톤만 필요하여 입고 후 대금 지급할 경우, 업체에서는 100톤을 생산하였으니 사주어야 한다고 했을 때 공정거래법상 어떤문제가 있는지?

답 ① 원칙적으로 수량과 단가를 사전에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② 하도급거래일 경우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어 법 적용가능. 즉, 자재의 생산시기, 납품주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공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탄력적으로 납품이 가능하다면, 증감의 폭에 따라 단가는 달리 적용하는 슬라이딩 단가결정 시스템. 즉, 납품량에 따라 단가를 달리 결정하는 것이 분쟁가능성을 최소화 가능(예 100~120톤은 단가 1,000원, 99~80톤은 1,100원) ③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이 아닌 단순구매인 경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의한 불이익제공행위 적용도 적용 검토 가능

문 하도급입찰 견적조건 및 현장설명 시 사전에 도면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계약 견적을 위한 내역을 전혀 확정하지 않고 이를 감안하여 입찰에 응하고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여부?

답 ① 원사업자는 위탁내용의 핵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 시 최소한의 내역서나 도면 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하도급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견적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상관행임 ② 따라서 현장설명 시 불확정한 상황을 미리 설정하고 그 비용을 현장설명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케 하면, 이는 수량과 금액을 사전에 전혀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도급위탁으로 부당소지 ③ 다만, 핵심, 중요한 사항이 아닌 도면이나 내역서상에 반영하기 어려운 미미한 위탁사항을 현장설명 시 견적서에 이를 반영하도록 충분히 설명하였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입찰에 임하였거나, 도면이나 내역서상 문제는 없으나 수급 사업자가 단가산출 착오라면 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임

㉠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감액금지(하도급법 제11조)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음(법 제11조 제1항)
- 당초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적법함

☞ ‘감액의 정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부당감액의 경우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하도급대금을 감액시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함(법 제1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7조의2)
- 공정위 하도급대금 감액 서면 표준서식 보급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법령 → 하도급법 →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

■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감액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1조 제2항)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해 합의한 경우, 당해 합의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내용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지급기일 전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계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 하도급계약 후 추가 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원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 지속적인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경우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감액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 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목적물을 저가로 수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달리 감액하는 경우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수출용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원사업자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이 발주서대로 제조·시공되지 않았거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하도급계약상의 공사내역과 실제 시공한 공사내역에 차이가 있어 실제 시공 내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지급한 자재대, 가불금, 장비임차료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최종 정산에 합의하여 감액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수출용 물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 결제통화를 외화표시로 할 것을 합의하고 환율변화에 따른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심결례

사례 ① 삼양건설산업은 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약정서’라는 것을 함께 징구하였음. 안전약정서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시에 삼양건설 산업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일부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이를 보전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해당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위 약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대금 지급

심결요지 건설공사에서 공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비용도 원사업자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며 공제한 하도급 대금은 부당 감액에 해당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 ② 삼성전자는 2003년 4월 휴대폰 단종,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6개의 수급사업자로부터 기납품 받은 납품물량을 폐기처리하였음. 그 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중 폐기처리된 물량에 대한 대금을 공제하고 지급

심결요지 휴대폰 단종, 설계변경 등의 사유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폐기처리된 물량에 대한 대금을 공제한 행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로 판단

제재내용 【과징금】

심결례

사례 ③ 평화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고무호스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유상사금으로 공급하고 수급사업자는 그 원자재를 가공하여 평화산업에게 납품하며, 평화산업은 매월말 원자재 공급대금을 공제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음. 2009년 1월부터 평화산업과 수급사업자 간에 원자재 공급수량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였고 평화산업이 일방적으로 공제금액을 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

심결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원자재의 공급과 원자재를 사용하여 가공되는 과정을 볼때 평화산업의 수량 결정에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평화산업이 주장하는 수급사업자의 자재반출 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제금액을 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 ④ 동호건설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인수한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대금의 10%인 1천만원을 다시 돌려 받음

심결요지 동호건설산업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에서 100% 현금지급을 대금지급방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면서 현금지급을 이유로 대금 10%를 돌려받았으므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 ⑤ (주)포스코켄텍은 2015년 1월 9일 자신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4개사에게 성과 평가를 통해 최하위 업체로 평가된 1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중 2,244만 원을 환수함. 또한, 자신이 제조하는 내화물의 성형·가공·포장 등을 위탁한 2개 수급 사업자와 직전 연도보다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 체결일 이전에 위탁한 부분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 금 9,250만원을 환수함

심결요지 원사업자가 성과 평가를 통해 페널티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을 일부 환수하는 행위 및 단가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도 소급하여 단가를 인정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의 감액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1억 3,000만원

물고 답하고(물 & 답)

문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게 도급공사를 수주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가능한가?

답 당초 예상보다 저가의 수주를 하였다 고 하여 이것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감액에 해당됨. 원가절감, 협찬금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에서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

문 물량이 증가하였는데 당초 하도급계약에서 대금 변동은 없는 것으로 특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답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당초 계약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단가를 적용하여 대금을 증액시켜주는 것이 타당함

문 당초 입찰시 교부하였던 사양 조건이 변경되어 하도급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변경계약 체결로 가능한 것이 아닌지?

답 계약의 주요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작업 변경 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임. 또한 하도급계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대비 감액이 될때는 사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도 발급해 주어야 함

문 계약 중 설계변경으로 감액되는 경우와 당초 물량 정산을 하기로 하고 정산시 감액하는 경우의 각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답 도급계약이 먼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6조에 의거하여 15일 이내 변경 내역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 도급 계약 변경 없이 물량 감소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감액시 서면발급 의무가 발생하여 정산협의 전 감액되는 물량과 감액방법,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

문 축로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는 계약서상 물량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실제 축로물량과는 차이가 있음), 당사가 하도급계약을 근거로 수급사업자에게는 실제 축로한 물량으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였을 경우 부당감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①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에 따라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라면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의거 하도급사업자에게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함 ② 그러나, 물량증가, 단가증액 등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성격이 아닌 하도급 계약 자체를 당초 사후정산 물량으로 하기로 약정 하였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하는 것 자체는 위 하도급법 제16조와 무관할 것이며,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사항도 아님

문 환율, 소재 등 가격변경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고 이후 정산하여 단가 소급하는 것이 부당감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원칙적으로 금지됨. 단, 법 위반여부는 단가감액과 증액이 동등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객관적 기준 여부,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검토 가능함

문 발주 후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하도급대금에서 하락분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는지?

답 수급사업자의 다른 귀책 사유 없이 원자재가격 하락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감액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문 환차손을 이유로 대금 결제수단(원화 및 달러화)을 임의로 변경하여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것에 대한 법 적용은?

답 계약기간 중 이미 납품완료된 물량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제수단 임의변경은 부당함. 단,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신규 납품분부터 결제수단을 원화 또는 달러화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㉔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하도급법 제8조)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안 됨(법 제8조 제1항)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납품이 있을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검사완료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즉시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함(법 제8조 제2항)
- ‘수령’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함. 다만 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때를 수령한 때로 간주(법 제8조 제3항)

■ 적용기준

- 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된 목적물의 제조 및 건설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기간내 제조 및 건설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위탁을 취소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보상을 한 경우

㉕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무리한 납기를 설정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차후에 납기지연을 이유로 한 수령거부나 지체상금 공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바로 이의를 제기하여 서류상으로 수정토록 해야 하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시키거나 또는 발주서 등을 즉시 반납하여 책임을 면해야 함
-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물품의 내용이 발주서 위탁내용과 상이하다 하더라도 계약서의 위탁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검사기준이 불명확하여 납품받은 물품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가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령거부 할 수 없음

심결례

사례 ①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42개 사외 협력사에 제조 위탁한 선박 부품 6,161건을 임의로 취소 및 변경했음

심결요지 삼성중공업은 위탁 변경 시스템(이하 PCR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게 위탁취소 및 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의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음. 또한, PCR 시스템에는 위탁 취소 및 변경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협력사들은 이유를 모른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36억원 및 법인 고발

사례 ②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했음. 대우조선해양은 설계 변경·선주 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 없거나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해당 품목의 발주를 취소·변경했음. 대우조선해양은 위탁 변경 시스템(이하 조달 협업 시스템)을 통해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위탁 취소·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음.

(* 조달 협업시스템에는 위탁 취소·변경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외 하도급업체들은 이유를 모른 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

심결요지 협의 없이 위탁 취소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당위탁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153억원
※ 과징금은 사전 서면미발급, 부당위탁취소도 포함된 금액

물고 답하고(물 & 답)

물 건설공사 및 일반자재공급을 하는 중소기업가 자재납품과 관련하여 당사의 기업운리를 위반하여 자재납품 계약을 해지하였고 또한 현재 계약기간 중인 하도급 건설공사 계약을 해약하였다면 하도급법상 부당 위탁취소 및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 답** ①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
- 여기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란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사실상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임
- ② 그러나 기업운리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서명하였다하더라도 계약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당해 기업운리를 위반한 자재납품에 한하여 계약해지는 정당할 것이나, 전혀 무관한 건설분야까지 해지하는 것은 기업운리 규정을 너무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함
- ③ 단, 계약해지 시에도 기납품분에 대하여는 대금정산이 수반되어야 함

물 하도급공사를 타절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답 계약내용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하도급 계약을 타절하는 것은 법 위반 가능. 단, 수급사업자와 확정된 기성분에 대하여 대금 지급하고 미시공분에 대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후 정산 절차를 정하여 타절하는 것은 가능함

물 공법 변경 시 발주취소 및 계약해지 가능 여부는?

답 공법 변경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계약을 일방 취소한다면 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음

㉠ 부당 반품의 금지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부당 반품의 금지(하도급법 제10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시켜서는 아니 됨.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치 아니함(법 제10조 제1항)

■ 적용 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반품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0조 제2항)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불합격을 이유로 이를 반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납품받은 상품에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하자 등이 있어 목적물 수령 또는 인수한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인수한 목적물이 주문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 인수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인수 또는 수령한 목적물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물품을 반품받아 자기가 당해 물품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여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주의사항

“무검사 합격 후 반품처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00과장입니다. 이번에 납품된 00제품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지난 번 제품 테스트 때는 시간도 없고 해서, 무검사로 진행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제품 이상은 이상이니까 남은 재고 전량을 반품해야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하도급법 제10조 「부당 반품의 금지」에 따라 제품을 무검사 수령한 것은 합격처리한 것으로 간주되며, 원칙적으로 반품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㉓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3)**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음 (법 제12조의3 제1항)
-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 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함 (법 제12조의3 제2항)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 (법 제12조의3 제3항)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 제12조의3 제4항)
 -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기술유용의 경우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별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적용기준**

■ **'기술자료'(법 제2조 제15항)**

- 비밀로 관리되는 ①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②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의미

☞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 **기술자료 제공 요구**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함. 다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위법하지 아니함 (이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사항을 포함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고,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급사업자와 법정 사항을 포함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됨

■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서면 기재 사항**

- ①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 ②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③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④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⑤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⑥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공정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 표준서식 보급

■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
-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
- 기술자료 미제공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로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

■ 정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과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

- ①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②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③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④ 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 ⑤ 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 ⑥ 비밀유지의무 또는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배상
- ⑦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 ⑧ 공정위 표준 비밀유지계약서 서식 보급

■ 기술자료 유용(부당한 기술자료의 사용·제공)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적용 분야, 지역, 기간 등)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
- 원사업자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으로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됨

■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

〈 거래이전 단계 〉

-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나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 등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 거래 단계 〉

-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 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거래이후 단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 (법 제35조 제2항)
- ☞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이득,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심결례

사례 ① 현대중공업은 20여 년간 핵심 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온 글로벌 강소 하도급 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사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해당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게 제공하여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음

심결요지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였고, 요구과정에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하도급법에 위반됨

제재내용 【과 징 금】 9억 7,000만원

사례 ② 볼보그룹코리아(주)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음

심결요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데, 볼보그룹코리아(주)는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임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 징 금】 2,000만원

물고 답하고(물 & 답)

물 원사업자가 제조 방법 및 사양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자료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답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즉, 원사업자가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여 기술자료가 작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수급사업자의 기술 또는 노하우가 반영되었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볼 수 있음

㉞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법 제5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적용기준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위탁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수리시공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 토록 요구한 경우
- 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요구가 합리적이고 구속력 있는 요구이어야 함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수급사업자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계약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제조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원사업자가 고가의 부품 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매처의 지정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또는 시공의뢰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위탁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을 위하여 특정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주의사항

“계열회사 등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OO과장입니다. OO구매 건과 관련해서 기왕이면 당사 계열회사인 OO사의 제품을 사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구요? 물론 그렇지 만, 뭐 꼭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 목적물에 대한 품질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 역무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토록 강요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물고 답하고(물 & 답)

물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건설위탁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자재라는 이유로 고가의 자재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할 경우 물품구매 강제행위에 해당하는지?

답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발주자의 요구) 물품구매 강제행위로는 볼 수 없으나, 계약 당시 고가의 자재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도 낮게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고가의 자재사용에 따른 차액만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할 것임

물 수급사업자 B는 원사업자 A로부터 공사를 1억원에 수주받으면서 하도급 공사에 필요한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A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받았음. B는 물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1회 기성금으로 2천만원을 청구하였고 A도 승인 하였는 바, A가 승인한 2천만원에서 A가 제공한 물품대금 전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B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A의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인지?

답 A가 B에게 물품을 구매하게 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A의 행위는 하도급법상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규정 위반임. 또한 A가 기성금 지급시 물품대금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한 것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 위반임

물 전기기계 제조업자인 원사업자가 전기제품의 부품의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 구매담당자를 통해 자사상품의 판촉에 협력을 요청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답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매담당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의 제조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제품의 구입을 요청하였다는 점에서, 협조요청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물품의 구매강제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및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법 제12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해서는 안 됨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적용기준**

-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당해 하도급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에 사용하거나 전매한 경우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 결제청구 가능
- 수시로 기성이 발생하는 장기계약 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됨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사게 하고, 그 물품대금 등을 목적물을 납품하기도 전에 전액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 지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원사업자가 납품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실제로 투입한 물량보다 더 차감하는 경우 (☞ 1회 기성금 지급시 전액 차감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사용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한 것을 당해 하도급작업 이외의 작업에 사용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물품대금을 조기결제 하는 경우
- 원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급사업자가 전매한 경우 원사업자가 그 물품 대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하고, 납품(기성)이 있을 때 마다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투입한 물량만큼을 납품대금(기성금)에서 차감 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한 원재료나 장비를 훼손하거나 또는 손실을 발생시켜 납품해야 할 목적물의 제조가 불가능하여 조기결제하는 경우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주의사항

“제조에 필요한 자재, 장비를 공급한 후에, 부당하게 조기결제토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00과장입니다. 이번 00발주 건 관련해서, 당사에서 공급한 00장비 있겠습니까? 금번 기성금에서 해당 장비 사용료를 전액 공제 후 잔여분만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12조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심결례

사례 ① 현대삼호중공업(주)는 (유)한국특수산업, (주)WD중공업, (주)태형중공업, 삼강에스피(주)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파이프 피스 도장을 제조위탁함에 있어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외에 추가로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음

심결요지 피심인은 지급보증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하여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였음.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하도급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되는 사항임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 ② 대주건설(주)은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아파트 49세대(주로 1, 2층)를 20개 수급사업자에게 배정·분양하여 자신이 분양하지 못한 아파트 분양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분양을 위한 자금부담은 물론 당초 분양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전매하거나 제3자가 분양받도록 주선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지게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5억 9,600만원

물고 답하고(물 & 답)

물 원사업자 A는 전문업자 B에게 설비공사를 1억원에 위탁하면서 공사에 필요한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고, 사업자 B는 기성실적에 따라 A에게 1회 기성금으로 2천만원을 청구하여 원사업자 A가 물품대금 1천만원(A로부터 구매한 물품 중 이때까지 투입금액은 200만원)을 차감하고 잔액 1천만원을 B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답 원사업자 A가 사업자 B에게 구매토록 한 물품이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이나 발주자가 A의 물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함.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A의 행위는 하도급상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위반이고, A가 제1회 기성금 지급시 물품대금 전액을 공제하고 차액만 B에게 지급한 것은 하도급법상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청구 금지’위반임. 원사업자 A가 정당하게 자기 물품을 사용하도록 했다면 원사업자 A는 제1회 기성금 지급시 실투입된 200만원만 차감한 1천 80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임

물 수급사업자는 제조위탁을 받은 후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을 구매하여 다른 작업에 사용하였는데, 원사업자가 그 부품대금의 조기결제를 요구시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답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 제조를 위해 사용했어야 할 부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다르므로 이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물품 구매대금 등의 조기결제청구 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물 원사업자가 유상 지급한 원재료의 대금결제에 대하여 하도급대금과 상계하지 않고 별도로 일괄결제하는 방법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답 하도급대금과의 상계여부를 불문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시보다 빨리 결제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소지가 있음. 즉 별도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지급한 유상자재 대금을 당해 자재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하도급대금보다 조기에 결제하도록 하면 안됨

④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법 제17조)

- 원사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 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당초 하도급계약에는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부득이 대물변제한 경우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주의사항

“당초 계약과 다르게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

“00과장입니다. 이번 00아파트 창호공사 건 관련해서 말인데요, 하도급대금 일부는 아파트 0세대를 분양하는 걸로 진행하는 게 어떨겠습니까. 분양가가 시세보다 무척 싸게 나온 건이라, 그 쪽에서도 이득일 거라 보는데요.”

심결례

사례 ① 후지카 대원전기(주)는 (주)두발가스엔지니어링 등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1억3천234만9천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물품(석유난로 등)으로 지급함

심결요지 피심인이 (주)두발가스엔지니어링 등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자기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 1억3천234만9천원을 물품으로 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7조 위반

제재내용 【시정명령】

㉞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하도급법 제18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됨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 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 사업자의 경영상 정보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경영상의 정보**

1.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2.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3.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4.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5.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 인사에 간섭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경우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 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 거래의 목적달성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자신이나 특정한 자(회사 또는 자연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생산과정, 투입인력, 재료 배합 등을 실시하는 행위(다만,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3조의3에 근거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체결의 대상이 되는 수급사업자에게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한 범위 안에서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 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요청 내지 권유하는 행위

-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수급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통해 지원하면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2차 또는 그 이하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요청 또는 권유하는 행위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일정한 현금결제비율로 지급하는 행위
- 인건비·복리후생비 지원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행위
- 직업교육·채용박람회 실시 및 채용연계 등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행위
- 상기 이외의 행위로서 효율성 증진·경영여건 개선·소속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주의사항

“수급사업자에게 인사청탁 등의 행위는 반드시 금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포스코 00그룹 00과장입니다. 이번에 00억짜리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귀사가 우리 파트너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어요. 허허,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귀사 재무팀에서 자리가 하나 필요하다면서요? 제 조카 녀석이 이번에 대학 졸업하는데, 어떻게 자리 좀 봐 줄 수 있겠어요?”

↳ 수급사업자에게 인사청탁 등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하도급법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㉔)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수급사업자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협력업체 등록을 해제하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해 가격·품질·공기 등에 있어서 다른 수급사업자에 비해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주기회 제한 또는 거래를 단절하는 경우

■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경우
-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는 경우

포스코스틸리온 임직원 주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업체를 입찰에서 제외시켜는 안 됩니다.”

“팀장님, 이번에 00발주 건 말인데요. 00회사에서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몇 년 전 하도급법 위반으로 당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던 업체인데요. 가격 등 조건은 좋아 보입니다만, 과거 전력도 있고 하니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게...”

↳ 하도급법 위반 신고 등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결례

사례 ① (주)포스코ICT는 2014. 5. 30부터 2014. 10. 16까지 화성이앤티 등 3개 수급사업자와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 관련 ‘브라질 CSP 제강 Panel & Box 구매’ 등 3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능보증 유보금 명목으로 ‘MC/SC/FC 단계별로 각 5%씩 기기대금의 총 15%를 각 단계별 확인서 발급 이후에 지급’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함

심결요지 원발주자인 브라질 CSP 제철소와 발주자인 포스코건설 사이에 설정된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 관련 대금지급조건을 도급인인 포스코ICT가 하도급계약에까지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 및 목적물의 성능보증과는 무관한 SC단계(원발주와 발주자 사이의 지체 상금, 하자책임 등의 정산단계 포함) 및 FC단계(종합준공 이후 제철소에서 양산된 결과물의 품질 점검 포함)의 확인서 발급을 하도급대금 중 일부의 지급과 결부시킨 것이므로 법 제13조가 보장하는 수급사업자의 대금지급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

제재내용 【시정명령】【과징금】

사례 ② 흥화공업(주)는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부분 공사를 삼림건설(주)에게 건설위탁하였으나 삼림건설(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서면 지연교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은 바, 익년도 협력업체 등록심사에서 삼림건설(주)를 협력업체에서 제외

심결요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자기가 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바, 피심인은 협력업체 등록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삼림건설(주)가 공사시공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항목별로 C 또는 D등급으로 판정하였으며, 평가서에 같은 평점을 받은 타 사업자는 협력업체로 인정하면서

심결례

삼립건설(주)만 제외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한 행위는 보복조치로서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제재내용 【시정명령, 고발】

사례 ③ (주)백양은 봉제임가공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에 의한 어음할인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고 일단 한남 인쇄 등 27개 수급사업자에게 미부담한 어음할인료 2억8천400만원을 지급한 후 납품단가의 인하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미 지급한 어음할인료 중 1억8천500만원을 다시 환수함

심결요지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어음할인료 2억8천400만원을 지급한 후, 납품단가의 인하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 중 1억8천500만원을 환수함으로써, 하도급법 제13조 4항에 의한 어음할인료 지급의무를 면탈하려고 하였는 바, 이는 탈법행위로서 하도급법 제20조 위반

제재내용 【시정명령, 고발】

물고 답하고(물 & 답)

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 후 합의서와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는 바, 그 후 감사원 감사결과 영수증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영수확인한 금액보다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적은 것을 확인하여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할 것을 통지하였을 경우, 원사업자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탈법행위인지?

답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 점 및 수급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영수증의 제출을 명한 것이 아니고 원사업자 스스로 제출한 것이라면 허위자료 제출을 통한 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갱신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조업안정과 조업품질의 향상을 위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 ① 원사업자의 사전 양해없이 지배주주의 임의변경 또는 주식양도를 금지하고, 친인척의 경영참여를 배제토록 하거나
- ② 지배주주는 오로지 수급회사만을 경영함으로써 현장밀착 관리가 가능토록 하거나
- ③ 자재의 사도급 판단 및 도급총액제 작업범위 조정 등은 원사업자 방침에 의하도록 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답 ①항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되고, 친인척의 경영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하도급법의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며, ②항은 다소 과도한 경영간섭 또는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문제될 우려가 있으며, ③항도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방법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없이 거래를 거절할 목적으로 실제로 작업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불공정 약관조항 또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될 수 있음

㉠ 부당한 특약의 금지

■ 부당한 특약의 금지(하도급법 제3조의4)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 적용기준

-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조의4 제2항)
 - 원사업자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

■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 유형(부당특약 고시)

1.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가. 수급사업자가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9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아니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다. 수급사업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

2.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소유, 사용 등의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취득 과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상당한 부분을 부담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동일 또는 근접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 다만, 수급사업자만 정보, 자료 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가. 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높이거나,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 나. 수급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규정에 준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

4.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가. 법 제9조의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나. 법 제9조 제2항의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통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약정
- 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5.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도록 하는 약정
- 나.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 조건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
- 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

-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 장비, 시설 등(이하 “자재 등”이라 한다.) 이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자재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마. 계약 해제·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 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등의 인도지연, 수량부족, 성능미달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지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발주자의 의무사항

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하도급법 제14조)

- 발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법 제14조 제1항)
 -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
 -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④ 원사업자가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법 제14조 제2항)
-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14조 제3항)
-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함(법 제14조 제4항)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법 제14조 제5항)
-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제14조 제6항)
- 재하도급의 경우 발주자는 원사업자를 말함(법 제2조 제10항)

■ 적용기준(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9조)

- 하도급법상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이 있어야 함(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제외)
-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합의는 반드시 3자 간에 동시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묵시적인, 순차적인 직접 지급 합의도 유효)
-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는 하도급 기성분의 총액이 2회의 기성분에 해당할 때임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기지급한 금액은 제외
-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발생(의사표시의 도달 증명 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음)
-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시 민사집행법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 가능
-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 부담

■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 범위

■ 직접 지급해야 할 금액의 확정

- 직접 지급금액의 확정이 직접 지급 의무의 전제이며, 직접 지급금액은 원사업자의 기성검사 및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의 승인(검수)에 의해 확정될 수 있을 것임
- 원사업자의 비협조 등으로 확정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의 합의에 의할 수 있을 것임

■ 발주자의 직접 지급 한도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 범위임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미공제금이 남아있을 경우, 발주자는 직접 지급하기에 앞서 미공제 선급금을 상계하고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하도급법상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발주자가 명백히 직접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직접 지급액이 기성미확인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

심결례

사례 ① 씨티씨는 원사업자에게 골리앗 크레인 중 일부시설의 제조위탁을 하고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와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씨티씨는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일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음

심결요지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 간 합의를 하였을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 ① 해룡학원은 원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고 원사업자는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일부를 위탁하였음. 원사업자는 해룡학원에게 3, 4회 기성을 수령하고도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수급사업자는 해룡학원에게 3, 4회 기성금 지급을 요청. 해룡학원은 수급사업자의 채권자로부터 공사대금이 가압류 되었다고 하면서 지급요청을 거부하였음. 이후 가압류가 해제된 이후 수급사업자는 해룡학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해룡학원은 원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였음

심결요지 원사업자가 2회 이상 기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이의 지급을 발주자에게 요청하면 발주자는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함
해당 사례에서 3, 4회 기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회 이상 기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직접 지급 요청이 가압류 통보 보다 하루 앞서 전달되었던 점을 확인해 보면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포스코
스틸리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V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개요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CP: Compliance Program)

- 경제 주체인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

2 CP는 왜 필요한가?

- 공정경쟁 및 CP 운영에 대한 당위성 강화
 - CP 운영 확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며, 특히 대기업의 1차 협력사 합동 도입 등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으로까지 CP를 확대코자 하고 있음
- 법 위반에 따른 기업 손실의 사전예방
- 투명·정도경영 기업으로서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



3 CP 등급평가 결과 우수등급("A") 이상 취득 시 유인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 공정거래법 제45조(제1항 제9호는 제외) / 표시광고법 /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법 / 약관규제법 / 할부거래법 등

CP 등급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기간
A	1년
AA	1년 6개월
AAA	2년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면제 혹은 감경

- 공정거래법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 제52조 / 하도급법 제25조 / 표시광고법 /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법 / 대규모 유통업법 / 할부거래법 / 가맹사업법 / 약관규제법

CP 등급	시정명령의 공표
A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를 1회에 한하여 1단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AA	
AAA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면제 혹은 감경

■ 과징금 감경('24.6.2 시행)

CP 등급	과징금 감경(최대)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
AAA	15%(20%)	- CP담당자의 위반 행위 개입 - CP 도입 전 발생 위반 행위
AA	10%(15%)	- 부당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4호 및 8호) - 고위임원(이사 이상)의 위반행위 직접 관여

4 CP 8대 구성요소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지원
CP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및 활용
지속적이며 체계적 자율준수 교육 실시
내부 감시체계 구축(점검, 감사)
공정거래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효과성 평가 및 개선 조치

5 CP 등급평가 절차



2. 포스코스틸리온의 CP 운영 현황

1 시행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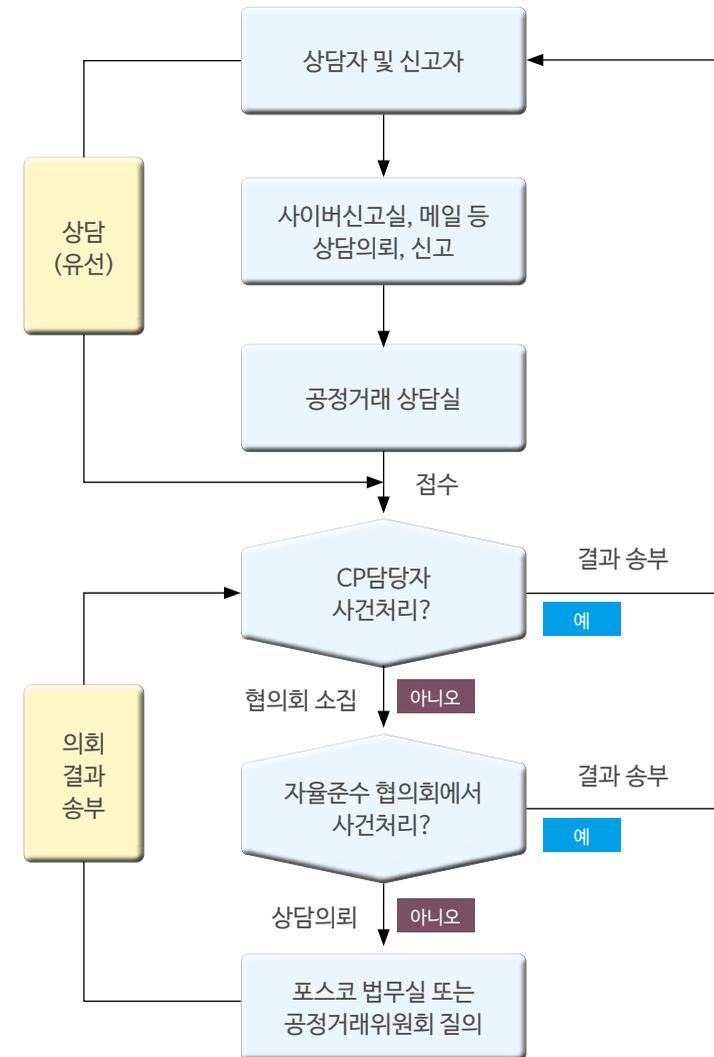
- 경쟁 당국의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임직원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법 위반시 초래되는 회사의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06년 10월부터 시행

2 추진 경과

- 2003. 07. 윤리규범 제정(이후 부분 개정)
- 2006. 06. 공정거래 준수 전 직원 서약(매년 실시)
 - 10. 최고경영자 공정거래 도입 선포 및 준수 의지 천명(대토론회 시)
 - 10.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이사회 개최(상임감사 선임)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대외에 공시(자율준수관리자 선임 시 이사회 개최 및 공시)
- 2007. 11.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발간
- 2008. 03. 공정거래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선임 및 개최
 - 12. CP 운영에 대한 외부 평가(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 “A” 획득)
 - 12.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및 공정위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이행실적 평가(2009년: 양호, 2010년: 우수, 2011년: 우수)
 - 12.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매월)
- 2009. 04. 자율준수관리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제8회 공정거래의 날)
- 2010. 04. 공정거래 편람 개정 발간
 - 12. CP 운영에 대한 외부 평가(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 “AA” 획득)
- 2012. 09. 공정거래 편람 개정 발간
 - 12. CP 운영에 대한 외부 평가(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 “A” 획득)

- 2013. 06. 2012년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매년 발간)
 - 12. 하도급 대금 체불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
- 2014. 07. 공정거래 편람 개정 발간
- 2018. 02. 공정거래 편람 개정 발간
 - 07. 기업시민 경영이념 도입
- 2021. 12. ESG 평가 통합 등급 “A” 획득(환경: “A”, 사회: “A+”, 지배구조 “A”)
- 2022. 01. 공정거래, 윤리경영, 반부패 서약 실시(매년 실시)
 - 08. 기업시민보고서(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 09. 공정거래 편람 개정 발간
 - 10. ESG 평가 통합 등급 “A” 획득
(컬러강판업계 최초 2년 연속 통합 A등급 취득)
- 2023. 10. 2023년 CP 운영에 대한 외부 평가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 “AA” 획득)
 - 11. ESG 평가 통합 등급 “A” 획득
(포스코 그룹 순(전) 상장사 “A” 등급 이상 획득)
- 2024. 06. 지속가능경영보고서(ESG 활동 성과) 발간
 - 07. 포스코 그룹 윤리규범 개정(진실, 존중, 공감)
 - 08. 공정거래 편람 개정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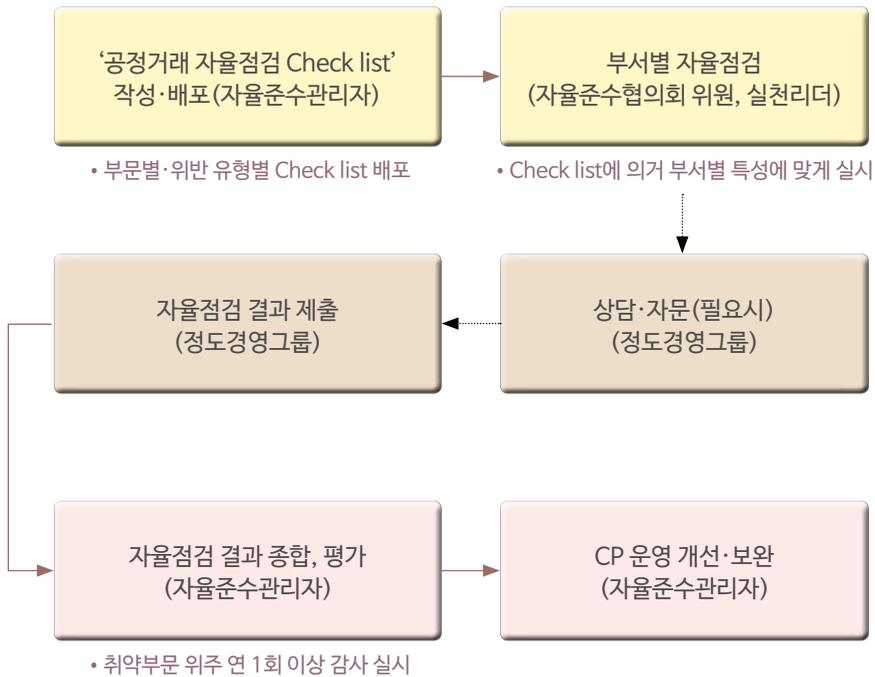
3 신고절차 프로세스



4 공정거래 자율점검이란?

- Check list를 활용한 법 위반행위 사전감시 체계로서, 실무 담당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

5 자율점검 체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문

본인은 회사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고객 및 협력사·공급사와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정당한 경쟁을 통해 윤리적 기업으로서 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관련업계의 임직원과는 법에 저촉되는 모임, 연락, 정보교환 등 직·간접적인 접촉을 하지않겠으며, 불가피한 접촉 시 담합 의심행위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여사를 표시하겠습니다.
2. 고객사와 거래 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구입강제나 판매목표 강요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열 회사와 거래 시, 합리적인 계약사유와 정상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지원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협력사·공급사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구두발주, 부당한 대금결정 및 감액·위탁 취소·기술자료 요청 및 유용 등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소속 직원에게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임직원의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승인 및 방조하지 않겠습니다.
6. 기타 불공정한 거래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 관련부서에 문의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 서약서에 서명하였음을 확인하고, 서약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회사로부터의 징계나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포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는 의미로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2024. 1.

직번: 성명: (서약)

《공정거래 자율점검 앱 활용》
(스마트폰 앱 설치)



포스코
스틸리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VII

부서별
공정거래
Risk 예방 가이드

1 부서별(마케팅) 공정거래 Risk 예방 가이드

관련 업무	주의사항	법 위반 Risk (관련 위반 유형)	관련 부서
수요 예측 및 시장정보 파악	수요예측을 핑계로 경쟁 사업자와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 하여서는 안 되며, 어떠한 형태의 유선 연락이나 미팅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수요예측을 위해 경쟁 사업자이자 고객사인 사업자와 제품의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류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쟁 사업자와의 미팅이 불가피할 경우 제품의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당 공동행위)	마케팅 쏠 부서
무상 샘플 제공	무상 샘플 제공 시 특정 업체 에게만 과다하게 제공하거나, 특정 업체에게만 현저히 적게 제공한다면, 이는 시장에서 특정 업체를 지원하거나 특정 업체에 대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무상 샘플 제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제공하여야 합니다. (부당 지원행위)	마케팅 쏠 부서
구매 강요 및 강제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고객사에게 물량을 구매토록 강요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비록 고객사가 추가 구매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강요가 있었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고객사에게 물량을 구매토록 강요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비록 고객사가 추가 구매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의 강요가 있었다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마케팅 쏠 부서

관련 업무	주의사항	법 위반 Risk (관련 위반 유형)	관련 부서
수출 수주	특정 수출상사에게만 유리하도록 물량을 몰아주거나 가격, 거래조건 등을 책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정 수출상사에게만 유리하도록 물량을 몰아주거나 거래 조건을 우대한다면 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국내 수출상사 간 경쟁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모든 수출상사에게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부당 지원행위, 차별적 취급행위 등)	마케팅 수출 부서
신규 고객사 등록	신규 고객사와 거래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거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특정 사업자가 거래의 개시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다면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거래 개시를 요청하는 사업자들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거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마케팅 쏠 부서
제품 구매 문의	공급량 부족 등의 합리적 사유 없이 고객사의 공급요청을 거절 하여서는 안 되며, 공급요청 거절 시 합리적 사유를 고객사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생산 또는 판매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사에게 공급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당한 거래거절, 거래상 지위남용)	마케팅 쏠 부서

관련 업무	주의사항	법 위반 Risk (관련 위반 유형)	관련 부서
가격 할인	가격할인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 모든 고객사에게 공정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 포스코 그룹사 간 내부거래 시 주의	특정 고객사에 대한 가격할인은 그와 경쟁하고 있는 다른 고객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되므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고객사를 차별하여 할인가격을 적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당 지원행위, 차별적 취급 등)	마케팅 쏘 부서
e-Sales 경매(판매)	e-Sales 등록,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e-Sales 판매 기준 등은 특정 사업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수립하여 미리 공지하여야 하며, 특정 사업자에 대해 합리적 사유나 기준 없이 고객사 등록 및 경매 참여를 거절 하여서는 안 됩니다.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마케팅 계획그룹
결제 연기	결제연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이를 이유로 고객사에게 고객사의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객사의 결제연기 요청 시 합리적인 기준없이 특정 고객사에 대해 다른 고객사와 달리 결제일을 연장해주거나 현저히 낮은 금액만을 결제토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당지원,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등)	마케팅 쏘 부서

관련 업무	주의사항	법 위반 Risk (관련 위반 유형)	관련 부서
담보채권 관리	고객사의 중요정보는 제3기관을 통해 확보하여야하며, 직접적으로 고객사에게 이를 제출토록 강요하거나 제출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용평가를 이유로 판매가격, 원가정보, 재고량 등 평가와 관련이 없는 고객사의 중요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객사에 제재를 가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당지원,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남용 등)	마케팅 쏘 부서, 채권관리 부서

2 부서별(구매, 하도급) 공정거래 Risk 예방 가이드

관련 업무	주의사항	법 위반 Risk (관련 위반 유형)	관련 부서
공급사 소싱	특정 공급사를 지정 또는 배제할 목적으로 소싱그룹 운영 및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품질이나 규격 등에 관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실제로는 특정 사업자 지정 또는 배제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구매/계약 부서
공급사 제재	포스코 또는 계열회사에서 이루어진 공급사의 품질불량, 부정당행위(계약 관련 서류 위조, 금품수수 등)를 이유로 공동 제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포스코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급사에 대해 입찰 참여권 박탈 등의 제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습니다. 단, 금품수수/입찰담합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약관에 의거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구매/계약 부서

관련 업무	주의사항	법 위반 Risk (관련 위반 유형)	관련 부서
단가 계약된 공급사 거래 중단 및 장기거래 공급사 거래 중단	단가계약의 경우 거래를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사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최고: 催告)하여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공급사에 대해 거래 중단 시에는 명확한 사유(품질불량, 납기지연, 부정연루 등)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중단이 예상되는 공급사는 당사와의 거래 중단에 따른 대체 거래선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당기간(통상 3개월) 여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한 거래거절)	구매/계약 부서
특정 공급사 구매량 과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 등 특정 공급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구매량을 과다 산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정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소요량을 과다 발주하거나, 적정수량 이상의 구매량 및 예산을 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지원행위)	구매/계약 부서
수의 계약 (사전 감사)	자재, 설비, 협력 등 회사가 수행하는 모든 분야의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 수의 사유가 적정한지 여부를 계약 체결 전에 정도경영그룹에서 감사를 하여 부적절하거나 필수적이지 않은 수의계약의 근절 목적 * 제외 대상 : 엔투비, 포스코 통합 구매, 소재,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구매/계약 부서

분야	설비	자재	구매	노무협력	원료	물류	정보	기타
계약대상	자재	설비,공사	협력작업	부원료	출하수송	정보화사업	그외 계약 전체	
기준금액	3천만원 ↑	1억원 ↑						

관련 업무	주의사항	법 위반 Risk (관련 위반 유형)	관련 부서
계약 방법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공급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 능력, 신용도, 품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부당한 지원행위)	구매/계약 부서
하도급 대금 결정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업체는 자유로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수 있으나, 경제 여건 상 발생하는 인하 부분이 아니라 원가절감을 위해 특정부문 또는 작년 계약 금액 집행 대비 인하율을 정하고, 그 계획에 의거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구매/계약 부서
협력사 작업지시	정상적인 작업지시 이외에 외주협력업체라는 사유로 경영활동에 대해 간섭하거나 임직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발주자가 구매업체의 하도급사 간의 거래에 관여하여 납품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업체 지정에 관여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 경영간섭)	구매/계약 부서

관련 업무	주의사항	법 위반 Risk (관련 위반 유형)	관련 부서
하도급 대금 결정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거래 시, 당초 정한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정당한 사유로 감액을 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대상의 물량, 감액 금액, 감액 방법 등이 적시된 감액 서면을 정산 전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원사업자는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재재가격 등이 납품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거나, 경영 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거래상 지위남용, 서면 미교부)	구매/계약 부서
공급사 품질평가	공급사 품질평가 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공급사의 품질 평가는 공급사가 수행한 실적 및 제품 품질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한 지원행위)	구매/계약 부서

3 부서별(기업집단) 공정거래 Risk 예방 가이드

관련 업무	주의사항	법 위반 Risk (관련 위반 유형)	관련 부서
해외 법인 관리	해외 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할 경우 임직원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파견을 받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해외에 현지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파견된 임직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회사가 지불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당 지원행위)	경영기획 재무그룹
공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손익 현황' 에서 숫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시한 경우 · '이사회 및 위원회 등 운영현황' 에서 일부 안건 누락 및 ○외 △건으로 안건을 요약해서 공시한 경우 ·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관련제도 운영현황'에서 정관상 도입 및 배제 규정에 의거 공시해야 하나 정관과 다르게 공시한 경우 ·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 내역' 에서 일부 계열회사에 대한 거래 현황 누락 해서 공시한 경우 <p>☞ 상기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룹사 기업집단현황공시는 주로 담당자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사항이 대부분이며 주의를 요함</p> <p>[포스코그룹 기업집단 현황·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수감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 29개사 57건에 대하여 4,125만원의 과태료 부과 받음 * 2014년 : 8개사 33건에 대하여 5,512만원의 과태료 부과 받음 * 2015년 : 5개사 19건에 대하여 2,503만원의 과태료 부과 받음 * 2016년 : 1개사 1건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받음 * 2018년 : 1개사 1건에 대하여 42만원의 과태료 부과 받음 * 2019년 : 2개사 2건에 대하여 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받음 * 2020~2021년 : 위반사항 없음 * 2012년 : 1개사 1건에 대하여 3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받음 <p>※ 공경위는 2018년부터 3개 공시에 대해 연1회 통합점검을 실시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26조)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법 제27조) · 기업집단 현황 공시(법 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 현지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파견된 임직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회사가 지불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영기획 재무그룹

관련 업무	주의사항	법 위반 Risk (관련 위반 유형)	관련 부서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 및 용역 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함 <p>※ 특수관계인(공정거래법시행령 제14조)</p> <p>①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동일인)*</p> <p>*그룹 총수가 없는 경우 기업집단 내 대표회사를 말함(포스코 기업집단의 경우 포스코홀딩스(주)가 동일인 임)</p> <p>② 동일인 관련자</p> <p>-동일인 관련자에는 동일인의 친족(배우자,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혈족 4촌, 인척 3촌),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하는 계열회사와 비영리법인 및 그 임원 등이 포함 (시행령 제4조 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국외 계열회사는 제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 및 용역 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함 	공시 담당 부서

2024

포스코스틸리온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Compliance Program

발행인 포스코스틸리온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발행처 정도경영실 정도경영그룹

발행일 2024년 11월

편집·제작 (주)블루리밴드